



2023. 9.

국회에산정책처 | 국정감사 대비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II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II

2023 정기국회 ·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II

총괄 | 최병권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전용수 사업평가심의관
최철민 예산분석총괄과장
박주연 산업예산분석과장
김현중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변재연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김신애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한지은 예산분석관
김국찬 예산분석관
김정훈 예산분석관
박소희 예산분석관
박지민 예산분석관
장희란 예산분석관

지원 | 장유진 행정실무원
강지훈 자료분석지원요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의 :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 02) 6788-3782 | peb5@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II

【 정무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교육위원회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 행정안전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3. 9.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 (2023. 9. 11.)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간사

정부는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지정된 전체 공공기관의 수입·지출액은 2022년 예산 기준 791조 9,138억원 규모로, 정부 부문 총지출의 116%에 달하는 등 공공기관이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 생활과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기, 가스, 수도와 같은 공공요금이나 철도, 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 공급, 주거 정책 및 정책금융 등은 공공기관이 소관 분야에서 역할을 맡아 추진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이해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재무 및 사업에 대한 정보는 정부 부처에 비하여 정보가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등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는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되고 있으나, 기관별·공시항목별로 정보가 산재되어 있어 최근 쟁점이 되는 공공기관별 주요 이슈나 변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보는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이슈들을 분석하고, 주요 공공기관별로 최근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다루었습니다. 본 보고서의 1권에서는 중점 주제로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 문제와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주요 쟁점, 출자회사 관리를 통한 적정한 공공요금 부담 필요성, 공공기관 지정 변경 현황 및 개선과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및 공공기관 복리후생 등의 이슈에 대한 주요 공공기관의 현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2권부터 4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공공기관들의 사업 등에 대한 현황 및 재무건전성, 출자회사, 공공요금, 복리후생, 성과급, 징계 현황 등 개별 공공기관별로 최근 쟁점이 되는 이슈들을 다루어 가독성과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2023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가 주요 공공기관의 현황과 최근 이슈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정감사의 바탕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9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조 의 섭

Contents

정무위원회

1. 정무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2
2. 한국산업은행 출자회사 현황	6
3. 한국산업은행 해외 현지법인 현황	10
4. 한국산업은행 ESG 경영 및 석탄화력발전 지원 현황	14
5. 한국산업은행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과다 및 분할 수의계약 문제	18
6. 한국산업은행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구매 비율 3년 연속 미달성 및 하위 5개 기관에 포함	27
7. 한국산업은행 주택융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등 관련 문제점	29
8. 중소기업은행 생활안정자금 및 징계 관련 문제점	36
9.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실채권 펀드투자 현황	41
10.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구매 비율 지속적인 감소	46
11.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융자금 및 징계 등 관련 문제점	48
12. 신용보증기금의 주택융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등 관련 문제점	57
13. 예금보험공사 징계 및 성과급 관련 문제점	67
14. 한국주택금융공사 생활안정자금 및 징계 등 관련 문제점	73
1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구매 비율 지속적인 감소	78
1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생활안정자금 및 징계 등 관련 문제점	80

기획재정위원회

1.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88
2. 한국수출입은행 ESG 경영 및 석탄화력발전 지원 현황	90
3. 한국수출입은행 징계 관련 문제점	94
4. 한국조폐공사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과다 및 분할 수의계약 문제	96
5. 한국조폐공사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구매 비율 지속적인 감소	101
6. 한국조폐공사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점	103

교육위원회

1. 교육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108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적립금 운용 현황	111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주택융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점	114
4. 한국사학진흥재단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구매 비율 지속적인 감소	119
5. 서울대학교병원 인재원 객실 활용률 제고 필요	121
6. 서울대학교병원 장애인고용부담금 5년 연속 최고액 납부	124
7. 한국장학재단 징계 및 성과급 관련 문제점	12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132
2.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구매 비율 3년 연속 미달성 및 하위 5개 기관에 포함	136
3.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징계 관련 문제점	138
4. 한국인터넷진흥원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구매 비율 지속적인 감소	140
5. 한국인터넷진흥원 징계 및 성과급 관련 문제점	142
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장애인고용부담금 5년 연속 증가	146
7. 우체국물류지원단 징계 관련 문제점	148
8.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성과급 관련 문제점	150
9. 한국연구재단 징계 및 성과급 관련 문제점	152
1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악화 현황	156
1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지사 운영효율화 방안 마련 필요	161
1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연수원 운영 현황	165
13.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징계 관련 문제점	168
14.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징계 관련 문제점	170

외교통일위원회

1.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174
2. 한국국제교류재단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구매 비율 3년 연속 미달성 및 최하위 비율 구매	176
3. 한국국제협력단 징계 관련 문제점	178

행정안전위원회

1.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182
2. 공무원연금공단 적립금 운용 현황	185
3. 공무원연금공단 연금대부 장기연체자 현황	188
4. 도로교통공단 징계 관련 문제점	191
5.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징계 및 성과급 관련 문제점	19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현황	200
2. 한국관광공사 출자회사(제주ICC 및 서남해안레저) 수익성 저조	203
3. 한국관광공사 주택융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등 관련 문제점	206
4.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징계 및 성과급 관련 문제점	213
5. 영화진흥위원회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구매 비율 3년 연속 미달성	217
6.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구매 비율 지속적인 감소	219
7.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징계 관련 문제점	221
8. 한국언론진흥재단 생활안정자금 및 징계 등 관련 문제점	223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II

정무위원회



가. 일반현황

- 정무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은 금융위원회 산하 7개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2개 기관, 국가보훈부 산하, 국무조정실 산하 25개 기관임
 -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은 신용보증기금 등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4개, 한국산업은행 등 기타공공기관 3개 기관으로 총 7개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은 위탁집행형인 한국소비자원, 기타공공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총 2개 기관
 - 국가보훈부 산하 공공기관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88관광개발(주) 등 기타공공기관 2개 기관 등 총 3개 기관
 - 국무조정실 산하 공공기관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기타공공기관 25개 기관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금융위원회 (7)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기타 공공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공정거래 위원회 (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소비자원
	기타 공공기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가보훈부 (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기타 공공기관	88관광개발(주), 독립기념관

박지민 예산분석관(02-6788-3731)
장희란 예산분석관(02-6788-4682)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국무 조정실 (25)	기타 공공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나.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현황

■ 2022년 기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를 받은 정무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은 기금 관리형 준정부기관 4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개 기관임

- 2021년 경영실적평가 대비 2022년 경영실적평가 등급이 상승한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은 서민금융진흥원이며, 2021년 대비 하락한 기관은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임
 -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1년 우수(A) 등급에서 2022년 보통(C) 등급으로 하락
-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 미흡(D) 등급에서 보통(C) 등급으로 상승
- 국가보훈부 산하의 독립기념관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2021년 대비 2022년 모두 하락
 - 독립기념관은 2021년 보통(C) 등급에서 2022년 미흡(D) 등급으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2021년 보통(C) 등급에서 2022년 아주미흡(E) 등급으로 하락

정무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및 경영성과급(2018~2022)

(단위: 천원)

부처	유형	기관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융 위원회 (5)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신용보증기금	경영결과	A	B	A	A	B
			경영성과급	2,036	2,593	2,322	3,024	2,518
		예금보험공사	경영결과	B	A	B	B	B
			경영성과급	2,146	2,215	2,598	2,398	2,590
		한국자산관리공사	경영결과	B	B	A	A	C
			경영성과급	2,404	1,988	1,893	2,451	2,304
		한국주택금융공사	경영결과	B	A	A	A	C
			경영성과급	985	1,830	2,344	2,525	2,35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서민금융진흥원	경영결과	-	-	-	C	B
			경영성과급	-	-	-	-	825
공정거래 위원회 (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소비자원	경영결과	B	C	C	D	C
			경영성과급	2,035	1,409	914	1,001	129
국가 보훈부 (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독립기념관	경영결과	C	B	B	C	D
			경영성과급	0	0	0	0	0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경영결과	B	D	C	C	E
			경영성과급	1,114	1,065	188	932	756

- 주: 1.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는 2022년 공공기관 현황에 따름
 2. 경영성과급은 전년도 경영실적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 차년도에 지급되며, 일반정규직 기준임
 3. 경영성과급(기관평가)은 범주별(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범주별 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등급별·행별로 차등지급(성과급 지급률=종합 50%+경영관리 25%+주요사업 25%)
 4. 경영성과급이 0원인 기관은 2023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어 경영성과급을 0원으로 기재함에 따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연도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결과 발표」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다. 종합청렴도 현황

■ 2022년 기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받은 정무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음

-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4개, 기타공공기관 3개임
-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소비자원임
- 국가보훈부 산하 공공기관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기타 공공기관인 독립기념관임

정무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현황(2018~2022)

(단위: 등급)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융위원회 (7)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예금보험공사	2	4	3	3	3
		한국자산관리공사	3	3	3	4	3
		한국주택금융공사	2	2	3	2	2
		신용보증기금	4	2	2	2	1
	기타공공기관	서민금융진흥원	-	-	-	-	2
		중소기업은행	5	3	2	2	2
		한국산업은행	3	2	2	2	2
공정거래위원회 (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소비자원	4	4	3	3	3
국가보훈부 (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	3	3	3	3
	기타공공기관	독립기념관	-	-	-	-	3
국무조정실 (3)	기타공공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	3	-	-	-
		한국개발연구원	3	3	-	-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3	4	-	-	-

주: 1. (-)은 청렴도 조사 미수행을 의미함

2. 공공기관 유형은 2023년 기준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가. 현황

- 한국산업은행은 최근 5년간 24.2~28.7조원 수준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주식 보유
 - 한국산업은행은 부실기업 경영 정상화, 벤처 및 중소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기존 채권의 출자전환이나 직·간접투자를 통하여 출자회사를 관리 중
 - 출자회사 중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은 투자자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지분을 50% 이상은 종속기업, 지분율 20% 이상은 관계기업으로 구분됨
 - 2022년 기준 한국산업은행이 보유 중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주식은 27조 9,923억원으로, 총 자산의 9%를 차지함. 총자산 대비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주식 비중은 최근 5년간 감소하는 추세

한국산업은행의 연도별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주식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주식(a)	254,309	241,901	255,536	287,101	279,923
총자산(b)	2,097,748	2,178,353	2,518,520	2,764,219	3,128,453
비중(a/b)	12	11	10	10	9

자료: 한국산업은행

나. 주요 쟁점

- 한국산업은행은 2022년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주식에서 1조 1,686억원 손상차손¹⁾ 인식
 - 2022년은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주식에서 1조 1,686억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여 최근 5년 중 손상차손 인식 규모가 가장 컸음

한국산업은행의 최근 5년간 연도별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차손 현황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손상차손(억원)	13,410	△5,429	△2,395	3,631	△11,686

자료: 한국산업은행

- 2022년 말 기준 한국산업은행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손상차손 누계액은 3조 9,143억원
 - 2022년 말 기준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주식 잔액은 27조 9,923억원이며, 손상차손 누계액은 3조 9,143억원으로, 손상차손 비율은 금액을 기준으로 12%인 것으로 나타남
 - 보유기업(펀드) 수 기준으로는 2022년 말 기준 보유기업(펀드) 186개 중 19개 기업(펀드)에서 손상차손 누계액이 발생하였으며, 보유기업(펀드) 수 기준으로 손상차손 비율은 10%인 것으로 나타남

2022년 말 기준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손상차손 현황

(단위: 억원, 개, %)

2022년 말 기준 잔액		2022년 말 기준 손상차손 누계액		손상차손 비율	
금액(a)	보유기업(펀드) 수(b)	누계액(c)	보유기업(펀드) 수(d)	금액 대비 [c/(a+c)]	보유기업(펀드) 수 대비(d/b)
279,923	186	39,143	19	12	10

자료: 한국산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1)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가격보다 현저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함

- 2022년 말 기준 손상차손이 발생한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2년 말 기준 손상차손 발생 투자기업 및 펀드 세부내역

(단위: 억원, %)

구분	발행자	기말잔액(a)	장부가액- 취득가액(b)	비율 [b/(a+b)]
손상차손 발생 투자기업	(주)에이치엠엠(주)	19,745	7,623	28
	대우조선해양(주)	11,298	11,149	50
	한국지엠(주)	3,765	7,201	66
	한진칼(주)	3,528	1,472	29
	BANCO KDB DO BRASIL S.A.	398	2,525	86
	KDB BANK EUROPE LIMITED	1,255	782	38
손상차손 발생 투자펀드	케이디비칸서스밸류 사모투자전문회사	1,705	6,783	80
	아주좋은제2호 사모투자합자회사	448	40	8
	웨일제1호중소중견기업엔에이 사모투자합자회사	265	70	21
	KTBN 9호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투자조합	54	21	28
	블루오션기업재무안정제1호 사모투자전문회사합자회사	46	497	92
	코에프씨밸류업 사모투자전문회사합자회사	39	251	87
	SV 한중문화CT 융합펀드	39	39	50
	유니슨세이버 사모투자전문회사합자회사	22	212	91
	KoFC-KB 청년창업1호 투자펀드	15	16	52
	차이나플래티넘 사모투자전문회사	13	111	90
	KoFC-BK Pioneer Champ 2010-13호 투자조합	4	6	60
	코에프씨에스케이협력사동반성장제삼호 사모투자전문회사합자회사	3	4	57
	케이디비아이에이피일대일로 사모투자합자회사	0	341	100

자료: 한국산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손상차손 발생 투자기업은 구조조정 관련 주식의 손상차손 발생과 해외 현지 법인의 손상차손 발생으로 구분 가능
 - 에이치엠엠(주), 대우조선해양(주), 한국지엠(주), 한진칼(주)의 경우 구조조정 진행 과정에서 한국 산업은행이 출자에 참여하면서 취득한 주식으로, 영업실적 악화가 장기화되거나 코로나 19 등의 영향으로 계열사 실적이 악화되는 등의 원인으로 손상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개별 출자회사에 대한 손상차손 발생 원인과 주식 가치 증대 방안 등 손상차손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가. 현황

■ 한국산업은행은 총 7개의 해외 현지법인 설립·운영 중

- 1986년 KDB홍콩을 시작으로 KDB아일랜드, KDB유럽, KDB브라질 등 해외 현지법인을 지속적으로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5월 미국 실리콘밸리에 KDB실리콘밸리 현지법인 설립

한국산업은행 해외현지법인 설립 현황

(단위: 명, 백만원)

법인명	설립년월	인원	자산	부채	자본
KDB홍콩	'86.2	52	3,660,944	3,029,336	631,608
KDB아일랜드	'97.6	9	985,414	861,265	124,149
KDB유럽	'02.12	140	1,197,124	1,082,057	115,067
KDB브라질	'06.1	31	481,207	386,159	95,048
KDB우즈베키스탄	'06.2	247	981,301	874,872	106,429
KDB인도네시아	'20.9	90	130,098	41,343	88,755
KDB실리콘밸리	'21.5	8	126,606	1,522	125,084

주: 재무현황은 2022년 말 기준임

자료: 한국산업은행

- 해외 현지법인들은 현지에서 대출 업무나 리스금융 및 할부금융, 세일즈앤리스백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현지법인별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음

한국산업은행 해외현지법인별 주요 사업 현황

법인명	주요사업
KDB홍콩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 유가증권 주선·인수·자문, 인수합병 자문 등 업무 수행
KDB아일랜드	금융회사로, 항공기 및 선박 등 구조화 금융 중심 영업
KDB유럽	소매 고객,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로 동유럽 금융기관 및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대출 및 금융주선 등을 수행
KDB브라질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 및 한국기업의 브라질 국채수탁 업무 수행
KDB우즈베키스탄	소매 고객, 기업 고객을 중심으로 리스금융 및 할부금융, 세일즈앤리스백 등 제공
KDB인도네시아	기업 고객을 중심으로 리스금융 및 할부금융, 세일즈앤리스백 등 제공
KDB실리콘밸리	벤처캐피탈이며, 현지 및 한국계 스타트업 직접 투자, 벤처펀드 출자 업무 수행

자료: 한국산업은행

- 최근, 한국산업은행은 2021년 5월 미국에 현지법인 ‘KDB실리콘밸리’를 신규로 설립하였으며, 2023년 6월말 기준 총 7건의 투자 약정

KDB실리콘밸리 개요 및 투자집행 현황

구분	내용	
법인명	KDB Silicon Valley LLC(설립일: 21.5.10.)	
취급업무	Venture Capital	
주요주주	한국산업은행(100%)	
설치지역	Mountain View, CA, US	
투자 현황 (2023.6월말)	직접투자	GenEdit 외 총 2건(약정금액 U\$4,500천)
	간접투자	Primer Sazze Fund II 외 총 5건(약정금액 U\$25,500천)

자료: 한국산업은행

나. 주요 쟁점

■ 2022년 해외현지법인의 당기순이익 총합은 1,254억 5,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수준

- KDB실리콘밸리를 제외한 6개 현지법인 모두 2022년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증가
- KDB실리콘밸리의 경우 설립(2021년) 이후 모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 KDB실리콘밸리는 2022년에 10억 5,5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설립 초기 법인 운영비용 지출 및 약정금액 지출 등에 따라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 KDB브라질과 KDB우즈베키스탄, KDB인도네시아의 경우 2022년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1,545%, 149%, 3,027% 증가하는 등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

해외현지법인별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백만원)

법인명	2018	2019	2020	2021	2022
KDB홍콩	19,153	18,871	12,603	42,651	53,881
KDB아일랜드	7,245	6,818	4,572	5,156	7,036
KDB유럽	2,478	7,584	△15,780	4,333	7,415
KDB브라질	11,764	6,099	1,917	1,649	27,132
KDB우즈베키스탄	8,993	11,291	8,401	10,340	25,765
KDB인도네시아	-	-	1,831	169	5,284
KDB실리콘밸리	-	-	-	△552	△1,055
합계	49,633	50,663	13,544	63,746	125,458

자료: 한국산업은행

■ KDB브라질과 KDB유럽은 손상차손이 발생하고 있어 관리 철저 필요

- KDB브라질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당기순손실을 기록함에 따라 손상차손이 발생하였으며, KDB유럽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 및 현지 규제 강화에 따라 2020년에 당기순손실 및 총포괄손실이 발생하면서 손상차손이 발생하였음

Banco KDB Do Brasil S.A. 재무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자산	6,353	5,370	3,992	3,420	2,327	2,170
부채	6,194	5,927	3,596	3,059	2,491	1,787
당기순손익	△407	△1,443	35	24	△478	△415

자료: 한국산업은행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KDB Bank Europe 재무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자산	9,173	12,742	11,910	11,132	11,971
부채	8,357	11,882	10,796	9,938	10,821
당기순손익	25	76	△158	43	74
당기총포괄손익	△4	45	△264	80	△44

자료: 한국산업은행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현황

- 한국산업은행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ESG채권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 중
 - 한국산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ESG채권 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겠다고 발표함
 - 한국산업은행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은 2016년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의 국내 첫 이행기구로 인증받은 바 있으며, ESG 채권 발행을 위한 표준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2020년 3월 이후 발행되는 ESG채권에 이를 적용하고 있음

한국산업은행 ESG 채권 표준관리체계

표준 관리체계

KDB산업은행은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녹색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채권,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채권, 그리고 녹색채권과 사회적채권을 아우르는 지속가능채권 발행을 위한 표준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본 관리체계는 “녹색·사회적·지속가능채권 표준 관리체계”라는 이름으로 2020년 3월 이후 발행되는 KDB산업은행의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에 적용됩니다.

자료: 한국산업은행 홈페이지

- 특히, 한국산업은행은 녹색금융 지원을 위하여 녹색금융 지원체계 설립 및 녹색채권 발행
 - 녹색채권이란 친환경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된 채권으로, 친환경 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녹색산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이 한정되어 있는 채권을 의미
 - 한국산업은행은 체계적인 녹색금융 지원을 위하여 정부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와 연계한 4대 중점 지원분야를 선정하고, 탄소소프레드 프로그램, 넷제로 프로그램 등 녹색금융 상품을 조성하여 친환경 녹색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중이라고 발표

한지은 예산분석관 (02-6788-3745)

한국산업은행 녹색금융 지원체계

구분	분야 및 내용	
중점 지원분야	1. 에너지전환: 화석연료 의존도 ↓	- 탈탄소 에너지믹스 촉진 (석탄 ↓, 재생E·무탄소 ↑)
	2. 산업구조 저탄소화: 산업 탄소배출 ↓	- 산업분야 배출저감 촉진
	3. 녹색 소부장 육성: 미래 성장기반 ↑	- 녹색산업 생태계 강화 (전기차, 수소 관련 소부장)
	4. 친환경사회 조성: 자원이용 효율 ↑	- 순환경제 활성화 (폐플라스틱, 폐배터리 재활용 등)
녹색 전용상품	에너지전환자금, KDB탄소넷제로, KDB탄소스프레드, 친환경사회조성자금 등	

자료: 한국산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또한, 한국산업은행은 2017년부터 대표적인 ESG채권인 녹색채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국내 최초 원화 녹색채권을 발행하였음. 2022년의 경우 한국산업은행은 5,000억원의 원화 녹색채권을 신규 발행하였고, 8억 9,600만 달러의 외화 녹색채권도 신규 발행하였음

한국산업은행 녹색채권 발행 내역

(단위: 억원, 백만)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원화	-	3,000	-	2,000	3,300	5,000
외화	\$300	-	€ 500	-	\$2,050	\$896

자료: 한국산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나. 주요 쟁점

■ 한국산업은행의 전체 여신지원 중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지원 금액이 늘어나고 있음

- 최근 5년간 한국산업은행의 연도별 석탄화력발전 지원 금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2019년 말 기준으로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여신 잔액은 7,763억원이었으나,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 말 기준으로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여신 잔액은 1조 4,061억원이며,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1조 3,918억원임
- 한국산업은행의 전체 여신 대비 석탄화력발전 지원 비중도 2019년 0.4%에서 2022년 0.6%로 증가하였음

최근 5년간 한국산업은행 연도별 석탄화력발전 지원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9.12	2020.12	2021.12	2022.12
전체 여신(A)	1,790,664	2,054,533	2,283,704	2,471,109
석탄화력발전(B)	7,763	10,770	12,215	14,061
비중(B/A)	0.4	0.5	0.5	0.6

자료: 한국산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이러한 한국산업은행의 석탄화력발전 지원 증가는 한국산업은행의 ESG 경영과 배치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 특히, 해외투자의 경우 한국산업은행은 인도네시아 두 개의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수행 중

- 한국산업은행은 인도네시아 '칼젤(KALSEL)'과 '자바(JAWA) 9&10' 등 두 개의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하여 금융지원을 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칼젤(KALSEL) 사업의 경우 2016년 11월에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발전소 건설을 완료하고 운영 중에 있음. 동 사업에 대한 약정금액은 2억 3,200만U\$로, 자금을 상환하고 있는 중으로 대출 잔액은 1억 7,700만U\$임
- 인도네시아 자바(JAWA) 9&10 사업의 경우 2020년 7월에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건설 단계에 있음. 동 사업에 대한 약정금액은 4억U\$이며, 대출 잔액은 2억 3,300만U\$이고 대출을 인출 중인 상황으로 대출 잔액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

한국산업은행 해외 석탄화력발전 지원 현황

(단위: U\$백만)

회사명 (사업명)	단계	약정일	약정 금액	잔액 (‘23.6월)
PT TANJUNG POWER INDONESIA (인도네시아 KALSEL)	건설기간: ’16.7~’19.4 운영기간: ’19.4~’44.4	’16.11.24	232	177 (상환 중)
PT INDO RAYA TENAGA (인도네시아 JAWA 9&10)	건설기간: ’20.11~’25.5 운영기간: ’25.6~’50.5	’20.07.15	400	233 (인출 중)

자료: 한국산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한국산업은행 해외 석탄화력발전 지원 사업 설명

구분	칼젤	자바 9&10
위치	칼리만탄섬	자바섬
규모	200MW	2,000MW
출자자	PT Adaro Power 65%, 동서발전 35%	PT Indonesia Power 51%, 한국전력 15% 등
전력판매	인도네시아전력공사(25년)	인도네시아전력공사(25년)
EPC (공사주체)	현대엔지니어링	두산중공업
O&M (유지보수)	동서발전	한국전력·중부발전
총투자비	U\$5.6억	U\$33.9억

자료: 한국산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특히, 인도네시아 자바(JAWA) 9&10 사업의 경우 한국산업은행이 녹색채권 지원 방침을 발표하고 녹색채권과 관련된 표준 관리체계가 수립된 2020년 3월 이후인 2020년 7월에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점에서 ESG 경영의 취지와 부합하는지 검토 필요

한국산업은행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과다 및 분할 수의계약 문제

가. 현황

- 공공기관은 계약체결 시 체결 과정의 공정성을 위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¹⁾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음

주요 수의계약 사유(관련 규정)

주요 수의계약 사유	관련 규정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와의 계약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등
긴급한 경우 등으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인 경우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단체 등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 - 추정가격 2천만원(여성기업·사회적기업 등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인 소액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주: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말함

김정훈 예산분석관 (02-6788-4685)

1)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계약의 방법)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5조(계약의 방법)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한국산업은행의 최근 3년간 총 계약금액 대비 수의계약 금액 비율은 32.5%로 수의계약 비율이 과다한 상황임

- 101개 주요 공공기관²⁾의 최근 3년간 총 계약금액 대비 수의계약 금액 비율은 18.5%인데, 한국산업은행은 32.5%로 주요 공공기관 평균 수의계약 비율의 약 2배에 해당

최근 3년간 한국산업은행 수의계약 비율 현황 등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계약금액(A)	수의계약 금액(B) ¹⁾	수의계약 비율(B/A)
주요 공공기관(101개 기관)	147,834,329	27,409,626	18.5
한국산업은행	551,787	179,400	32.5

주: 표에 따른 수의계약 금액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상 수의계약으로 분류되나 실질적으로는 입찰을 실시한 '소액수의견적 입찰'이나 '입찰결과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금액을 제외한 순수 수의계약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자료: 한국산업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주요 쟁점

- 한국산업은행의 최근 3년간 총 계약금액 대비 수의계약 금액 비율을 보면 2020년 17.3%, 2021년 42.5%, 2022년 66.3%로 매년 수의계약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음

- 자회사와의 수의계약 금액이 높아짐에 따라 수의계약 비율 증가

최근 3년간 한국산업은행 수의계약 비율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계약금액(A)	수의계약 금액(B)	수의계약 비율(B/A)
2020	315,023	54,461	17.3
2021	134,892	57,376	42.5
2022	101,872	67,563	66.3

자료: 한국산업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주요 공공기관(101개): 공기업(32개)·준정부기관(55개)·주요 기타공공기관[14개(은행형 기타공공기관·기금관리형 기타공공기관·4대 항만공사)]

- 한국산업은행의 최근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을 주요 사유별로 분류하면 ‘자회사와의 계약 등’의 사유와 ‘특정인의 기술 필요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비중이 높은 상황

한국산업은행의 주요 수의계약 사유별 현황

(단위: 백만원, %)

공공기관	수의계약 사유					
	자회사와의 계약 등	긴급한 경우 등	특정인의 기술 필요 등	중소기업자 제품 구매 등	장애인단체 제품 구매 등	계약의 목적·성질상 경쟁입찰이 비효율적인 경우
한국산업은행	125,623 (70.9)	0 (0.0)	45,366 (25.6)	0 (0.0)	419 (0.2)	5,817 (3.3)

자료: 한국산업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자회사인 케이디비비즈 등과 통합관리 용역 등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비중이 70.9%로 가장 높음
- ‘특정인의 기술 필요 등’ 및 ‘계약내용 공개시 은행업무 수행에 차질 발생 등’의 사유로 회계법인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비중은 25.6%에 해당
- 한국산업은행은 주식가치평가 등에 대한 계약 체결에 있어 ‘계약내용 공개 시 은행업무 수행에 차질 발생 등’의 사유로 국내 주요 회계법인과 지속·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최근 3년간 한국산업은행이 회계법인과 체결한 주요 수의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업체명	계약내용	계약일자	수의계약 금액	주요 수의계약 사유
삼O 회계법인	주식가치평가	2020.01.13	56	계약내용 공개 시 은행업무 수행에 차질 발생
	합의사항 이행내역 확인 실사	2020.07.02	130	
	보유주식 가치평가 및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점검 보고서 검토	2020.07.16	46	
	조세불복용역	2020.09.09	280	
	(주)카카오엔터프라이즈 투자관련 주식가치평가 및 회계실사	2020.10.07	85	
	당행 보유 한국전력공사 보통주 가치평가를 위한 용역계약	2021.08.18	60	
	당행 보유 한국전력공사 보통주 가치평가를 위한 용역계약	2022.02.17	60	
	당행 보유 한국전력공사 보통주 가치평가를 위한 용역계약	2022.08.10	60	
	KDB인도네시아 MTO 매매각을 위한 공정가치 평가 용역계약	2022.10.12	143	
	합 계		920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그러나 ‘당행 보유 한국전력공사 보통주 가치평가를 위한 용역계약’ 내용으로 2021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년 동안 삼O회계법인과 동일한 목적의 계약을 3회 체결하는 등 일반적인 주식가치평가 등에 대한 계약도 ‘계약내용 공개시 은행업무 수행에 차질 발생’ 사유를 적용하여 동일업체와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경쟁입찰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임

- 더욱이 국가계약법령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르면 비밀유지를 위해 수의 계약을 체결 수 있는 사유는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공익목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일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한국산업은행은 동 조항을 확대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측면이 있어 보임
-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 시 일반적인 과업은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에 기재하고, 비밀보장이 필요한 세부적인 과업은 낙찰업체와의 비밀유지각서를 통해 보안을 유지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한국산업은행은 2020년도에 「NextRise 2020, Seoul」 행사(개최일: 2020년 6월 23일)를 개최함에 있어 금액을 35건으로 분할하여 다수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 35건의 계약 중 32건에 대한 계약체결일이 행사 개최일 하루 전일인 6월 22일인 것으로 보아, 해당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염두한 상황에서 계약체결 전에 이미 업체와 과업을 진행하고 계약체결은 요식행위로 진행한 것으로 보임³⁾
- 더욱이 'NextRise 2020, Seoul 총괄 운영 및 행사장 조성 계약' 등 3건의 계약은 수의 계약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으로서, 계약법령에 따라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공고를 통해 다수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입찰 받아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견적서 입찰 없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하였음⁴⁾

NextRise 2020, Seoul 행사 관련 수의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계약일자	계약내용	수의계약 금액	계약 상대방	수의계약 사유
2020.6.9	NextRise 2020, Seoul 총괄 운영 및 행사장 조성 계약	94	에이치OO	1억원 한도로 여성 또는 장애인 기업과 물품·용역 수의계약체결
	NextRise 2020, Seoul 행사 공식 앱, 웹 개발 운영 계약	20	엑싱O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NextRise 2020, Seoul 메인디자인 계약	22	리O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2020.6.22	NEXTRISE 2020, SEOUL 행사 바닥 파이텍스 공사	16	한일컴OO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NEXTRISE 2020, SEOUL 행사 고시마감 및 동선 가림막 설치	20	하나디OO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NEXTRISE 2020, SEOUL 행사 무대콘솔 및 커튼 설치 용역	13	피알OO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3) 이에 대하여 한국산업은행은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행사 개최여부 및 일정 등의 확정이 늦어짐에 따라 계약체결이 늦어졌다는 입장인데,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행사일 하루 전 일에 계약을 체결한 것은 수의계약을 염두하고 과업을 진행하면서 계약체결절차는 요식행위로 진행한 것으로 보임

4) 이에 대하여 한국산업은행은 2개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 받아(오프라인 제출) 금액이 낮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입장인데, 동 계약 건은 계약법령에 따라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여 불특정 다수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입찰 받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건임

계약일자	계약내용	수의계약 금액	계약 상대방	수의계약 사유
2020.6.22	NEXTRISE 2020, SEOUL 행사 음향시스템 설치 운영	11	프로OO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NEXTRISE 2020, SEOUL 행사 게이트 현판 시공	9	팬텀플OO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NEXTRISE 2020, SEOUL 행사 아크릴가림막 제작	21	케이미OO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NEXTRISE 2020, SEOUL 행사 사각테이블 및 보 임대 설치	21	천무커뮤 니케OO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NEXTRISE 2020, SEOUL 행사 E홀 휴게공간, 프레스룸, 부속실, 오디토리움 운영 기획 총괄	20	플래닝OO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NEXTRISE 2020, SEOUL 행사 기본부스 조성 및 등록대 설치 용역	94	이야기가 있는OO	1억원 한도로 여성 또는 장애인 기업과 물품·용역 수의계약체결
	NEXTRISE 2020, SEOUL 행사 컨퍼런스존 영상시스템 설치	11	이렌컴 더마OO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NEXTRISE 2020, SEOUL 행사	22	이레OO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NEXTRISE 2020, SEOUL 행사 LED전광판 설치 및 운영	20	위즈미OO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NEXTRISE 2020, SEOUL 행사 형광등 및 콘센트 설치	13	우O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NEXTRISE 2020, SEOUL 행사 공간구획 가벽 설치(브릭)	5	엔비OO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NEXTRISE 2020, SEOUL 행사 E홀 부스배너출력시공 및 캘리그래피시공 등	17	에스OO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NEXTRISE 2020, SEOUL 행사 단기운영인력 운영컨퍼런스 및업 안내	21	아임에이OO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NEXTRISE 2020, SEOUL 행사 등록인력 교육 및 운영	20	아임스 인터내OO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NEXTRISE 2020, SEOUL 행사 무대 라운드면 설치 용역	22	상상공간 OOO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일자	계약내용	수의계약 금액	계약 상대방	수의계약 사유
2020.6.22	NEXTRISE 2020, SEOUL 행사 경호경비인력 운영	21	빅터시OO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NEXTRISE 2020, SEOUL 행사 무대 목공 구조물 제작 설치	10	바인시OO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NEXTRISE 2020, SEOUL 행사 전기간선공사	18	미래OO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NEXTRISE 2020, SEOUL 행사 QR코드제작시공 등	13	미도품OO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NEXTRISE 2020, SEOUL 행사 복합기 및 노트북 임대 설치	21	마O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NEXTRISE 2020, SEOUL 행사 컨퍼런스 OA기자재 및 LED배너 제작 설치	21	마이스OOO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NEXTRISE 2020, SEOUL 행사 등록시스템 소프트웨어 제작 및 기기설치	16	마이스커뮤 니OOO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NEXTRISE 2020, SEOUL 행사 행사장내 단기운영인력 운영(전시 및 사무국)	21	마루글OO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NEXTRISE 2020, SEOUL 행사 환경제작물, 인쇄물 등 제작 및 출력	79	라이크OO	1억원 한도로 여성 또는 장애인 기업과 물품·용역 수의계약체결
	NEXTRISE 2020, SEOUL 행사 무대 조명시스템	21	디오라OO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NEXTRISE 2020, SEOUL 행사 접의자 및 아트의자 임대 설치	21	더퍼OO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NEXTRISE 2020, SEOUL 행사 넥스트라운드존 간판출력시공 및 타넴 임대시공	19	내외OO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NEXTRISE 2020, SEOUL 행사 중계시스템설치 운영 및 스케치 촬영	18	굿OO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NEXTRISE 2020, SEOUL 행사 스포츠라이트 공사	12	공간OO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합계	823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한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⁵⁾에 따르면 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여 다수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입찰 받아 계약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은행은 견적서를 입찰받지 않고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하여 국가계약법령을 위반하였음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금액에 대한 수의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계약일자	계약내용	수의계약 금액	계약상대방
2020.06.09	NextRise 2020, Seoul 총괄 운영 및 행사장 조성 계약	94	(주)에이치OO
2020.06.22	NEXTRISE 2020, SEOUL 행사환경제작물, 인쇄물등 제작 및 출력	79	라이크OO
2020.06.22	NEXTRISE 2020, SEOUL 행사 기본부스 조성 및 등록대 설치 용역	94	이야기가 있는 OO
2021.11.16	비수도권 합숙소 건조기 납품	88	글로OO
2021.11.26	자세교정의자 구입(2,033대)	64	주식회사 위키OOO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그 밖에도 한국산업은행은 2020년 1월 23일에 대구경북지역본부 신설 및 대구지점 이전을 함에 있어 계약금액을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가계약법령을 우회한 사례가 다소 발견되었음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견적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유사한 목적의 계약을 금액별로 분할하여 체결한 수의계약 사례

(단위: 백만원)

계약일자	계약내용	수의계약 금액	계약 상대방	수의계약 사유
2020.1.23	대구지점 이전공사(통신공사)	47	건웅정보OO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여성·장애인기업과 계약 체결
	대구경북지역본부 신설공사 (통신공사)	32		
2020.10.19	높낮이조절 책상 구입	30	엠에이치 OOOOOO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여성·장애인기업과 계약 체결
		22	(주)코아O	이미 조달된 물품의 설비확충
		41	디자인OOO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여성·장애인기업과 계약 체결
2021.02.09	냉난방기 구입	22	클락OOO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2021.02.18		16		
2021.02.23		8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국산업은행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구매 비율 3년 연속 미달성 및 하위 5개 기관에 포함

가. 현황

-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¹⁾에 따라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물로 구매하여야 함
- 그러나 한국산업은행의 2022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은 0.17%로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였음
 - 2022년 기준 주요 공공기관²⁾의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은 평균 1.40%로, 전체 101개 공공기관 중 81개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 구매 비율(1% 이상)을 달성하였으나, 한국산업은행은 미달성

한국산업은행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 현황 등(2022년 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구매액(A)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액(B)	구매비율(B/A)
한국철도공사 등 101개 기관	17,613,879	247,033	1.40
한국산업은행	152,511	256	0.17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김정훈 예산분석관 (02-6788-4685)

1)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물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계획의 작성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주요 공공기관(101개): 공기업(32개)·준정부기관(55개)·주요 기타공공기관[14개(은행형 기타공공기관·기금관리형 기타공공기관·4대 항만공사)]

나. 주요 쟁점

- 한국산업은행의 최근 3년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을 보면 2022년 0.17%, 2021년 0.15%, 2020년 0.15%로 구매실적이 매우 저조할뿐더러 3년 연속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한국산업은행의 2022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은 0.17%로, 주요 공공기관(101개 기관) 중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 하위 5개 기관에 포함되었음³⁾

최근 3년간 한국산업은행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구매액(A)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액(B)	구매비율(B/A)
2020	148,658	226	0.15
2021	155,849	239	0.15
2022	152,511	256	0.17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한국산업은행은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향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금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3) 주요 공공기관 중 2022년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 하위 5개 기관

구분	한국산업은행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국제교류재단
구매비율(%)	0.17	0.16	0.12	0.07	0.04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주택융자금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산업은행 내부 규정인 「복지규정」 제14조 등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주택융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3년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인원은 338명, 융자금액은 198억원임

한국산업은행 주택융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7월말
인원	336	357	399	435	398	338
융자금액	22,380,507	23,619,822	25,439,216	27,327,758	24,316,437	19,808,220
1인당 지원 한도	임차: 100,000 / 구입: 50,000					
관련 내부 규정	「복지규정」제14조(가계안정자금 대여) 「복지규정 시행세칙」제8조(가계안정자금 대여조건) 가계안정자금대여 운영지침 「한국산업은행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제20조(기금의 용도) 「한국산업은행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시행세칙」제11장(주택자금대출)					
지원 요건 (‘23.7월말 기준)	근속기간 6개월 이상으로 본인 및 배우자, 동거가족이 무주택자인 직원 등					
상환 조건 (‘23.7월말 기준)	(임차) 2년 내 일시상환 (구입) 3년 내 일시상환, 20년 내 분할상환(5년 거치 포함) 등					

주: 각 연도 말(2023년은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면서, 주택자금의 용자를 지원하는 경우 대출 이자율 하한과 대출한도 상한 등을 규정하였음

-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규정
- 대출 한도는 7천만원으로 하고, 주택 구입에 대한 지원의 경우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

나. 주요 쟁점

- 한국산업은행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주택용자금 금리를 동 기간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8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용자금을 제공하였음

한국산업은행 주택용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분기별 연동)의 비교

(단위: %)

구분	2018.1.	2019.1.	2020.1.	2021.1.	2022.1.	2022.7.	2023.1.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51	3.64	3.01	2.64	3.46	4.05	5.34
기관 주택용자금 금리	1.93~ 2.81	2.18 ~2.83	1.97~ 2.80	1.43~ 2.70	1.47~ 2.48	1.84~ 4.09	2.29~ 5.70

주: 기관 주택용자금 금리의 경우 해당 월의 초일 기준(기존 인원에게 적용 중인 금리도 포함)

- 한국산업은행은 2022년 이후에도 신규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지원하거나 7천만원을 초과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3년 7월 말에도 여전히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상의 대출 이자율, 한도 등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관련 한국산업은행 주택융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 천원)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7천만원을 초과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인원	금리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인원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51	2.36~5.12	3,786,920	미개정	32	3,052,920	미개정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 한국산업은행은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산업은행은 내부 규정인 「복지규정」 제14조 등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3년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인원은 1,451명, 지원금액은 419억원임

한국산업은행 생활안정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7월말
인원	1,319	1,380	1,510	1,661	1,576	1,451
지원금액	37,759,107	39,552,614	44,169,356	49,850,018	46,780,570	41,860,284
1인당 지원 한도	40,000					
관련 내부 규정	「복지규정」제14조(가계안정자금 대여) 「복지규정 시행세칙」제8조(가계안정자금 대여조건) 가계안정자금대여 운영지침 「한국산업은행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제20조(기금의 용도) 「한국산업은행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시행세칙」제4장(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 요건 (‘23.7월말 기준)	근속기간 6개월 이상					
상환 조건 (‘23.7월말 기준)	3년 내 일시상환, 8년 내 분할상환(3년 거치 포함)					

주: 각 연도 말(2023년은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면서, 생활안정자금의 대출을 지원하는 경우 대출 이자율 하한과 대출한도 상한 등을 규정하였음
 -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규정
 - 대출 한도는 2천만원으로 규정

나. 주요 쟁점

- 한국산업은행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생활안정자금 금리를 동 기간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8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한국산업은행 생활안정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분기별 연동)의 비교

(단위: %)

구분	2018.1.	2019.1.	2020.1.	2021.1.	2022.1.	2022.7.	2023.1.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51	3.64	3.01	2.64	3.46	4.05	5.34
기관 생활안정자금 금리	2.30~ 3.49	2.58~ 3.49	2.08~ 3.49	1.53~ 3.49	1.57~ 2.76	1.58~ 3.91	2.45~ 5.67

주: 기관 생활안정자금 금리의 경우 해당 월의 초일 기준(기존 인원에게 적용 중인 금리도 포함)

- 한국산업은행은 2022년 이후에도 신규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거나 2천만원을 초과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3년 7월 말에도 여전히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상의 대출 이자율, 한도 등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관련 한국산업은행 생활안정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 천원)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현황				2천만원을 초과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현황		
인원	금리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인원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474	2.46~5.21	10,638,040	미개정	329	10,427,100	미개정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 한국산업은행은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징계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산업은행 인원 중 2018~2023.7. 동안 징계를 받은 자는 총 30명임

한국산업은행 수위별·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2)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운전 관련	부정청탁 관련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3,495	30	3	0	4	0	6	17	1	4	0	1	1	1	24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8.1.1.~2023.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국가공무원법」,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아래와 같이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였음

-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을 참고하여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
- ‘정직’ 유형의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정직 기간 중 보수 전액을 감액할 것
- 공공부문 종사자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또한 인사 관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쟁점

- 한국산업은행은 2018년 이후 횡령, 배임, 사기, 유용 등 재산 관련 비위와 그에 대한 징계가 있었음에도, 2023년 8월 말까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한국산업은행은 '정직' 징계를 받은 인원에게 「직무성과급제규정 시행세칙」 제11조에 따라 그들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정직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였음
 -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직자에게 기준급의 40% 범위 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음

한국산업은행 정직자 대상 보수 지급 현황

(단위: 명, 개월, 천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7월말)
인원	0	1	1	0	0	2
평균 처분기간	-	6	6	-	-	1
보수지급액	-	14,376	14,763	-	-	3,927
관련 내부 규정 (‘23.7월말 기준)	「직무성과급제규정 시행세칙」 제11조(징계자의 보수)					
보수 지급 내용 (‘23.7월말 기준)	정직자의 경우 기준급의 40% 범위 내 지급					

주: 각 연도 내에(2023년의 경우 7월 31일 전) 징계가 확정된 인원 기준

- 한국산업은행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징계부가금 내부 규정 및 정직 기간 중 보수 지급 규정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1)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

가. 현황

- 중소기업은행은 내부 규정인 「임직원에 대한 대출규정」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3년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인원은 695명, 지원금액은 13,744,200천원임

중소기업은행 생활안정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7월말
인원	2,565	2,152	2,364	1,937	1,095	695
지원금액	49,477,150	41,618,000	47,182,300	38,187,100	21,578,300	13,744,200
1인당 지원 한도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관련 내부 규정	「임직원에 대한 대출 규정」 제8조(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지원 요건 (‘23.7월말 기준)	「임직원에 대한 대출 규정」제5조(대상직원) 가계안정자금대출의 융자대상자는 임직원으로 함					
상환 조건 (‘23.7월말 기준)	만기일시상환, 수시상환, 분할상환					

주: 각 연도 말(2023년은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면서, 생활안정자금의 대출을 지원하는 경우 대출 이자율 하한과 대출한도 상한 등을 규정하였음

-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규정
- 대출 한도는 2천만원으로 규정

김국찬 예산분석관 (02-6788-4681)

나. 주요 쟁점

- 중소기업은행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생활안정자금 금리를 동 기간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8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한 경우가 있음

중소기업은행 생활안정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분기별 연동)의 비교

(단위: %)

구분	2018.1.	2019.1.	2020.1.	2021.1.	2022.1.	2022.7.	2023.1.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51	3.64	3.01	2.64	3.46	4.05	5.34
기관 생활안정자금 금리	2.70~5.2	2.74~5.2	2.32~5.2	1.91~5.2	2.19~5.2	2.50~5.2	3.11~7.42

주: 기관 생활안정자금 금리의 경우 해당 월의 초일 기준(기존 인원에게 적용 중인 금리도 포함)

- 중소기업은행은 2022년 이후에도 신규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3년 7월 말에도 여전히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상의 대출 이자율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현황

(단위: 명, %, 천원)

인원	금리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1,134	4.26	22,491,200	미개정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 중소기업은행은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징계 관련 문제

가. 현황

■ 중소기업은행 인원 중 2018~2023.7. 동안 징계를 받은 자는 총 160명임

중소기업은행 수위별 · 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2)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운전 관련	부정청탁 관련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13,666	160	31	0	25	0	42	62	24	14	7	0	1	1	113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8.1.1.~2023.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국가공무원법」, 「2023년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장이 아래와 같이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였음

-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을 참고하여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재산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부정청탁 등)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할 것
- ‘정직’ 유형의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정직 기간 중 보수 전액을 감액할 것
- 공공부문 종사자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또한 인사 관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쟁점

- 중소기업은행은 2018년 이후 횡령, 배임, 사기, 유용 등 재산 관련 비위와 그에 대한 징계가 있었음에도, 2023년 8월 말까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중소기업은행은 재산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최하위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부여하였고, 이로 인해 성과급 총 3,428만원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 지급되었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지 않은 인원

(단위: 명, 천원)

구분	재산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부정청탁	계
인원 수	1	3	1	-	5
평가 등급	B 1명	S 1명, B 2명	A 1명	-	S 1명 A 1명 B 3명
징계연도	'21년 1명	'20년 1명 '21년 1명 '22년 1명	'21년 1명	-	'20년 1명 '21년 3명 '22년 1명
과다 지급된 성과급	7,943	25,444	897	-	34,284

주: 1. 2018.1.1.~2023.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평가등급은 징계일자 포함 기간의 내부평가급 기준이며, 성과급은 업적성과급 기준

- 중소기업은행은 '정직' 징계를 받은 인원에게 「직원상벌규정」 제3조에 따라 그들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정직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였음
 - 중소기업은행은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에도 정직자에게 상여금만을 불지급하도록 규정 하였으며, 본봉의 60% 범위 내에서 급여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중소기업은행 정직자 대상 보수 지급 현황

(단위: 명, 개월, 천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7월말)
인원	-	9	6	4	4	2
평균 처분기간	-	3	5	5	4	3
보수지급액	-	88,973	83,372	119,465	56,895	86,674
관련 내부 규정 (‘23.7월말 기준)	「직원상벌규정」 [별표 3] 징계의 효과					
보수 지급 내용 (‘23.7월말 기준)	본봉의 60% 범위 내 지급(단, 1년간 상여금은 정직 기간 불지급)					

주: 각 연도 내에(2023년의 경우 7월 31일 전에) 징계가 확정된 인원 기준

- 중소기업은행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징계부가금 내부 규정 및 정직 기간 중 보수 지급 규정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가. 현황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인수를 위하여 펀드투자 진행 중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민간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부실채권 인수 펀드에 수익자 지위로 간접 투자 중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총 미래에셋 5호, 유진 5-1호 등 8개의 펀드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들 펀드의 총 규모는 1조 9,956억원이며 이 중 공사 약정액은 총 7,870억원임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실채권 펀드투자 현황

(단위: 억원)

펀드명	운용사	펀드설정	존속 기간	투자 기간	투자구조	펀드 총규모(a)	공사 약정액(b)
미래에셋 5호	미래에셋 자산운용	'17.07	6년	3년	금융회사 부실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입찰 POOL 투자	1,400	600
유진 5-1호	유진 자산운용	'19.03	7년	3년		4,980	950
미래에셋 7호	미래에셋 자산운용	'19.05	6년	3년		1,000	250
KB 4호	KB자산운용	'21.08	6년	3년		960	470
미래에셋 8호	미래에셋 자산운용	'21.10	7년	3년	금융회사 담보부 부실채권 인수 등	1,240	400
이지스 3호	이지스 자산운용	'21.11	6년	3년		1,240	600
유진 SS&D 1-1호	유진 자산운용	'22.04	7년	3년		5,095	600
멀티에셋 선·중순위	멀티에셋 자산운용	'20.01	7년	4년	금융회사 부실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중순위 유동화 증권 인수	4,041	4,000
합계						19,956	7,870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나. 주요 쟁점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8년 업무방법서 개정을 통하여 민간과 경합하는 부실채권 매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2008)」에 따른 공사의 기능 조정 내용을 반영하여 민간과 경합하는 부실채권 매입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내용으로 업무방법서를 개정하였으며, 현재까지 동 개정 사항이 유지되고 있음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실채권 인수 관련 업무방법서 개정 전후 조문대비표

개정 전('06.3.30)	개정 후('08.12.17)
제2장 부실채권의 인수 및 수임정리 제1절 인수정리	제2장 부실채권의 인수 및 수임정리 제1절 인수정리
제6조(인수방법) ① ~ ④ (생략) ⑤ <u>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인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인수할 수 있다.</u> 1. <u>공사가 보유중인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관련채권을 인수할 필요가 있으나 관련채권 보유 금융기관이 입찰을 통하여 해당 채권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u> 2. <u>부실채권 보유 금융기관이 입찰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는 자가 없거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u> 3. <u>입찰에 참가하여 인수하는 것이 위원회가 의결한 부실채권 매입기준에 의하여 인수하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u>	제6조(인수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2008.12.17 본항삭제)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방법서

-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하여 민간부문이 수익성 저조 또는 고위험 등을 이유로 인수하지 않거나 부실채권의 성격, 규모, 시기상 민간부문에서 처리할 수 없는 부실채권을 정책적으로 인수하고 있음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펀드투자를 통하여 부실채권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업무 방법서 개정사항을 우회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 필요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펀드투자를 통하여 부실채권 매입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2008년 업무 방법서 개정 취지 및 현재 업무방법서를 우회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 펀드투자는 간접투자에 불과할 뿐이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펀드운용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 공사의 펀드투자는 민간투자자와의 공동 참여를 통하여 민간시장을 활성화하여 민간부분 내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므로 업무방법서 개정 사항을 우회하지 않는다는 입장
- 그러나 2023년 8월 기준 업무방법서에는 해외부실자산에 대한 펀드투자의 근거 규정만 존재할 뿐, 여전히 국내 부실채권에 대한 펀드 투자의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특히, 일부 펀드의 경우 펀드의 총 규모 대비 공사의 비중이 50%에 근접하고 있으며, 멀티에셋 선·중순위 펀드의 경우 펀드 총 규모의 99%가 공사 약정액에 해당하는 바, 공사의 펀드투자가 민간부분 내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라는 공사의 주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실채권 펀드투자별 공사 약정 비중

(단위: 억원, %)

펀드명	운용사	펀드 총규모(a)	공사 약정액(b)	공사 비중(b/a)
미래에셋 5호	미래에셋자산운용	1,400	600	42.9
유진 5-1호	유진자산운용	4,980	950	19.1
미래에셋 7호	미래에셋자산운용	1,000	250	25
KB 4호	KB자산운용	960	470	49
미래에셋 8호	미래에셋자산운용	1,240	400	32.3
이지스 3호	이지스자산운용	1,240	600	48.4
유진 SS&D 1-1호	유진자산운용	5,095	600	11.8
멀티에셋 선·중순위	멀티에셋 자산운용	4,041	4,000	99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참고로, 최근 5년간 부실채권 입찰시장에서 다수의 전업사들이 낙찰받은 바 있음

- 공사의 펀드투자는 민간투자자와의 공동 참여를 통하여 민간시장을 활성화하여 민간부분 내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라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입장과는 달리 부실채권 입찰시장에서 이미 민간부분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펀드투자를 통하여 운용사에 투자하고 있으나, 부실채권 입찰시장에는 이미 다수의 전업사가 존재하며, 낙찰비중 또한 커 민간부분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최근 5년간(2018~2022) 부실채권 입찰시장 낙찰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8.
전 업 사	유암코	20,436	20,630	13,547	11,664	12,737	11,643
	하나	5,314	5,441	13,260	9,914	2,987	9,847
	키움	-	-	1,424	3,899	1,407	4,114
	대신	9,294	3,220	5,607	3,052	2,510	2,878
	서울	-	-	262	-	-	-
	우리	-	-	-	-	3,823	3,257
	소계(a)	35,044	29,291	34,100	28,529	23,464	31,738
	비율(a/(a+b+c))	73	66	91	96	99	96
펀 드 운 용 사	이지스	3,351	2,457	2,152	-	227	658
	KB	2,911	-	-	-	-	273
	미래에셋	3,042	2,370	-	-	-	230
	유진	711	4,451	-	-	-	264
	코레이트	507	660	-	-	-	-
	파인트리	-	1,290	-	-	-	-
	소계(b)	10,522	11,228	2,152	-	227	1,425
	비율(b/(a+b+c))	22	25	6	0	1	4
대부업체(c)		2,486	3,554	1,729	1,649	293	55
비율(c/(a+b+c))		5	8	5	5	1	0

주: 금액은 낙찰받은 부실채권의 미상환 원금잔액(OPB)임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구매 비율 지속적인 감소

가. 현황

-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¹⁾에 따라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물로 구매하여야 함
-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2022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은 0.39%로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였음
 - 2022년 기준 주요 공공기관²⁾의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은 평균 1.40%로, 전체 101개 공공기관 중 81개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 구매 비율(1% 이상)을 달성하였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미달성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 현황 등(2022년 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구매액(A)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액(B)	구매비율(B/A)
한국철도공사 등 101개 기관	17,613,879	247,033	1.40
한국자산관리공사	29,754	116	0.39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김정훈 예산분석관 (02-6788-4685)

1)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물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계획의 작성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주요 공공기관(101개): 공기업(32개)·준정부기관(55개)·주요 기타공공기관[14개(은행형 기타공공기관·기금관리형 기타공공기관·4대 항만공사)]

나. 주요 쟁점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최근 3년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을 보면 2020년 2.94%, 2021년 1.05%, 2022년 0.39%로 지속 감소추세에 있으며, 2022년의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구매 비율(1% 이상)마저 달성하지 못하였음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물품 등 총 구매액은 2020년 264억 4,600만원에서 2022년 297억 5,400만원으로 12.5% 증가하였으나,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액은 2020년 7억 7,800만원에서 2022년 1억 1,600만원으로 크게(△85.1%) 감소하였음

최근 3년간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구매액(A)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액(B)	구매비율(B/A)
2020	26,446	778	2.94
2021	26,233	275	1.05
2022	29,754	116	0.39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의무 구매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향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금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1) 주택융자금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내부 규정인 「복지규정」 제12조의2, 제12조의3, 「복지세칙」 제5장 및 제6장에 따라 임직원에게 대해 주택융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3년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인원은 54명, 융자금액은 21억원임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융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7월말
인원	72	57	41	36	42	54
융자금액	4,905,113	3,840,361	2,840,823	2,621,356	3,361,064	5,057,092
1인당 지원 한도	160,000	160,000	160,000	160,000	160,000	160,000
관련 내부 규정	「복지규정」 제12조의2, 제12조의3, 「복지세칙」 제5장, 제6장					
지원 요건 (‘23.7월말 기준)	(전세) 근무지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소유주택이 없는 직원 1) 부양가족과 동거하는 직원 2) 결혼일자가 1개월 이내로 확정된 직원 3) 4년 이상 근속하고 단독세대주로서 주민등록표에 1명만 등재된 직원 (구입) 2년 이상 근속한 무주택 직원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하는 기혼 직원 2)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만 19세 미만의 형제자매를 실제로 부양하는 미혼 직원 3) 결혼일자가 1개월 이내로 확정된 직원					
상환 조건 (‘23.7월말 기준)	(전세) 만기 일시상환 (구입) 4년 거치 16년 분할 상환					

주: 각 연도 말(2023년은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김국찬 예산분석관 (02-6788-4681)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면서, 주택자금의 융자를 지원하는 경우 대출 이자율 하한과 대출한도 상한 등을 규정하였음

-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규정
- 대출 한도는 7천만원으로 하고, 주택 구입에 대한 지원의 경우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

나. 주요 쟁점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주택융자금 금리를 동 기간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8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융자금을 제공한 바 있음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융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분기별 연동)의 비교

(단위: %)

구분	2018.1.	2019.1.	2020.1.	2021.1.	2022.1.	2022.7.	2023.1.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51	3.64	3.01	2.64	3.46	4.05	5.34
기관 주택융자금 금리	3.3~6.7	3.3~6.7	3.3~6.7	3.3~6.7	3.3~6.7	3.3~6.7	3.3~6.7

주: 1. 기관 주택융자금 금리의 경우 해당 월의 초일 기준(기존 인원에게 적용 중인 금리도 포함)
2. 전용면적 85㎡ 이하는 3.3%, 85㎡ 초과는 6.7% 적용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2년 이후에도 신규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지원하거나 7천만원을 초과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3년 7월 말에도 여전히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상의 대출이자율, 한도 등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관련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융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 천원)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7천만원을 초과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인원	금리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인원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31	3.3	3,451,278	미개정	27	3,301,278	미개정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징계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원 중 2018~2023.7. 동안 징계를 받은 자는 총 16명임

한국자산관리공사 수위별 · 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2)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운전 관련	부정청탁 관련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1,846	16	2	0	7	0	5	2	3	2	0	0	1	0	10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8.1.1.~2023.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국가공무원법」, 「2023년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장이 아래와 같이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였음

-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을 참고하여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재산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부정청탁 등)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할 것
- ‘정직’ 유형의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정직 기간 중 보수 전액을 감액할 것
- 공공부문 종사자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또한 인사 관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쟁점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8년 이후 횡령, 배임, 사기, 유용 등 재산 관련 비위와 그에 대한 징계가 있었음에도, 2023년 8월 말까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이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로 인해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같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중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은 이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였는바 참고할 필요가 있음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의 징계부가금 부과 규정 비교

기관명	징계부가금 규정 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공무원연금공단	「인사규정」 제65조제1항 이사장은 직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함(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이 징계사유인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를 포함)
국민체육진흥공단	「인사규정」 제147조4제1항 징계요구권자가 제147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의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의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인사규정」 제40조 이사장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의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별표 2의5의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의를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함

주: 각 연도 내에(2023년의 경우 7월 31일 전) 징계가 확정된 인원 기준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재산비위, 성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 2명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최하위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부여하였고, 이로 인해 성과급 총 532만원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 지급되었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지 않은 인원

(단위: 명, 천원)

구분	재산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부정청탁	계
인원 수	1	1	-	-	2
평가 등급	D(업적), C(역량)	B(업적), D(역량)	-	-	2
징계연도	'21년 1명	'22년 1명	-	-	2
과다 지급된 성과급	-	5,322	-	-	5,322

주: 2018.1.1.~2023.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정직' 징계를 받은 인원에게 「보수규정」 제12조에 따라 그들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정직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였음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에도 정직자에게 기준월액의 80%에 해당 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음

한국자산관리공사 정직자 대상 보수 지급 현황

(단위: 명, 개월, 천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7월말)
인원	-	1	1	3	1	1
평균 처분기간	-	1	1	1.67	3	2
보수지급액	-	3,020	3,275	14,874	9,968	290
관련 내부 규정 (‘23.7월말 기준)	「보수규정」 제12조(징계처분을 받은 자, 직위해제자의 보수)					
보수 지급 내용 (‘23.7월말 기준)	「보수규정」 제12조(징계처분을 받은 자, 직위해제자의 보수)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월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직 : 정직기간 중 기준월액의 80% ③ 정직 및 직위해제 중인 직원에게는 직무급 및 평가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주: 각 연도 내에(2023년의 경우 7월 31일 전예) 징계가 확정된 인원 기준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징계부가금 내부 규정 및 정직 기간 중 보수 지급 규정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3) 성과급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한편, 내부 지침에 따라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였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급한 성과급 총액 현황

(단위: 명, 천원)

기준연도	임직원 수	기준연도 평가를 바탕으로 그 차년도(지급연도)에 지급한 성과급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급	합계
2020	1,913	4,342,412	22,034,706	26,377,118
2021	1,947	4,141,557	23,300,592	27,442,149
2022	1,887	3,476,579	23,507,509	26,984,088

-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성과급 지급 시 아래와 같이 차등화된 내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으로 할 것
 -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최고 등급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을 합하여 10% 이상으로 하고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주요 쟁점

■ 2020~2022년 평가를 기준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21~2023년에 지급한 성과급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이어야 하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 없이 5개 등급만으로 성과급 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은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어야 하나, 최근 3년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내부평가급의 최고 등급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미만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급별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지급 연도	성과급 구분		경영평가 등급	첫째 등급		둘째 등급		셋째 등급		넷째 등급		다섯째 등급		여섯째 등급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2021	경영평가성과급		A	12	135	22	115	44	100	10	85	12	65	-	-
	내부 평가급	1~2급	-	9	135	16	115	55	100	13.0	85	7	65	-	-
		3급	-	9	125	13	113	54	100	14	88	10	75	-	-
		4~6급	-	10	109	15	104	50	100	14	96	11	92	-	-
		공무직	-	9	109	15	104	52	100	15	96	9	92	-	-
2022	경영평가성과급		A	12	135	25	115	46	100	5	85	12	65	-	-
	내부 평가급	1~2급	-	9	135	17	115	53	100	14	85	7	65	-	-
		3급	-	10	125	13	113	53	100	15	88	9	75	-	-
		4~6급	-	9	109	14	104	55	100	13	96	9	92	-	-
		공무직	-	8	109	15	104	53	100	15	96	9	92	-	-
2023	경영평가성과급		B	11	135	15	115	50	100	13	85	11	65	-	-
	내부 평가급	1~2급	-	9	135	13	115	57	100	13	85	8	65	-	-
		3급	-	10	125	16	113	49	100	15	88	10	75	-	-
		4~6급	-	9	109	15	104	52	100	14	96	10	92	-	-
		공무직	-	9	109	16	104	52	100	15	96	8	92	-	-

주: 인원 및 지급률의 경우 실제 지급 기준이며, 소숫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성과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인 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성과급의 지급 취지와 지침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성과급 차등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1) 주택융자금 관련 문제

가. 현황

- 신용보증기금은 내부 규정인 「복지규정운영기준」 제6장(주택자금대여)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주택융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3년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인원은 26명, 융자금액은 23억원임

신용보증기금 주택융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7월말
인원	41	34	31	31	29	26
융자금액	2,890,014	2,441,515	2,544,318	2,639,312	2,374,111	2,300,121
1인당 지원 한도	130,000	130,000	130,000	130,000	130,000	130,000
관련 내부 규정	「복지규정운영기준」 제59조(대상직원) 및 제63조(대여조건)					
지원 요건 (‘23.7월말 기준)	2년 이상 근속하고 본인 및 부양가족이 무주택인 직원					
상환 조건 (‘23.7월말 기준)	5년 거치 13년 분할상환					

주: 각 연도 말(2023년은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면서, 주택자금의 융자를 지원하는 경우 대출 이자율 하한과 대출한도 상한 등을 규정하였음

-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규정
- 대출 한도는 7천만원으로 하고, 주택 구입에 대한 지원의 경우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

나. 주요 쟁점

■ 신용보증기금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주택용자금 금리를 동 기간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8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융자금을 제공하였음

신용보증기금 주택용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분기별 연동)의 비교

(단위: %)

구분	2018.1.	2019.1.	2020.1.	2021.1.	2022.1.	2022.7.	2023.1.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51	3.64	3.01	2.64	3.46	4.05	5.34
기관 주택용자금 금리	2.14	2.41	2.24	1.38	1.70	1.70	4.02

주: 기관 주택용자금 금리의 경우 해당 월의 초일 기준(기존 인원에게 적용 중인 금리도 포함)

- 신용보증기금은 2022년 이후에도 신규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지원하거나 7천만원을 초과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3년 7월 말에도 여전히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상의 대출 이자율, 한도 등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관련 신용보증기금 주택융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 천원)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7천만원을 초과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인원	금리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인원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1	4.02	130,000	미개정	1	130,000	미개정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 신용보증기금은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

가. 현황

- 신용보증기금은 내부 규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기준」 제2장(소액자금대출)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3년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인원은 647명, 지원금액은 205억원임

신용보증기금 생활안정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7월말
인원	704	623	605	614	565	647
지원금액	16,299,143	14,391,337	15,053,587	16,664,088	15,522,219	20,506,230
1인당 지원 한도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관련 내부 규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기준」 제2장(소액자금대출)					
지원 요건 (‘23.7월말 기준)	근속연수 2년 이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 등					
상환 조건 (‘23.7월말 기준)	만기 1년					

주: 각 연도 말(2023년은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면서, 생활안정자금의 대출을 지원하는 경우 대출 이자율 하한과 대출한도 상한 등을 규정하였음
 -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규정
 - 대출 한도는 2천만원으로 규정

나. 주요 쟁점

- 신용보증기금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생활안정자금 금리를 동 기간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8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신용보증기금 생활안정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분기별 연동)의 비교

(단위: %)

구분	2018.1.	2019.1.	2020.1.	2021.1.	2022.1.	2022.7.	2023.1.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51	3.64	3.01	2.64	3.46	4.05	5.34
기관 생활안정자금 금리	2.14~3.14	2.41~3.41	2.24~3.24	1.38~2.38	1.70~2.70	2.33~3.33	4.02~5.02

주: 기관 생활안정자금 금리의 경우 해당 월의 초일 기준(기준 인원에게 적용 중인 금리도 포함)

- 신용보증기금은 2022년 이후에도 신규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거나 2천만원을 초과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3년 7월 말에도 여전히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상의 대출 이자율, 한도 등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관련 신용보증기금 생활안정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 천원)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현황				2천만원을 초과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현황		
인원	금리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인원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128	4.34	2,508,290	미개정	127	3,670,000	미개정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 신용보증기금은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징계 관련 문제

가. 현황

■ 신용보증기금 인원 중 2018~2023.7. 동안 징계를 받은 자는 총 14명임

신용보증기금 수위별·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2)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운전 관련	부정청탁 관련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2,941	14	3	0	5	0	2	4	2	3	2	0	2	2	5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8.1.1.~2023.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국가공무원법」,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아래와 같이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였음

-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을 참고하여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재산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부정청탁 등)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할 것
- ‘정직’ 유형의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정직 기간 중 보수 전액을 감액할 것
- 공공부문 종사자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또한 인사 관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쟁점

- 신용보증기금은 2018년 이후 횡령, 배임, 사기, 유용 등 재산 관련 비위와 그에 대한 징계가 있었음에도, 2023년 8월 말까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신용보증기금은 재산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최하위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부여하였고, 이로 인해 성과급 총 2,784만원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 지급되었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지 않은 인원

(단위: 명, 천원)

구분	재산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부정청탁	계
인원 수	2	3	2	-	7
평가 등급	B 2명	A 1명, B 1명, C 1명	A 1명, B 1명	-	A 2명, B 4명, C 1명
징계연도	'20년 1명, '22년 1명	'20년 3명	'19년 1명, '22년 1명	-	'19년 1명, '20년 4명, '22년 2명
과다 지급된 성과급	1,459	15,293	11,089	-	27,841

주: 2018.1.1.~2023.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 신용보증기금은 '정직' 징계를 받은 인원에게 「직원상벌요령」 제13조에 따라 그들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정직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였음
 -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직자에게 기준급 범위 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음

신용보증기금 정직자 대상 보수 지급 현황

(단위: 명, 개월, 천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7월말)
인원	-	-	3	-	2	2
평균 처분기간	-	-	6	-	2	3
보수지급액	-	-	37,368	-	7,351	22,967
관련 내부 규정 (‘23.7월말 기준)	「직원상벌요령」 제13조(징계의 효력)					
보수 지급 내용 (‘23.7월말 기준)	정직자의 경우 기준급 범위 내 지급					

주: 각 연도 내에(2023년의 경우 7월 31일 전)에 징계가 확정된 인원 기준

- 신용보증기금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징계부가금 내부 규정 및 정직 기간 중 보수 지급 규정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4) 성과급 관련 문제

가. 현황

- 신용보증기금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임직원에게 대해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한편, 내부 지침에 따라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였음

신용보증기금이 지급한 성과급 총액 현황

(단위: 명, 천원)

기준연도	임직원 수	기준연도 평가를 바탕으로 그 차년도(지급연도)에 지급한 성과급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급	합계
2020	2,309	7,294,265	20,773,436	28,067,701
2021	2,418	6,343,072	21,682,674	28,025,746
2022	2,451	5,832,305	22,658,018	28,490,323

-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성과급 지급 시 아래와 같이 차등화된 내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으로 할 것
 -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최고 등급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을 합하여 10% 이상으로 하고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주요 쟁점

- 2020~2022년 평가를 기준으로 신용보증기금이 2021~2023년에 지급한 성과급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이어야 하나, 최근 3년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인원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최하위 등급이 없는 것과 유사하게 지급되었음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은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어야 하나, 최근 3년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3급 이하 내부평가급의 최고 등급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미만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신용보증기금 등급별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지급 연도	성과급 구분		경영 평가 등급	첫째 등급		둘째 등급		셋째 등급		넷째 등급		다섯째 등급		여섯째 등급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2021	경영평가성과급		A	9	107	14	93	59	80	11	67	7	53	-	-
	내부 평가급	본부 점장	-	10	520	16	455	50	390	15	325	10	260	-	-
		1~2급	-	7	270	12	235	61	200	13	165	7	130	-	-
		3급	-	10	255	15	227	56	200	11	173	8	145	-	-
		4급 이하	-	9	235	13	217	60	200	10	183	7	165	-	-
2022	경영평가성과급		A	9	90	14	79	60	68	10	56	7	45	-	-
	내부 평가급	본부 점장	-	10	520	15	455	50	390	15	325	10	260	-	-
		1~2급	-	6	270	11	235	62	200	13	165	8	130	-	-
		3급	-	10	255	15	227	56	200	11	173	7	145	-	-
		4급 이하	-	9	235	13	217	62	200	9	183	6	165	-	-
2023	경영평가성과급		B	6	80	18	70	57	60	12	50	6	40	-	-
	내부 평가급	본부 점장	-	10	520	15	455	49	390	16	325	9	260	-	-
		1~2급	-	7	270	14	235	59	200	13	165	7	130	-	-
		3급	-	6	255	18	227	54	200	15	173	7	145	-	-
		4급 이하	-	6	235	19	217	59	200	11	183	6	165	-	-

주: 인원 및 지급률의 경우 실제 지급 기준이며, 소숫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성과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인 바, 신용보증기금은 성과급의 지급 취지와 지침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성과급 차등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1) 징계 관련 문제

가. 현황

■ 예금보험공사 인원 중 2018~2023.7. 동안 징계를 받은 자는 총 4명임

예금보험공사 수위별·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2)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운전 관련	부정청탁 관련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868	4	2	0	0	0	1	1	1	1	0	0	0	0	2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8.1.1.~2023.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국가공무원법」,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아래와 같이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였음

-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을 참고하여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
-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 처리를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도록 할 것
- 공공부문 종사자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또한 인사 관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쟁점

- 예금보험공사는 2018년 이후 횡령, 배임, 사기, 유용 등 재산 관련 비위와 그에 대한 징계가 있었음에도, 2023년 8월 말까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예금보험공사에서 2018년 이후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총 1회의 징계위원회에서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지 않았음

예금보험공사 성비위 관련 징계위원회 구성 현황

(단위: 명, %)

징계위원회 구성 일자	성비위 종류	위원 수(A) (위원장 제외)	피해자와 성별이 같은 위원 수(B)	피해자와 성별이 다른 위원 수	비중(B/A)
2021.3.26.	성추행	6	1	5	16.7

- 예금보험공사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징계부가금 내부 규정 및 징계위원회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성과급 관련 문제

가. 현황

- 예금보험공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임직원에게 대해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한편, 내부 지침에 따라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였음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한 성과급 총액 현황

(단위: 명, 천원)

기준연도	임직원 수	기준연도 평가를 바탕으로 그 차년도(지급연도)에 지급한 성과급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급	합계
2020	843	2,137,216	17,790,821	19,928,037
2021	846	2,283,854	14,155,331	16,439,185
2022	863	2,216,529	14,365,540	16,582,069

-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성과급 지급 시 아래와 같이 차등화된 내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으로 할 것
 -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최고 등급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을 합하여 10% 이상으로 하고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주요 쟁점

■ 2020~2022년 평가를 기준으로 예금보험공사가 2021~2023년에 지급한 성과급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이어야 하나, 최근 3년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인원이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최하위 등급이 없는 것과 유사하게 지급되었음
-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나, 최근 3년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셋째 등급의 인원 비율이 50%를 매년 상회하였음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은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어야 하나, 최근 3년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내부평가급의 최고 등급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미만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예금보험공사 등급별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지급 연도	성과급 구분		경영평가 등급	첫째 등급		둘째 등급		셋째 등급		넷째 등급		다섯째 등급		여섯째 등급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2021	경영 평가 성과급	1~2급	B	7	190	13	117	60	100	11	83	9	10	0	0
		3급		9	180	13	117	56	100	13	83	10	20	0	0
		4급		8	170	13	117	58	100	9	83	12	30	0	0
		기타		9	160	11	117	59	100	12	83	8	40	0	0
	내부 평가급	1~2급		7	128	13	114	60	100	11	86	9	72	0	0
		3급		9	113	13	106	56	100	13	94	10	87	0	0
		4급		9	101	13	100	57	100	12	100	10	99	0	0
		이하													
		특정 직원		12	110	3	105	71	100	9	95	6	90	0	0
		전문 직원		4	113	4	106	80	100	4	94	8	87	0	0

지급 연도	성과급 구분		경영평가 등급	첫째 등급		둘째 등급		셋째 등급		넷째 등급		다섯째 등급		여섯째 등급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2022	경영 평가 성과급	1~2급	B	6	190	10	117	65	100	11	83	8	10	0	0
		3급		9	180	12	117	59	100	13	83	8	20	0	0
		4급		8	170	12	117	60	100	7	83	13	30	0	0
		기타		8	160	12	117	60	100	12	83	8	40	0	0
	내부 평가급	1~2급		6	128	10	114	65	100	11	86	8	72	0	0
		3급		9	113	12	106	59	100	13	94	8	87	0	0
		4급 이하		8	101	13	100	58	100	11	100	10	99	0	0
		특정 직원		11	110	0	105	82	100	0	95	7	90	0	0
		전문 직원		4	113	8	106	71	100	8	94	8	87	0	0
2023	경영 평가 성과급	1~2급	B	6	190	10	117	67	100	10	83	8	10	0	0
		3급		8	180	13	117	58	100	10	83	10	20	0	0
		4급		8	170	12	117	59	100	9	83	12	30	0	0
		기타		9	160	12	117	58	100	12	83	9	40	0	0
	내부 평가급	1~2급		6	128	10	114	67	100	10	86	8	72	0	0
		3급		8	113	13	106	58	100	10	94	10	87	0	0
		4급 이하		9	101	13	100	58	100	11	100	10	99	0	0
		특정 직원		0	110	0	105	100	100	0	95	0	90	0	0
		전문 직원		8	113	8	106	67	100	8	94	8	87	0	0

주: 인원 및 지급률의 경우 실제 지급 기준이며, 소숫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성과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국민에 대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인 바, 예금보험공사는 성과급의 지급 취지와 지침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성과급 차등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4) 휴가·휴직 관련 문제

가. 현황

- 예금보험공사는 「인사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라 휴가 제도를, 동 규정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라 휴직제도를 마련하였음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공기관이 「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휴가제도를 운영할 것을 규정하면서, 관련 규정을 감안하여 휴직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음
 - 휴가제도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차 유급휴가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3과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연가의 저축 및 특별휴가 외에 다른 휴가제도를 운영할 수 없음을 규정
 - 휴직제도의 경우 휴직의 사유와 기간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와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며, 휴직 기간 중 보수 지급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야 함을 명시

나. 주요 쟁점

- 예금보험공사의 휴가·휴직 규정에서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없는 휴가·휴직사유를 인정하고 있음

예금보험공사 휴가·휴직규정과 국가공무원 관련 규정의 비교

(단위: 명)

구분		예금보험공사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	관련 휴가인원
휴가사유	청원휴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또는 그 배우자가 사망한 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만 가능	8명(8일, 총 1,395천원)

주: 규정은 2023.7.31. 현행 기준, 관련 인원은 2018.1.1.~2023.7.31. 기준

- 예금보험공사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내부 휴가·휴직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1)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내부 규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26조에 따라 임직원에게 대해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3년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인원은 564명, 지원금액은 134억원임

한국주택금융공사 생활안정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7월말
인원	417	465	533	577	562	564
지원금액	7,939,487	9,385,807	11,470,653	13,219,210	13,118,740	13,373,510
1인당 지원 한도	19,040	20,185	21,521	22,910	23,343	23,712
관련 내부 규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26조(기금의 용도)					
지원 요건 (‘23.7월말 기준)	입사일로부터 만 1년 이상 경과한 직원					
상환 조건 (‘23.7월말 기준)	1년 상환(연장가능)					

주: 각 연도 말(2023년은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면서, 생활안정자금의 대출을 지원하는 경우 대출 이자율 하한과 대출한도 상한 등을 규정하였음
 -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규정
 - 대출 한도는 2천만원으로 규정

나. 주요 쟁점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생활안정자금 금리를 동 기간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8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한국주택금융공사 생활안정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분기별 연동)의 비교

(단위: %)

구분	2018.1.	2019.1.	2020.1.	2021.1.	2022.1.	2022.7.	2023.1.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51	3.64	3.01	2.64	3.46	4.05	5.34
기관 생활안정자금 금리	1.7	2.0	1.8	1.8	2.0	2.0	2.0

주: 기관 생활안정자금 금리의 경우 해당 월의 초일 기준(기존 인원에게 적용 중인 금리도 포함)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2년 이후에도 신규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거나 2천만원을 초과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3년 7월 말에도 여전히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상의 대출 이자율, 한도 등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관련 한국주택금융공사 생활안정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 천원)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현황				2천만원을 초과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현황		
인원	금리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인원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28	2.0	840,000	미개정	28	840,000	미개정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징계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원 중 2018~2023.7. 동안 징계를 받은 자는 총 12명임

한국주택금융공사 수위별·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2)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운전 관련	부정청탁 관련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1,014	12	2	0	5	0	2	3	0	4	1	0	3	3	2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8.1.1.~2023.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국가공무원법」,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아래와 같이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였음

- ‘정직’ 유형의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정직 기간 중 보수 전액을 감액할 것
- 공공부문 종사자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또한 인사 관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쟁점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정직’ 징계를 받은 인원에게 「인사규정」 제93조에 따라 그들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정직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였음
 -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직자에게 기본 연봉의 40% 범위 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음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직자 대상 보수 지급 현황

(단위: 명, 개월, 천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7월말)
인원	1	1	-	-	3	-
평균 처분기간	3.0	3.0	-	-	4.3	-
보수지급액	-	3,990	-	-	50,256	-
관련 내부 규정 (‘23.7월말 기준)	「인사규정」 제93조(징계의 효과)					
보수 지급 내용 (‘23.7월말 기준)	「인사규정」 제93조(징계의 효과) ①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승진불허 및 승급정지 기간에 제91조제9호, 제10호, 제14호,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라 징계를 받은 직원의 경우 6개월을 가산한다. 1. (생략) 2. 정 직 가. 1개월부터 6개월 이내 출근정지 나. 기본연봉의 40%범위내 지급 다. 승진불허 및 승급정지 : 정직기간에 18개월을 가산한 기간 라. 정직기간중 성과연봉 미지급 (이하생략)					

주: 각 연도 내에(2023년의 경우 7월 31일 전) 징계가 확정된 인원 기준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정직 기간 중 보수 지급 규정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3) 휴가·휴직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인사규정」 제55조부터 제64조까지에 따라 휴가제도를, 동 규정 제66조부터 제78조까지에 따라 휴직제도를 마련하였음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공기관이 「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휴가제도를 운영할 것을 규정하면서, 관련 규정을 감안하여 휴직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음
 - 휴가제도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차 유급휴가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3과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연가의 저축 및 특별휴가 외에 다른 휴가제도를 운영할 수 없음을 규정
 - 휴직제도의 경우 휴직의 사유와 기간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와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며, 휴직 기간 중 보수 지급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야 함을 명시

나. 주요 쟁점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휴가·휴직 규정에서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없는 휴가·휴직사유를 인정하고 있음

한국주택금융공사 휴가·휴직규정과 국가공무원 관련 규정의 비교

(단위: 명)

구분		한국주택금융공사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	관련 휴가인원
휴직사유	청원휴직	해외유학,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석사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 이내 휴직 가능	없음	1명

주: 규정은 2023.7.31. 현행 기준, 관련 인원은 2018.1.1.~2023.7.31. 기준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내부 휴가·휴직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구매 비율 지속적인 감소

가. 현황

-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¹⁾에 따라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물로 구매하여야 함
- 그러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2022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은 0.82%로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였음
 - 2022년 기준 주요 공공기관²⁾의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은 평균 1.40%로, 전체 101개 공공기관 중 81개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 구매 비율(1% 이상)을 달성하였으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미달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 현황 등(2022년 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구매액(A)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액(B)	구매비율(B/A)
한국철도공사 등 101개 기관	17,613,879	247,033	1.4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26,334	1,847	0.82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김정훈 예산분석관 (02-6788-4685)

1)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물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계획의 작성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주요 공공기관(101개): 공기업(32개)·준정부기관(55개)·주요 기타공공기관[14개(은행형 기타공공기관·기금관리형 기타공공기관·4대 항만공사)]

나. 주요 쟁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최근 3년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을 보면 2020년 2.26%, 2021년 1.37%, 2022년 0.82%로 지속 감소추세에 있으며, 2022년의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구매 비율(1% 이상)마저 달성하지 못하였음

최근 3년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구매액(A)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액(B)	구매비율(B/A)
2020	92,563	2,097	2.26
2021	165,982	2,270	1.37
2022	226,334	1,847	0.82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향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금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생활안정자금 및 징계 등 관련 문제점

1)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내부 규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임직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생활안정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7월말
인원	50	73	156	51	89	-
지원금액	945,000	1,385,000	2,941,000	982,000	1,702,000	-
1인당 지원 한도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관련 내부 규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제7조(대부금액 및 이자율)					
지원 요건 (‘23.7월말 기준)	근속연수 2년 이상 재직 직원 중 혼례비, 의료비, 장례비 등 기타 사유로 인해 대부 희망 직원					
상환 조건 (‘23.7월말 기준)	1년 이내(2회 연장 가능) ※ 공단 대·내외적으로 문란한 금전관계 등 품행 불량한 자 제외					

주: 각 연도 말(2023년은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면서, 생활안정자금의 대출을 지원하는 경우 대출 이자율 하한과 대출한도 상한 등을 규정하였음
 -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규정
 - 대출 한도는 2천만원으로 규정

김국찬 예산분석관 (02-6788-4681)

나. 주요 쟁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생활안정자금 금리를 동 기간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생활안정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분기별 연동)의 비교

(단위: %)

구분	2018.1.	2019.1.	2020.1.	2021.1.	2022.1.	2022.7.	2023.1.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51	3.64	3.01	2.64	3.46	4.05	5.34
기관 생활안정자금 금리	2.5	2.5	2.5	2.5	2.5	2.5	5.34

주: 기관 생활안정자금 금리의 경우 해당 월의 초일 기준(기존 인원에게 적용 중인 금리도 포함)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2022년 이후에도 신규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3년 7월 말 기준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이전 대여자의 경우 여전히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상의 대출 이자율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현황

(단위: 명, %, 천원)

인원	금리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내부규정 개정 전 지원이 시작된 인원에 대해 적용 중인 금리
89	2.5	1,702,000	개정	2.5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규정 개정 이전 대여자에 대해서도 동 지침의 내용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2) 징계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원 중 2018~2023.7. 동안 징계받은 자는 총 168명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위별 · 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2)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운전 관련	부정청탁 관련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7,570	168	12	0	35	0	63	58	11	8	0	1	10	11	129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8.1.1.~2023.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국가공무원법」,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아래와 같이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였음

-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부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을 참고하여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
-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 처리를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도록 할 것
- 공공부문 종사자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또한 인사 관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쟁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2018년 이후 횡령, 배임, 사기, 유용 등 재산 관련 비위와 그에 대한 징계가 있었음에도, 2023년 8월 말까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2018년 이후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총 11회의 징계위원회 중 2회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지 않았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성비위 관련 징계위원회 구성 현황

(단위: 명, %)

징계위원회 구성 일자	성비위 종류	위원 수(A) (위원장 제외)	피해자와 성별이 같은 위원 수(B)	피해자와 성별이 다른 위원 수	비중(B/A)
2019.7.24.	성희롱	6	4	2	66.7
2019.10.18.	성희롱	6	3	3	50.0
2019.11.14.	성희롱	5	1	4	20.0
2019.6.20.	성추행	5	4	1	80.0
2019.6.26.	성추행	7	6	1	85.7
2021.11.24.	성희롱	7	4	3	57.1
2022.1.12.	성희롱	8	3	5	37.5
2022.4.29.	성희롱	7	2	5	28.6
2022.8.5.	성희롱	5	2	3	40.0
2022.8.26.	성희롱	5	4	1	80.0
2023.2.2.	성추행	5	2	3	40.0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징계부가금 내부 규정 및 징계위원회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3) 휴가·휴직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복무규정」 제24조부터 제36조까지에 따라 휴가제도를, 「인사규정」 제38조부터 제40조의2까지에 따라 휴직제도를 마련하였음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공기관이 「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휴가제도를 운영할 것을 규정하면서, 관련 규정을 감안하여 휴직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음
 - 휴가제도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차 유급휴가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3과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연가의 저축 및 특별휴가 외에 다른 휴가제도를 운영할 수 없음을 규정
 - 휴직제도의 경우 휴직의 사유와 기간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와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며, 휴직 기간 중 보수 지급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야 함을 명시

나. 주요 쟁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휴가·휴직 규정에서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없는 휴가·휴직사유를 인정하고 있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휴가·휴직규정과 국가공무원 관련 규정의 비교

(단위: 명)

구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	관련 휴가인원
휴가사유	특별휴가	감정노동에 따른 휴가를 청구한 경우	없음	25,571명 (29,119일, 총 3,201,245천원)

주: 규정은 2023.7.31. 현행 기준, 관련 인원은 2018.1.1.~2023.7.31. 기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내부 휴가·휴직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II

기획재정위원회



가. 일반현황

-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산하 4개 기관, 관세청 산하 1개 기관임
 -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준시장형 공기업인 한국조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기타공공기관 3개 기관으로 총 4개 기관
 - 관세청 산하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인 (재)국제원산지정보원 1개 기관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기획재정부 (4)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조폐공사
	기타 공공기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재정정보원, 한국투자공사
관세청 (1)	기타 공공기관	(재)국제원산지정보원

나.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현황

- 2022년 기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를 받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 1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개 기관임
 -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대상인 기획재정부 산하 2개 공공기관 모두 2021년 경영실적평가 대비 2022년 경영실적평가 등급이 상승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및 경영성과급(2018~2022)

(단위: 천원)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기획재정부 (2)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조폐공사	경영결과	B	A	B	C	B
			경영성과급	7,757	8,283	10,177	6,268	4,97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재정정보원	경영결과	D	C	B	B	A
			경영성과급	0	194	951	1,298	1,373

주: 1.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는 2022년 공공기관 현황에 따름
 2. 경영성과급은 전년도 경영실적평가결과와 후속조치로 차년도에 지급되며, 일반정규직 기준임
 3. 경영성과급(기관평가)은 범주별(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범주별 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등급별·유형별로 차등지급(성과급 지급률=종합 50%+경영관리 25%+주요사업 25%)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연도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결과 발표」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다. 종합청렴도 현황

- 2022년 기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받은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준시장형 공기업 1개, 기타공공기관 1개 기관임
 - 2021년 청렴도 평가 대비 2022년 등급이 하락한 기관은 한국조폐공사이며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했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현황(2018~2022)

(단위: 등급)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2018	2019	2020	2021	2022
기획재정부 (4)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조폐공사	2	3	2	2	4
	기타공공기관	한국재정정보원	2	2	2	-	-
		한국수출입은행	5	2	2	2	2
		한국투자공사	2	3	2	-	-

주: 1. (-)은 청렴도 조사 미수행을 의미함
 2. 공공기관 유형은 2023년 기준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가. 현황

- 한국수출입은행은 ESG 경영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ESG 경영을 추진 중
 - 한국수출입은행은 국내 최초로 2013년에 환경(E) 분야의 녹색채권을 발행하였으며, 2020년에는 차년도 사업계획의 주요 방향을 ESG 확산으로 결정하는 등 ESG 경영을 강조 중
 - 한국수출입은행은 2021년 ESG 경영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ESG 금융프로그램을 신설하고, ESG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ESG경영을 추진 중

한국수출입은행 ESG금융프로그램 현황

구분	분야 및 내용	
ESG 품목기반 지원	지속가능성장 촉진	- 혁신성장품목 중 환경 또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ESG품목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ESG 성과창출 지원	글로벌 넷제로 촉진	- 정부의 2050탄소중립 정책 등 글로벌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저탄소 산업구조 촉진' 프로그램
	그린 성장 촉진	- 친환경경영 촉진과 비즈니스를 통한 환경문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환경성과 우수기업 우대지원' 및 '그린론' 프로그램
	포용적 성장 촉진	- 사회적 책임 경영 촉진과 비즈니스를 통한 고용창출, 사회적 가치 창출 등 지속가능한 경제에 기여하기 위한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지원' 및 '소셜론' 프로그램
중소·중견기업 ESG 활성화	중소·중견기업 지속가능성장 지원	- 수출초기기업 성장지원, ESG경영 실천 지원, 상생금융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한국수출입은행은 최근(2023.4.)에도 ESG 위원회를 열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이니셔티브인 PCAF(탄소회계금융협업체) 가입을 의결하는 등 친환경 경영을 위하여 노력 중

■ 특히, 한국수출입은행은 녹색금융 지원을 위하여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녹색채권 발행

- 한국수출입은행은 2022년에 16억 2,400만 달러의 녹색채권을 발행하였음. 한국수출입은행은 2013년 5억 달러 규모의 녹색채권을 처음 발행하였으며, 한국수출입은행이 2013년 이래로 발행한 녹색채권의 규모는 총 58억 1,500만달러임

한국수출입은행 녹색채권 발행 내역

(단위: U\$백만)

구분	2013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녹색채권 발행금액	998	400	50	761	1,982	1,624	5,815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재구성

나. 주요 쟁점

■ 한국수출입은행의 전체 여신지원 중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지원 금액 및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

- 최근 5년간 한국수출입은행의 연도별 석탄화력발전 지원 금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2018년 말 기준으로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여신 잔액은 2조 5,178억원이었으나, 2022년 말 기준으로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여신 잔액은 3조 7,255억원으로 1조 2,000억원 이상 증가하였음. 2023년 7월말 기준으로 석탄화력발전 여신 잔액은 3조 7,827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 한국수출입은행의 전체 여신 대비 석탄화력발전 지원 비중도 2018년 2.4%에서 2022년 2.9%로 증가하였으며, 2023년 7월말 기준으로 3.0%로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한국수출입은행 연도별 석탄화력발전 지원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7월
전체 여신(A)	1,047,158	1,033,294	1,008,686	1,082,532	1,265,805	1,270,107
석탄화력발전(B)	25,178	21,133	24,538	31,204	37,255	37,827
비중(B/A)	2.4	2.0	2.4	2.9	2.9	3.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이러한 한국수출입은행의 석탄화력발전 지원 증가는 한국수출입은행의 ESG 경영과 배치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그 적절성에 대한 검토 필요

■ 특히, 해외투자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은 총 8개의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수행 중

-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 중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총 8개이며, 총 지원 금액은 45억 200만 달러이며, 잔액은 2023년 6월 기준 29억 7,100만 달러임
- 8개 사업 중 인도네시아 짜레본 1(Cirebon 1) 등 6개 사업은 모두 건설이 완료되었으며, 인도네시아 자바(JAWA) 9&10과 베트남 봉양2(Vung Ang 2)은 현재 건설이 진행 중임

한국수출입은행 해외 석탄화력발전 지원 현황

(단위: U\$백만)

사업명	단계	승인일	승인금액	잔액 (’23.6월)
Cirebon 1	건설기간:~’12.7월 대출기간: 약 18년	’10.2.24	238	41
Mong Duong 1	건설기간:~’16.1월 대출기간: 약 14년	’12.12.17	510	204
Vinh Tan 4	건설기간: ~’18.3월 대출기간: 약 15년	’14.6.17	409	273
Song Hau 1	건설기간: ~’22.4월 대출기간: 약 15년	’15.12.17	480	336
Cirebon 2	건설기간: ~’23.5월 대출기간: 약 22년	’17.4.14	522	507
Nghi Son 2	건설기간: ~’22.7월 대출기간: 약 19년	’18.4.11	935	883
Jawa 9&10	건설기간: ~’25.2월(예정) 대출기간: 약 15년	’20.7.3	700	393
Vung Ang 2	건설기간: ~’25.10월(예정) 대출기간: 약 19년	’20.11.12	708	334
합계			4,502	2,97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특히, 한국수출입은행은 2013년 국내 최초 녹색채권을 발행하였고, 2019년 4월 한국환경 산업기술원과 ‘친환경기업 금융지원 및 기업의 환경경영확산 업무협약’을 맺는 등 지속적으로 친환경 경영을 추진함과 동시에 해외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지원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의 적절성 등에 대한 검토 필요

가. 현황

■ 한국수출입은행 인원 중 2018~2023.7. 동안 징계를 받은 자는 총 19명임

한국수출입은행 수위별·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2)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운전 관련	부정청탁 관련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1,249	19	0	0	5	0	2	12	0	3	2	0	0	1	15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8.1.1.~2023.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국가공무원법」,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아래와 같이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였음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재산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부정청탁 등)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할 것
- 공공부문 종사자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또한 인사 관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쟁점

- 한국수출입은행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 1명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최하위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부여하였으며, 이로 인해 성과급 49만 2천 원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 지급되었음
 - 이와 관련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은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하여 성과평가 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나, 금융노조의 반발로 인하여 기관의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 입장임
- 한국수출입은행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한국조폐공사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과다 및 분할 수의계약 문제

가. 현황

- 공공기관은 계약체결 시 체결 과정의 공정성을 위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¹⁾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음

주요 수의계약 사유(관련 규정)

주요 수의계약 사유	관련 규정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와의 계약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등
긴급한 경우 등으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인 경우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단체 등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 - 추정가격 2천만원(여성기업·사회적기업 등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인 소액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물품을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할 때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한 경우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주: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말함

김정훈 예산분석관 (02-6788-4685)

1)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계약의 방법)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5조(계약의 방법)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한국조폐공사의 최근 3년간 총 계약금액 대비 수의계약 금액 비율은 61.0%로 수의계약 비율이 과다한 상황임

- 101개 주요 공공기관²⁾의 최근 3년간 총 계약금액 대비 수의계약 금액 비율은 18.5%인데, 한국조폐공사는 61.0%로 주요 공공기관 평균 수의계약 비율의 3배가 넘음

최근 3년간 한국조폐공사 수의계약 비율 현황 등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계약금액(A)	수의계약 금액(B) ¹⁾	수의계약 비율(B/A)
주요 공공기관(101개 기관)	147,834,329	27,409,626	18.5
한국조폐공사	958,977	584,991	61.0

주: 표에 따른 수의계약 금액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상 수의계약으로 분류되나 실질적으로는 입찰을 실시한 '소액수의견적 입찰'이나 '입찰결과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금액을 제외한 순수 수의계약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자료: 한국조폐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주요 쟁점

■ 한국조폐공사의 최근 3년간 총 계약금액 대비 수의계약 금액 비율을 보면 2020년 53.0%, 2021년 63.8%, 2022년 70.2%로 수의계약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임

최근 3년간 한국조폐공사 수의계약 비율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계약금액(A)	수의계약 금액(B)	수의계약 비율(B/A)
2020	413,687	219,323	53.0
2021	264,991	168,996	63.8
2022	280,299	196,672	70.2

자료: 한국조폐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주요 공공기관(101개): 공기업(32개)·준정부기관(55개)·주요 기타공공기관[14개(은행형 기타공공기관·기금관리형 기타공공기관·4대 항만공사)]

- 한국조폐공사의 최근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을 주요 사유별로 분류하면 ‘계약의 목적·성질 상 경쟁입찰이 비효율적인 경우’와 ‘특정인의 기술 필요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비중이 높은 상황

한국조폐공사의 주요 수의계약 사유별 현황

(단위: 백만원, %)

공공기관	수의계약 사유					
	자회사와의 계약 등	긴급한 경우 등	특정인의 기술 필요 등	중소기업자 제품 구매 등	장애인단체 제품 구매 등	계약의 목적·성질 상 경쟁입찰이 비효율적인 경우
한국조폐공사	40,903 (7.0)	7,297 (1.2)	256,028 (43.8)	0 (0.0)	831 (0.1)	279,932 (47.9)

자료: 한국조폐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계약의 목적·성질 상 경쟁입찰이 비효율적인 경우’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비중은 47.9%에 해당
 - 한국조폐공사는 ‘물품을 가공·하역·운송·보관할 때 경쟁이 불리한 경우’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등’ 소액 계약에 따른 사유로 수의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
 - 화폐제조과정 등에서 특허기술 등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비중은 43.8%에 해당
- 한편, 한국조폐공사가 최근 3년간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주요업체는 다음과 같음

최근 3년간 한국조폐공사가 체결한 주요 수의계약 업체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업체명	주요 계약내용	수의계약 건수	수의계약 금액	주요 수의계약 사유
(주)골드앤드00	근속메달 사업 관련 메달세트 외주가공 계약	146	152,626	물품을 가공·하역·운송·보관 할 때 경쟁이 불리한 경우
대성00(주)	시상메달 사업 관련 메달세트 외주가공 계약	88	13,646	물품을 가공·하역·운송·보관 할 때 경쟁이 불리한 경우
신광0	인쇄용지 특수용지 외주가공 계약	101	5,381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제품
(주)솔버0	교부판독기 구매·설치 칼라리본·프린트 헤드 구매 등	57	3,849	·이미 조달된 물품의 설비확충 ·소액금액 계약
덕수00(주)	인쇄용지 정품인증 패키지 외주가공 계약	49	6,847	물품을 가공·하역·운송·보관 할 때 경쟁이 불리한 경우
(주)세종00	인쇄용지 정품인증 패키지 외주가공 계약 정품인증 레이블 외주가공 계약	47	1,911	·물품을 가공·하역·운송·보관 할 때 경쟁이 불리한 경우 ·소액금액 계약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한국조폐공사는 ‘물품을 가공·하역·운송·보관할 때 경쟁이 불리한 경우’의 사유로 최근 3년간 ‘골드앤드00’ 및 ‘대성00’ 업체와 메달세트 외주가공 계약을 각각 146건/1,526억원, 88건/136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 메달제작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는 시중에 많이 존재함을 고려할 때 동 계약은 경쟁입찰을 통한 연간 단가 계약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보임

■ 또한 유사한 목적의 계약은 일괄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조폐공사는 이를 금액별로 분할하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국가계약법령을 우회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음

유사한 목적의 계약을 금액별로 분할하여 체결한 수의계약 사례

(단위: 백만원)

계약일자	계약내용	수의계약 금액	계약 상대방	수의계약 사유
2022.11.1	칼라리본, 오버레이리본 구매	6	(주)솔버O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2022.11.7	오버레이리본 구매	19		
2022.11.15	칼라리본 구매	17		
2021.04.26	화폐본부 요판인쇄기 설치 바닥 기초공사	15	태림이OO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2021.04.27	화폐본부 요판인쇄기 설치 바닥 도장공사	13		
2020.09.14	계층별(팀,부장) 리더십역량 향상교육 용역계약	12	엑스퍼트 OOO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2020.11.18	계층별(대리) 리더십역량 향상교육 용역계약	5		
2020.11.17	계층별(차장) 리더십역량 향상교육 용역계약	5	엠앤씨커뮤니 OOO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국조폐공사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구매 비율 지속적인 감소

가. 현황

-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¹⁾에 따라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물로 구매하여야 함
- 그러나 한국조폐공사의 2022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은 0.34%로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였음
 - 2022년 기준 주요 공공기관²⁾의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은 평균 1.40%로, 전체 101개 공공기관 중 81개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 구매 비율(1% 이상)을 달성하였으나, 한국조폐공사는 미달성

한국조폐공사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 현황 등(2022년 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구매액(A)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액(B)	구매비율(B/A)
한국철도공사 등 101개 기관	17,613,879	247,033	1.40
한국조폐공사	99,097	333	0.34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김정훈 예산분석관 (02-6788-4685)

1)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물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계획의 작성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주요 공공기관(101개): 공기업(32개)·준정부기관(55개)·주요 기타공공기관[14개(은행형 기타공공기관·기금관리형 기타공공기관·4대 항만공사)]

나. 주요 쟁점

- 한국조폐공사의 최근 3년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을 보면 2020년 1.01%, 2021년 0.64%, 2022년 0.34%로 지속 감소추세에 있으며, 2021년 및 2022년의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구매 비율(1% 이상)마저 달성하지 못하였음
 - 한국조폐공사의 물품 등 총 구매액은 2020년 492억 2,900만원에서 2022년 990억 9,700만원으로 101.3%가 증가하였으나,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액은 2020년 4억 9,700만원에서 2022년 3억 3,300만원으로 오히려 33% 감소하였음

최근 3년간 한국조폐공사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구매액(A)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액(B)	구매비율(B/A)
2020	49,229	497	1.01
2021	74,865	479	0.64
2022	99,097	333	0.34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한국조폐공사는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향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금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가. 현황

- 한국조폐공사는 내부 규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23조에 따라 임직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3년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인원은 265명, 지원금액은 41억원임

한국조폐공사 생활안정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7월말
인원(????)	168	151	144	178	228	265
지원금액(누적)	1,724,165	1,673,726	2,063,916	2,974,987	3,613,723	4,142,636
1인당 지원 한도	20,000	20,000	20,000	30,000	30,000	30,000
관련 내부 규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23조(기금법인의 사업)					
지원 요건 (‘23.7월말 기준)	잔여 근속연수 2년 이상의 상근 직원					
상환 조건 (‘23.7월말 기준)	대부기간 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주: 각 연도 말(2023년은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면서, 생활안정자금의 대출을 지원하는 경우 대출 이자율 하한과 대출한도 상한 등을 규정하였음
 -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규정
 - 대출 한도는 2천만원으로 규정

나. 주요 쟁점

- 한국조폐공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생활안정자금 금리를 동 기간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23년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한국조폐공사 생활안정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분기별 연동)의 비교

(단위: %)

구분	2018.1.	2019.1.	2020.1.	2021.1.	2022.1.	2022.7.	2023.1.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51	3.64	3.01	2.64	3.46	4.05	5.34
기관 생활안정자금 금리	5.0	5.0	5.0	4.0	4.0	4.0	4.0

주: 기관 생활안정자금 금리의 경우 해당 월의 초일 기준(기준 인원에게 적용 중인 금리도 포함)

- 한국조폐공사는 2022년 이후에 신규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3년 7월 말에도 여전히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상의 대출 이자율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현황

(단위: 명, %, 천원)

인원	금리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92	4.0	1,703,000	미개정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 한국조폐공사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II

교육위원회



가. 일반현황

■ 교육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은 교육부 산하 22개 기관임

-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장학재단과 서울대학교병원 등 기타 공공기관 21개 기관으로 총 22개 기관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교육부 (2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장학재단
	기타 공공기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향중양연구원

나.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현황

- 2022년 기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를 받은 교육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은 교육부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개 기관임
- 2021년 경영실적평가 대비 2022년 경영실적평가 등급이 향상된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은 한국장학재단 1개 기관이며, 2021년 대비 하락한 기관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2개 기관임

교육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및 경영성과급(2018~2022)

(단위: 천원)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교육부 (3)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경평결과	C	C	B	B	C
			경영성과급	0	0	0	0	0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장학재단	경평결과	D	B	B	B	A
			경영성과급	1,081	627	1,467	1,339	1,429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경평결과	B	B	A	A	B
			경영성과급	1,841	1,965	1,990	1,855	1,991

- 주: 1.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는 2022년 공공기관 현황에 따름
 2. 경영성과급은 전년도 경영실적평가결과와 후속조치로 차년도에 지급되며, 일반정규직 기준임
 3. 경영성과급(기관평가)은 범주별(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범주별 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등급별·유형별로 차등지급(성과급 지급률=종합 50%+경영관리 25%+주요사업 25%)
 4. 경영성과급이 0원인 기관은 2023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어 경영성과급을 0원으로 기재함에 따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연도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결과 발표」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다. 종합청렴도 현황

- 2022년 기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받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개, 기타공공기관 17개 기관임
 - 2021년 청렴도 평가 대비 2022년 등급이 상승한 공공기관은 경상대학교병원 등 4개 기관이며, 2021년 대비 하락한 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 등 6개 기관임
 -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2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하였으며, 강원대학교병원은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하였음

교육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현황(2018~2022)

(단위: 등급)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2018	2019	2020	2021	2022
교육부 (18)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장학재단	5	4	3	2	3
	기타공공기관	강원대학교병원	4	4	3	2	4
		서울대학교병원	4	4	2	2	5
		경북대학교병원	4	4	4	3	4
		경상대학교병원	4	3	2	3	2
		전북대학교병원	5	3	3	3	3
		제주대학교병원	3	3	2	3	4
		충남대학교병원	4	3	4	3	3
		전남대학교병원	5	5	5	4	3
		충북대학교병원	4	4	4	4	3
		부산대학교병원	5	4	4	5	4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2	1	-	-	4
		경북대학교치과병원	4	2	2	-	2
		부산대학교치과병원	3	1	3	-	2
		서울대학교치과병원	3	2	1	-	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	4	5	2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4	3	3	-	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3	4	3	-	-

주: 1. (-)은 청렴도 조사 미수행을 의미함

2. 공공기관 유형은 2023년 기준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가. 현황

- 2022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적립금 총액은 21조 5,368억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하 “사학연금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장해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금
 - 사학연금기금 적립금은 2013년 11조 3,553억원에서 2021년 23조 4,933억원으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22년은 전년 대비 1조 9,565억원 감소함

최근 10년간 사학연금기금 적립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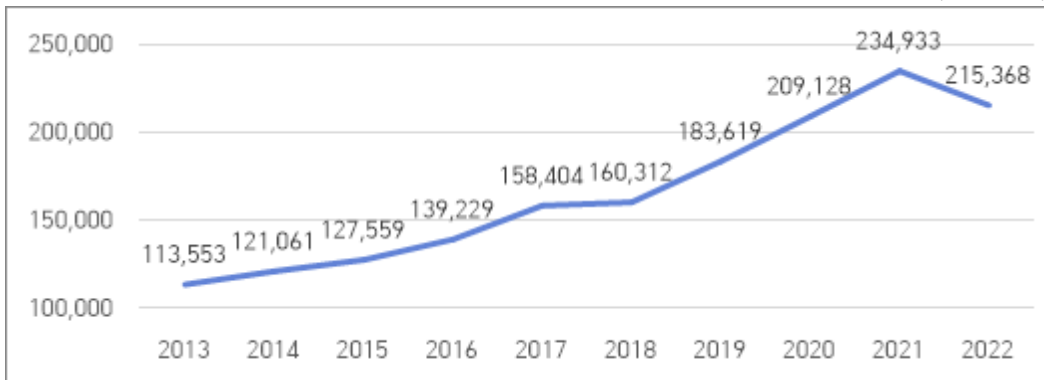
(단위: 억원)

2013(a)	2014	2015	2016	2017	2018
113,553	121,061	127,559	139,229	158,404	160,312
2019	2020	2021(b)	2022(c)	증감	
				전년대비(c-b)	'13년대비(c-a)
183,619	209,128	234,933	215,368	△19,565	101,815

자료: 사학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최근 10년간 사학연금기금 적립금 현황

(단위: 억원)



나. 주요 쟁점

- 2022년 사학연금기금 적립금 운용 수익률은 $\Delta 7.75\%$ 로, 손실 기록
 - 2022년 사학연금기금 적립금의 운용 수익률은 $\Delta 7.75\%$ 로, 최근 10년 중 수익률이 가장 낮았음
 - 최근 10년 중 2022년을 제외하고 운용 수익률이 (-)였던 2018년은 운용 수익률이 $\Delta 2.39\%$ 로, 2022년의 $\Delta 7.75\%$ 수익률은 이례적으로 낮은 수익률임

최근 10년간 사학연금기금 적립금 운용수익률 현황

(단위: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3.99	2.63	3.83	3.91	9.19	$\Delta 2.39$	11.15	11.49	11.95	$\Delta 7.75$

자료: 사학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2년의 낮은 적립금 운용 수익률은 주식의 운용 수익률이 특히 낮은 것에 기인
 - 사학연금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적립금의 약 34%는 채권, 약 39%는 주식, 약 25%는 대체투자로 구성되어 있음
 - 사학연금기금 적립금은 최근 10년간 채권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주식과 대체투자 비중은 증가
 - 채권의 경우 2013년 55%에서 2022년 34%로 그 비중이 감소 추세
 - 주식의 경우 적립금 구성 비중이 2013년 약 27%에서 2022년 약 39%로 증가 추세이며, 대체투자 역시 2013년 15%에서 2022년 25%로 증가 추세

최근 10년간 연도별 자산별 사학연금기금 적립금 구성 비중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단기	1.96	1.92	1.98	2.18	0.69	1.49	0.77	1.95	1.48	1.58
중장기	채권	55.47	54.00	49.98	47.36	43.65	43.36	38.05	34.67	34.46
	주식	27.56	28.71	32.04	34.66	39.61	35.59	39.94	42.73	42.49
	국내	25.37	23.63	23.75	24.42	26.53	21.45	21.99	22.58	19.07
	해외	2.19	5.08	8.29	10.24	13.08	14.14	17.95	20.15	23.43
	대체투자	15.01	15.38	16.00	15.80	16.05	19.56	21.23	21.28	24.75

자료: 사학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2년의 경우 자산 유형 중 채권($\Delta 6.02\%$)과 주식($\Delta 17.35\%$)의 운용 수익률이 낮았으며, 특히 주식의 운용 수익률이 낮았음
- 주식의 경우 최근 10년간 운용수익률이 $\Delta 17.35 \sim 24.10\%$ 로, 자산 특성상 수익률의 폭이 채권($\Delta 6.02 \sim 6.41\%$)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남
- 채권이나 주식과 달리 대체투자의 경우 최근 10년간 안정적으로 $4.72 \sim 25.03\%$ 의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보임

최근 10년간 연도별 자산별 사학연금기금 적립금 운용수익률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3.99	2.63	3.83	3.91	9.19	$\Delta 2.39$	11.15	11.49	11.95	$\Delta 7.75$
단기	2.75	2.59	1.81	1.50	1.46	1.67	1.70	0.89	0.75	2.38
중장기	채권	3.19	6.41	4.32	2.93	1.21	4.84	4.55	1.80	$\Delta 6.02$
	주식	4.58	$\Delta 5.64$	1.53	4.31	22.71	$\Delta 14.40$	19.48	24.10	$\Delta 17.35$
	국내	3.34	$\Delta 7.50$	1.41	3.43	25.63	$\Delta 17.92$	12.03	34.43	$\Delta 22.49$
	해외	20.66	6.22	0.88	5.77	16.09	$\Delta 7.66$	30.43	13.89	$\Delta 13.26$
	대체투자	5.35	5.96	7.70	6.33	4.72	8.49	10.97	5.16	25.03

자료: 사학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 주택융자금 관련 문제

가. 현황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규정인 「직원 주택 대여 규칙」 제1조에 따라 직원에 대해 주택융자금을 제공하였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주택융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7월말
인원	-	-	-	1	1	2
융자금액	-	-	-	25,000	25,000	60,000
1인당 지원 한도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관련 내부 규정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직원 주택대여규칙 제5조(대여금액과 한도액)					
지원 요건 (‘23.7월말 기준)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인 직원					
상환 조건 (‘23.7월말 기준)	최장 20년 상환					

주: 각 연도 말(2023년은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면서, 주택자금의 융자를 지원하는 경우 대출 이자율 하한과 대출한도 상한 등을 규정하였음

-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규정
- 대출 한도는 7천만원으로 하고, 주택 구입에 대한 지원의 경우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

나. 주요 쟁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주택용자금 금리를 동 기간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22년 이후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용자금을 제공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주택용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분기별 연동)의 비교

(단위: %)

구분	2018.1.	2019.1.	2020.1.	2021.1.	2022.1.	2022.7.	2023.1.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51	3.64	3.01	2.64	3.46	4.05	5.34
기관 주택용자금 금리	3.36	3.0	3.0	3.0	3.0	3.0	3.0

주: 기관 주택용자금 금리의 경우 해당 월의 초일 기준(기존 인원에게 적용 중인 금리도 포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2022년 이후에도 신규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3년 7월 말에도 여전히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상의 대출 이자율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규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단위: 명, %, 천원)

인원	금리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1	3.0	35,000	미개정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주택융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

가. 현황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규정인 「사내복지대여규칙」 제1조에 따라 직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3년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인원은 173명, 지원금액은 37억원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생활안정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7월말
인원	25	39	54	83	121	173
지원금액	638,000	880,000	1,145,000	1,486,000	2,366,000	3,665,000
1인당 지원 한도	57,000	57,000	57,000	57,000	57,000	57,000
관련 내부 규정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사내복지대여규칙 제4조(대여가능액 및 한도)					
지원 요건 (‘23.7월말 기준)	직원(보증 500만원: 3개월 이상 재직, 무보증 70만원: 2년이상 재직)					
상환 조건 (‘23.7월말 기준)	최장 10년 상환					

주: 각 연도 말(2023년은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공기관의 직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면서, 생활안정자금의 대출을 지원하는 경우 대출 이자율 하한과 대출한도 상한 등을 규정하였음
 -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규정
 - 대출 한도는 2천만원으로 규정

나. 주요 쟁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생활안정자금 금리를 동 기간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22년 이후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생활안정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분기별 연동)의 비교

(단위: %)

구분	2018.1.	2019.1.	2020.1.	2021.1.	2022.1.	2022.7.	2023.1.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51	3.64	3.01	2.64	3.46	4.05	5.34
기관 생활안정자금 금리	3.36	3.0	3.0	3.0	3.0	3.0	3.0

주: 기관 생활안정자금 금리의 경우 해당 월의 초일 기준(기존 인원에게 적용 중인 금리도 포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2022년 이후에도 신규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거나 2천만원을 초과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3년 7월 말에도 여전히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상의 대출 이자율, 한도 등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규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관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생활안정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 천원)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현황				2천만원을 초과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현황		
인원	금리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인원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90	3.0	2,179,000	미개정	71	2,910,000	미개정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한국사학진흥재단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구매 비율 지속적인 감소

가. 현황

-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¹⁾에 따라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물로 구매하여야 함
- 그러나 한국사학진흥재단의 2022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은 0.82%로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였음
 - 2022년 기준 주요 공공기관²⁾의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은 평균 1.40%로, 전체 101개 공공기관 중 81개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 구매 비율(1% 이상)을 달성하였으나,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미달성

한국사학진흥재단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 현황 등(2022년 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구매액(A)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액(B)	구매비율(B/A)
한국철도공사 등 101개 기관	17,613,879	247,033	1.40
한국사학진흥재단	3,474	29	0.82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김정훈 예산분석관 (02-6788-4685)

1)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물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계획의 작성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주요 공공기관(101개): 공기업(32개)·준정부기관(55개)·주요 기타공공기관[14개(은행형 기타공공기관·기금관리형 기타공공기관·4대 항만공사)]

나. 주요 쟁점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최근 3년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을 보면 2020년 1.61%, 2021년 1.30%, 2022년 0.82%로 지속 감소추세에 있으며, 2022년의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구매 비율(1% 이상)마저 달성하지 못하였음

최근 3년간 한국사학진흥재단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구매액(A)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액(B)	구매비율(B/A)
2020	1,228	20	1.61
2021	2,013	26	1.30
2022	3,474	29	0.82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향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금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가. 현황¹⁾

- 서울대학교병원은 2014년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제적 수준의 전문의료인력 양성의 교육인프라 구축과 직원역량 강화 및 조직 활성화, 직원의 휴양공간 제공 등을 위해 경상북도 문경에 인재원을 개원한 바 있음
 - 당시 서울대학교병원 인재원의 총 사업비는 269억원이며, 이 중 32%인 86억원의 출연금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부받았고, 자체자금 183억원(68%)을 활용
 - 객실규모는 2인실 82실, 4인실 16실, 장애인실 2실 총 100실, 230명 수용 가능

서울대학교병원 인재원 현황

구분	현황
위치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온천강변1길 77
규모	지하 1층 ~ 지상 7층 대지면적: 16,463㎡(4,980평) 연면적: 13,828㎡(4,183평)
교육장	대강당(1실, 228석), 집중세미나실(1실, 56석), 대강의실(1실, 80석) 중강의실(2실, 50석/40석), 분임토의실(5실, 32석[2실]/24석[3실]) 다목적실(1실, 170석)
객실	2인실: 28㎡(8.5평), 82실(164명) 4인실: 58㎡(17.5평), 16실(64명) 장애인실: 29㎡(8.8평), 2실(2명)

자료: 서울대학교병원 인재원 브로슈어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박지민 예산분석관 (02-6788-3731)

1) 국회예산정책처 「2021년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위원회별 분석 I」 pp.80~83를 바탕으로 재작성

- 서울대학교병원 인재원은 설립(2014년) 이후 지속적인 영업손실을 인식하고 있음
 - 2015~2021년의 손익현황을 살펴보면, 매출이 감가상각비 및 인건비 등의 고정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양상을 연례적으로 보이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을 어려워진 2020년에는 인력이나 감가상각비가 발생하는 유형자산을 줄이는 등 고정비용 삭감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중단으로 인해 13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음

서울대학교병원 인재원 연도별 매출 및 손익현황(2015~2022)

(단위: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매출(A)	462	543	637	718	695	44	54	778	3,931
인재원 관련비용(B)	1,806	1,825	1,913	1,785	2,071	1,350	899	1,250	12,899
고정비	1,406	1,460	1,504	1,611	1,854	1,150	722	960	10,667
감가상각비	821	821	821	889	1,075	686	683	682	6,478
인건비	560	626	672	714	772	446	14	263	4,067
기타고정비	25	13	11	8	7	18	25	15	122
변동비	400	365	409	174	217	200	177	290	2,232
영업손익(A-B)	△1,344	△1,282	△1,276	△1,067	△1,376	△1,306	△845	△472	△8,968

자료: 서울대학교병원

나. 주요 쟁점

- 인재원 운영 시 객실 이용률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인재원 설립 직후(2015~2016년) 내부교육, 외부 임대 및 가족휴양 목적으로 이용한 강의실 및 객실의 전체 가동률은 20%을 하회하는 수준
 - 2018년 강의실 가동률이 30%까지 증가하였으나, 2019년 25.8%까지 하락
 - 코로나19로 인해 단체집합 및 숙식교육이 중단됨에 따라 2020년 강의실 가동률 8.1%, 객실 가동률 7.6%, 2021년 강의실 가동률 0%, 객실 가동률 0.8%로 감소하였음

- 2022년 강의실 가동률 8.8%, 객실 가동률 14.6%이지만 2018~2019년 가동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현원 대비 인재원 이용률도 2015~2022년 평균 5.84% 내외 수준으로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음

서울대학교병원 인재원 연도별 강의실 및 객실 이용률 현황 (2015~2022)

(단위: 일, 명, %)

연도	시설	교육 가능 일수	교육 일수	수용 가능 인원 (A)	이용인원				내부 교육 가동률 (B/A)	전체 가동률 (C/A)
					내부 교육 (B)	외부 임대	가족 휴양	소계 (C)		
2015	강의실	249	92	56,772	8,186	3,424	0	11,610	14.4	20.5
	객실			46,460	4,560	3,317	866	8,743	9.8	18.8
2016	강의실	247	105	56,316	7,746	3,455	0	11,201	13.8	19.9
	객실			45,310	5,014	1,769	622	7,405	11.1	16.3
2017	강의실	245	159	55,860	6,892	7,313	0	14,205	12.3	25.4
	객실			45,080	5,117	5,692	866	11,675	11.6	25.9
2018	강의실	246	154	56,088	7,521	9,389	0	16,910	13.4	30.1
	객실			44,850	5,288	5,860	809	11,957	11.8	26.6
2019	강의실	248	150	56,544	8,231	6,400	0	14,631	14.5	25.8
	객실			45,540	7,411	4,079	747	12,237	16.2	26.8
2020	강의실	40	11	9,120	215	528	0	743	2.3	8.1
	객실			7,360	215	275	68	558	2.9	7.6
2021	강의실	0	0	0	0	0	0	0	0.0	0.0
	객실			45,540	0	0	384	384	0.0	0.8
2022	강의실	146	48	33,288	426	2,509	0	2,935	1.3	8.8
	객실			45,080	368	5,653	568	6,589	0.8	14.6

자료: 서울대학교병원

가. 현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1항에 의해 고용주는 의무고용률에 따라 적정수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의무고용 미이행 시 부담금을 납부¹⁾
- 서울대학교병원은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교육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임
 - 서울대학교 상시근로자수는 2018년 11,820명에서 2022년 15,579명으로 증가 추세이며, 장애인의무고용인원도 2018년 378명에서 2022년 560명으로 증가함
 - 장애인고용부담금 대상은 연도말 기준 2018년 194명에서 2022년 158명임

서울대학교병원 장애인고용부담금 대상 인원

(단위: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장애인 의무고용률(A)	3.2	3.4	3.4	3.4	3.6
상시근로자수(B)	11,820	13,004	14,782	15,542	15,579
장애인의무고용인원(C=A*B)	378	442	502	528	560
장애인 근로자수(D)	184	228	305	335	402
장애인고용비율(E=D/B)	1.56	1.75	2.06	2.16	2.58
장애인고용부담금 대상 (F=C-D)	194	214	197	193	158

주: 서울대학교병원 통합신고 기준, 연도말 기준

자료: 서울대학교병원

박지민 예산분석관 (02-6788-3731)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주요 쟁점

- 서울대학교병원은 전체 공공기관 중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가장 많으며, 비중도 5년 평균 11.1%로 가장 높음
 - 서울대학교 병원은 5년 연속 타 공공기관에 비해 최다 액수를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부담하였음
 - 연도별 납부액을 살펴보면 2018년 25억 6,900만원, 2019년 27억 1,200만원, 2020년 25억 2,900만원, 2021년 24억 7,700만원, 2022년 28억 300만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는 2위인 국방과학연구소가 2018년 7억 5,800만원, 2019년 9억 2,700만원, 2020년 10억 1,800만원, 2021년 9억 9,400만원, 2022년 6억 2,100만원을 부담한 것에 비해 2배 이상 큼
 - 전체 공공기관 내 비중을 살펴보면 2018년 15.4%, 2019년 13.4%, 2020년 8.7%, 2021년 8.4%, 2022년 12.3%로 적지 않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음

서울대학교 및 전체 공공기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 비교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5년 합계
서울대학교병원(A)	2,569	2,712	2,529	2,477	2,803	13,090
전체 공공기관(B)	16,684	20,231	29,227	29,414	22,705	118,261
전체 공공기관 내 비중 (C=A/B)	15.4	13.4	8.7	8.4	12.3	11.1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1) 징계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장학재단 인원 중 2018~2023.7. 동안 징계를 받은 자는 총 16명임

한국장학재단 수위별·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2)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운전 관련	부정청탁 관련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541	16	3	0	3	0	3	7	0	5	0	0	0	0	11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8.1.1.~2023.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국가공무원법」,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아래와 같이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였음

-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 처리를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도록 할 것
- 공공부문 종사자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또한 인사 관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쟁점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8년 이후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총 5회의 징계위원회 중 4회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지 않았음

한국장학재단 성비위 관련 징계위원회 구성 현황

(단위: 명, %)

징계위원회 구성 일자	성비위 종류	위원 수(A) (위원장 제외)	피해자와 성별이 같은 위원 수(B)	피해자와 성별이 다른 위원 수	비중(B/A)
2018.7.19.	성희롱	4	1	3	25.0
2018.9.13.	성희롱	5	1	4	20.0
2021.6.29.	성희롱	5	2	3	40.0
2022.8.11.	성희롱	6	1	5	16.7
2023.4.26.	성희롱	6	1	5	16.7

- 한국장학재단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징계위원회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성과급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장학재단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임직원에게 대해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한편, 내부 지침에 따라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였음

한국장학재단이 지급한 성과급 총액 현황

(단위: 명, 천원)

기준연도	임직원 수	기준연도 평가를 바탕으로 그 차년도(지급연도)에 지급한 성과급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급	합계
2020	514	727,511	4,406,614	5,134,125
2021	524	815,969	4,767,333	5,583,302
2022	541	1,363,947	4,243,340	5,607,287

-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성과급 지급 시 아래와 같이 차등화된 내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으로 할 것
 -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최고 등급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을 합하여 10% 이상으로 하고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주요 쟁점

■ 2020~2022년 평가를 기준으로 한국장학재단이 2021~2023년에 지급한 성과급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이어야 하나, 최근 3년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내부평가급의 경우 5개 등급으로 운영 중에 있음
-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최고 등급이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을 합하여 10% 이상이어야 하나, 최근 3년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내부평가급의 최고 등급이 10% 이하에 그치거나 최저 등급과 차하위 등급의 합이 10% 이하에 그치고 있음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은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어야 하나, 최근 3년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내부평가급의 최고 등급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미만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한국장학재단 등급별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지급 연도	성과급 구분	경영 평가 등급	첫째 등급		둘째 등급		셋째 등급		넷째 등급		다섯째 등급		여섯째 등급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2021	경영평가 성과급	B	10	134	15	115	50	100	15	85	10	66	0.0	0
	내부평가급	B	5	120	15	110	59	100	14	90	6	80	-	-
2022	경영평가 성과급	B	11	134	15	115	50	100	14	85	10	66	0.5	0
	내부평가급	B	5	120	13	110	65	100	12	90	5	80	-	-
2023	경영평가 성과급	A	10	134	15	115	50	100	15	85	9	66	1.1	0
	내부평가급	A	5	120	15	110	60	100	15	90	5	80	-	-

주: 인원 및 지급률의 경우 실제 지급 기준이며, 소숫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여섯째 등급 제외)

■ 성과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인 바, 한국장학재단은 성과급의 지급 취지와 지침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성과급 차등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가. 일반현황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2개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43개 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3개 기관임
-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은 준시장형 공기업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기타공공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2개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등 6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37개 기타공공기관으로 총 43개 기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3개 기타공공기관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방송통신위원회 (2)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타 공공기관	시청자미디어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기타 공공기관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원자력안전위원회 (3)	기타 공공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박지민 예산분석관(02-6788-3731)

장희란 예산분석관(02-6788-4682)

나.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현황

- 2022년 기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를 받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은 준시장형 공기업 1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1개 기관임
 - 2021년 경영실적평가 대비 2022년 경영실적평가 등급이 상승한 공공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재)우체국물류지원단 등 2개 기관이며, 2021년 대비 하락한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2개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3개 기관
 - (재)우체국물류지원단은 최근 4년간 최하위(D~E) 등급을 받았으나 2022년 보통(C) 등급으로 향상,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최근 4년간 상위(A~B) 등급을 받았으나 2022년 미흡(D)등급으로 하락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및 경영성과급(2018~2022)
(단위: 천원)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방송통신위원회 (2)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방송광고 진흥공사	경영결과	B	C	C	B	C
			경영성과급	5,201	7,216	4,413	2,969	6,158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시청자미디어재단	경영결과	C	D	C	B	C
			경영성과급	505	528	151	815	1,116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10)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재)우체국금융 개발원	경영결과	B	B	C	C	C
			경영성과급	1,399	1,471	1,500	456	832
		(재)우체국물류 지원단	경영결과	D	E	E	E	C
			경영성과급	0	255	85	0	0
		(재)한국우편사업 진흥원	경영결과	A	B	A	A	A
			경영성과급	0	0	0	0	0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경영결과	A	B	B	B	D
			경영성과급	4,405	5,193	4,230	4,546	4,197
		한국연구재단	경영결과	C	B	B	A	B
			경영성과급	1,659	1,281	1,508	1,805	1,694
		한국인터넷진흥원	경영결과	C	C	C	B	B
			경영성과급	1,487	1,168	1,119	1,085	1,359
		한국지능정보 사회진흥원	경영결과	C	B	B	B	C
			경영성과급	1,092	953	1,620	1,612	1,908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경영결과	B	B	B	B	B
			경영성과급	0	967	945	757	1,080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경영결과	C	C	D	B	B
			경영성과급	0	0	0	0	0
		한국과학창의재단	경영결과	C	D	C	C	B
			경영성과급	701	614	310	307	899

- 주: 1.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는 2022년 공공기관 현황에 따름
 2. 경영성과급은 전년도 경영실적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 차년도에 지급되며, 일반정규직 기준임
 3. 경영성과급(기관평가)은 범주별(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범주별 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등급별·유형별로 차등지급(성과급 지급률=종합 50%+경영관리 25%+주요사업 25%)
 4. 경영성과급이 0원인 기관은 2023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어 경영성과급을 0원으로 기재함에 따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연도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결과 발표」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다. 종합청렴도 현황

- 2022년 기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받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은 준시장형 공기업 1개, 기타공공기관 1개임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2022년 기준 3등급으로 2021년에 비해 등급이 하락하였음

- 2022년 기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2022년 기준 2등급으로 2021년에 비해 등급이 상승하였음

- 2022년 기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6개, 기타공공기관 5개 기관임

- 2021년 청렴도 평가 대비 2022년 등급이 상승한 공공기관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4개 기관이며, 2021년 대비 하락한 기관은 한국연구재단 등 4개 기관임
 - 한국연구재단의 경우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하였음
- 연구원의 경우 2019년 대비 2021년 등급이 상승한 곳은 한국기계연구원 등 3개 기관이며, 등급이 하락한 곳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7개 기관임
 -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하였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현황(2018~2022)

(단위: 등급)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2018	2019	2020	2021	2022
방송통신위원회(2)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	3	2	2	3
	기타공공기관	시청자미디어재단	-	-	-	-	3
원자력안전위원회(1)	기타공공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	3	2	3	2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3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3	3	3	3	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3	4	4	4	4
		우체국물류지원단	2	2	3	4	3
		(재)우체국금융개발원	2	2	4	2	3
		한국연구재단	3	4	3	2	4
		한국인터넷진흥원	3	3	3	2	2
	기타공공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	2	2	3	1
		한국과학창의재단	5	4	4	4	1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2	3	3	2	1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	-	-	3
		한국원자력의학원	4	4	3	1	4
		한국기계연구원	2	3	-	1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4	-	2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	2	-	2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	2	-	2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	2	-	2	-
		한국화학연구원	3	3	-	2	-
		기초과학연구원	3	3	-	3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	2	-	3	-
		한국전기연구원	2	1	-	3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3	3	-	3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	3	-	3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	2	-	3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3	3	-	3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	3	-	4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	3	-	4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	2	-	4	-
		한국원자력연구원	3	2	-	4	-
		한국식품연구원	5	4	-	-	-
		한국천문연구원	2	2	-	-	-
		한국한의학연구원	4	4	-	-	-

주: 1. (-)은 청렴도 조사 미수행을 의미함

2. 연구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2년에 한 번 청렴도 등급을 측정함

3. 공공기관 유형은 2023년 기준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구매 비율 3년 연속 미달성 및 하위 5개 기관에 포함

가. 현황

-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¹⁾에 따라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물로 구매하여야 함
- 그러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2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은 0.07%로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였음
 - 2022년 기준 주요 공공기관²⁾의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은 평균 1.40%로, 전체 101개 공공기관 중 81개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 구매 비율(1% 이상)을 달성하였으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미달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 현황 등(2022년 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구매액(A)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액(B)	구매비율(B/A)
한국철도공사 등 101개 기관	17,613,879	247,033	1.40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503,133	353	0.07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김정훈 예산분석관 (02-6788-4685)

1)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물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계획의 작성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주요 공공기관(101개): 공기업(32개)·준정부기관(55개)·주요 기타공공기관[14개(은행형 기타공공기관·기금관리형 기타공공기관·4대 항만공사)]

나. 주요 쟁점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최근 3년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을 보면 2022년 0.07%, 2021년 0.24%, 2020년 0.16%로 구매실적이 매우 저조할뿐더러 3년 연속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2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은 0.07%로, 주요 공공기관(101개 기관) 중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 하위 5개 기관에 포함되었음³⁾

최근 3년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구매액(A)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액(B)	구매비율(B/A)
2020	585,463	949	0.16
2021	446,893	1,088	0.24
2022	503,133	353	0.07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향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금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⁴⁾

3) 주요 공공기관 중 2022년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 하위 5개 기관

구분	한국산업은행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국제교류재단
구매비율(%)	0.17	0.16	0.12	0.07	0.04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4) 이에 대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기관 특성 상 정보화 사업 등을 위해 조달청에서 구매한 금액 비중이 높으나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업체가 제한적임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 실적 달성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임

가. 현황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원 중 2018~2023.7. 동안 징계를 받은 자는 총 16명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위별 · 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2)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운전 관련	부정청탁 관련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721	16	2	0	3	0	4	7	1	5	0	0	1	1	8

-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8.1.1.~2023.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국가공무원법」,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아래와 같이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였음
-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을 참고하여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재산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부정청탁 등)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할 것
 -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 처리를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도록 할 것
 - 공공부문 종사자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또한 인사 관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김국찬 예산분석관 (02-6788-4681)

나. 주요 쟁점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018년 이후 횡령, 배임, 사기, 유용 등 재산 관련 비위와 그에 대한 징계가 있었음에도, 2023년 8월 말까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인원 3명(2019년 2명, 2021년 1명)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최하위 등급보다 높은 등급(B등급)을 부여하였고, 이로 인해 성과급 총 703만원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 지급되었음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2018년 이후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총 3회의 징계위원회 중 1회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지 않았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성비위 관련 징계위원회 구성 현황

(단위: 명, %)

징계위원회 구성 일자	성비위 종류	위원 수(A) (위원장 제외)	피해자와 성별이 같은 위원 수(B)	피해자와 성별이 다른 위원 수	비중(B/A)
2019.4.11	성희롱	5	3	2	60.0
2021.1.27	성희롱	4	0	4	0.0
2022.3.3	성희롱	4	2	2	50.0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징계 부가금 내부 규정, 징계위원회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한국인터넷진흥원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구매 비율 지속적인 감소

가. 현황

-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¹⁾에 따라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물로 구매하여야 함
- 그러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22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은 0.94%로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였음
 - 2022년 기준 주요 공공기관²⁾의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은 평균 1.40%로, 전체 101개 공공기관 중 81개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 구매 비율(1% 이상)을 달성하였으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미달성

한국인터넷진흥원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 현황 등(2022년 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구매액(A)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액(B)	구매비율(B/A)
한국철도공사 등 101개 기관	17,613,879	247,033	1.40
한국인터넷진흥원	95,941	903	0.94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김정훈 예산분석관 (02-6788-4685)

1)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물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계획의 작성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주요 공공기관(101개): 공기업(32개)·준정부기관(55개)·주요 기타공공기관[14개(은행형 기타공공기관·기금관리형 기타공공기관·4대 항만공사)]

나. 주요 쟁점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최근 3년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을 보면 2020년 1.27%, 2021년 1.06%, 2022년 0.94%로 지속 감소추세에 있으며, 2022년의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구매 비율(1% 이상)마저 달성하지 못하였음

최근 3년간 한국인터넷진흥원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구매액(A)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액(B)	구매비율(B/A)
2020	75,148	953	1.27
2021	91,802	974	1.06
2022	95,941	903	0.94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향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금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1) 징계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인터넷진흥원 인원 중 2018~2023.7. 동안 징계를 받은 자는 총 26명임

한국인터넷진흥원 수위별 · 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2)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운전 관련	부정청탁 관련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789	26	1	0	6	0	9	10	2	0	0	0	0	0	24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8.1.1.~2023.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이며, 임직원 수는 2022.12.31. 기준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국가공무원법」,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아래와 같이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였음

-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을 참고하여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
- 공공부문 종사자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또한 인사 관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쟁점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8년 이후 횡령, 배임, 사기, 유용 등 재산 관련 비위와 그에 대한 징계가 있었음에도, 2023년 8월 말까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징계부가금 내부 규정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성과급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한편, 내부 지침에 따라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였음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급한 성과급 총액 현황

(단위: 명, 천원)

기준연도	임직원 수	기준연도 평가를 바탕으로 그 차년도(지급연도)에 지급한 성과급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급	합계
2020	787	713,990	1,955,066	2,669,056
2021	801	936,254	2,034,062	2,970,316
2022	828	1,487,732	2,074,433	3,562,165

주: 인턴 직원의 경우 임직원 수 산정 과정에서 제외되었음

-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성과급 지급 시 아래와 같이 차등화된 내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으로 할 것
 -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최고 등급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을 합하여 10% 이상으로 하고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주요 쟁점

■ 2020~2022년 평가를 기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21~2023년에 지급한 성과급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이어야 하나, 최근 3년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인원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최하위 등급이 없는 것과 유사하게 지급되었음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은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어야 하나, 최근 3년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공무원 성과급의 최고 등급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미만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급별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지급 연도	성과급 구분		경영평가 등급	첫째 등급		둘째 등급		셋째 등급		넷째 등급		다섯째 등급		여섯째 등급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2021	경영평가 성과급		C	10	132	20	116	39	100	20	83	10	66	-	-
	내부평가급			10	132	20	116	39	100	20	83	10	66	-	-
2022	경영 평가 성과급	일반직 계약직 등	B	11	132	20	116	39	100	20	83	11	66	-	-
		공무직	B	11	108	20	104	39	100	20	96	11	92	-	-
	내부 평가급	일반직 계약직 등		11	132	20	116	39	100	20	83	11	66	-	-
		공무직		11	108	20	104	39	100	20	96	11	92	-	-
2023	경영평가 성과급		B	10	132	20	116	39	100	20	83	10	66	-	-
	내부평가급			10	132	20	116	39	100	20	83	10	66	-	-

주: 인원 및 지급률의 경우 실제 지급 기준이며, 소숫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성과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인 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성과급의 지급 취지와 지침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성과급 차등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가. 현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1항에 의해 고용주는 의무고용률에 따라 적정수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의무고용 미이행 시 부담금을 납부¹⁾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정보,통신,전자,방송 및 관련 융합기술분야의 핵심·미래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성장동력 창출 및 성과확산을 통해 국가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임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상시근로자수는 2018년 2,399명에서 2022년 2,543명으로 증가 추세이며, 이에 따라 장애인의무고용인원도 2018년 76명에서 2022년 91명으로 증가
 - 장애인고용부담금 대상은 2018년 28명에서 2022년 48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장애인고용부담금 대상 인원

(단위: 명,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장애인 의무고용률(A)	3.2	3.4	3.4	3.4	3.6
상시근로자수(B)	2,399	2,492	2,586	2,536	2,543
장애인의무고용인원(C=A*B)	76	84	87	86	91
장애인 근로자수(D)	48	48	46	45	43
장애인고용비율(E=D/B)	2.00	1.93	1.78	1.77	1.69
장애인고용부담금 대상 (F=C-D)	28	36	41	41	48

주: 부설기관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제외, 각 연도말 기준

자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지민 예산분석관 (02-6788-3731)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주요 쟁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장애인고용부담금 대상인원의 증가로 전체 공공기관 중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금액이 5년 연속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음
 - 2018년 전체 공공기관 중 장애인고용부담금 2.9%의 비중을 납부하다 2022년 4.4% 수준을 납부하고 있음
 - 전체 공공기관이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액수와 비교해 보면 5년간 전체 공공기관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 중 3.3%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납부하고 있음
 - 납부 비중의 경우 2022년의 경우 전년 대비 1.4%p가 증가하여 급격한 변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및 전체 공공기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 비교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한국전자통신연구원(A)	490	685	834	897	1,008
전체 공공기관(C)	16,684	20,231	29,227	29,414	22,705
전체 공공기관 내 비중 (D=A/C)	2.9	3.4	2.9	3.0	4.4

주: A의 경우 부설기관인 국가보안기술연구소를 포함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담금 액수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장애인고용자수는 일정함에 비해 연평균 장애인의무고용인원은 증가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 대상인원 증가하였기 때문임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측은 이에 대해 정원 감축 및 박사 전문 인력 고용이 대다수인 특성, 타 출연연에 비해 큰 규모로 인해 의무고용인원 확보의 현실적인 한계를 언급하고 있음

가. 현황

■ 우체국물류지원단 인원 중 2018~2023.7. 동안 징계를 받은 자는 총 86명임

우체국물류지원단 수위별 · 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 원 수 (’22)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운전 관련	부정청탁 관련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1,847	86	3	0	7	0	18	58	4	4	3	0	4	3	69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8.1.1.~2023.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국가공무원법」,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아래와 같이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였음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재산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부정청탁 등)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할 것
- 공공부문 종사자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또한 인사 관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쟁점

-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재산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받은 인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최하위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부여하였고, 이로 인해 성과급(내부평가급) 총 1,221만 9,000원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 지급되었음
 - 이와 관련하여 우체국물류지원단은 해당 비위로 징계받은 인원의 경영평가성과급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 반영을 완료(2021.1.)하였으며, 내부평가급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노사협의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규정 개정 추진 중이라는 입장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지 않은 인원

(단위: 명, 천원)

구분	재산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부정청탁	계
인원 수	4	3	3	0	10
평가 등급	A 1명 B 3명	A 1명 B 1명 C 1명	A 1명 B 1명 C 1명	-	-
징계연도	'18년 1명 '20년 1명 '21년 2명	'20년 1명 '22년 2명	'20년 1명 '21년 1명 '22년 1명	-	-
과다 지급된 성과급	6,792	2,710	2,717	-	12,219

주: 2018.1.1.~2023.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 우체국물류지원단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가. 현황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임직원에게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였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지급한 성과급 총액 현황

(단위: 명, 천원)

기준연도	임직원 수	기준연도 평가를 바탕으로 그 차년도(지급연도)에 지급한 성과급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급	합계
2020	455	1,769,223	-	1,769,223
2021	485	1,701,729	-	1,701,729
2022	503	1,469,577	-	1,469,577

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내부평가급을 지급하고 있지 않음

-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성과급 지급 시 아래와 같이 차등화된 내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으로 할 것
 -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최고 등급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을 합하여 10% 이상으로 하고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주요 쟁점

- 2020~2022년 평가를 기준으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2021~2023년에 지급한 성과급 현황을 살펴보면,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이어야 함에도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인원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최하위 등급이 없는 것과 유사하게 지급되었음

최근 3년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급별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지급 연도	성과급 구분	경영 평가 등급	첫째 등급		둘째 등급		셋째 등급		넷째 등급		다섯째 등급		여섯째 등급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2021	경영평가 성과급	B	10	134	16	117	48	100	15	83	12	67	-	-
	내부평가급	내부평가급 미지급												
2022	경영평가 성과급	B	9	134	16	117	45	100	19	83	11	67	-	-
	내부평가급	내부평가급 미지급												
2023	경영평가 성과급	C	9	134	17	117	44	100	15	83	17	67	-	-
	내부평가급	내부평가급 미지급												

주: 인원 및 지급률의 경우 실제 지급 기준이며, 소숫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성과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인 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성과급의 지급 취지와 지침의 내용을 고려하여 성과급 차등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1) 징계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연구재단 인원 중 2018~2023.7. 동안 징계를 받은 자는 총 10명임

한국연구재단 수위별·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2)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운전 관련	부정청탁 관련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562	10	2	0	1	0	2	5	1	2	0	0	2	1	5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8.1.1.~2023.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국가공무원법」,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아래와 같이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였음

- ‘정직’ 유형의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정직 기간 중 보수 전액을 감액할 것
- 공공부문 종사자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또한 인사 관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쟁점

- 한국연구재단은 ‘정직’ 징계를 받은 인원에게 「징계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그들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정직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였음
 - 한국연구재단은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에도 정직자에게 보수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음

한국연구재단 정직자 대상 보수 지급 현황

(단위: 명, 개월, 천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7월말)
인원	-	1	-	-	-	-
평균 처분기간	-	6	-	-	-	-
보수지급액	-	19,485	-	-	-	-
관련 내부 규정 (‘23.7월말 기준)	「징계규정」 제12조(징계의 효력) 제2항					
보수 지급 내용 (‘23.7월말 기준)	정직자의 경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					

주: 각 연도 내에(2023년의 경우 7월 31일 전) 징계가 확정된 인원 기준

- 한국연구재단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정직 기간 중 보수 지급 규정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성과급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연구재단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임직원에게 대해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한편, 내부 지침에 따라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였음

한국연구재단이 지급한 성과급 총액 현황

(단위: 명, 천원)

기준연도	임직원 수	기준연도 평가를 바탕으로 그 차년도(지급연도)에 지급한 성과급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급	합계
2020	529	898,392	1,242,802	2,141,194
2021	559	866,592	1,251,299	2,117,891
2022	560	800,516	1,256,200	2,056,716

-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성과급 지급 시 아래와 같이 차등화된 내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으로 할 것
 -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최고 등급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을 합하여 10% 이상으로 하고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주요 쟁점

- 2020~2022년 평가를 기준으로 한국연구재단이 2021~2023년에 지급한 성과급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이어야 하나, 최근 3년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사실상 3개의 등급만으로 운영되었음
 -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나, 최근 3년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특정 등급이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은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어야 하나, 최근 3년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최고 등급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미만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 등급별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지급 연도	성과급 구분	경영 평가 등급	첫째 등급		둘째 등급		셋째 등급		넷째 등급		다섯째 등급		여섯째 등급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2021	경영평가 성과급	A	12	117	73	100	15	83	-	-	-	-	-	-
	내부평가급	A	12	117	73	100	15	83	-	-	-	-	-	-
2022	경영평가 성과급	A	11	117	74	100	15	83	-	-	-	-	-	-
	내부평가급	A	11	117	74	100	15	83	-	-	-	-	-	-
2023	경영평가 성과급	B	12	117	71	100	17	83	-	-	-	-	-	-
	내부평가급	B	12	117	71	100	17	83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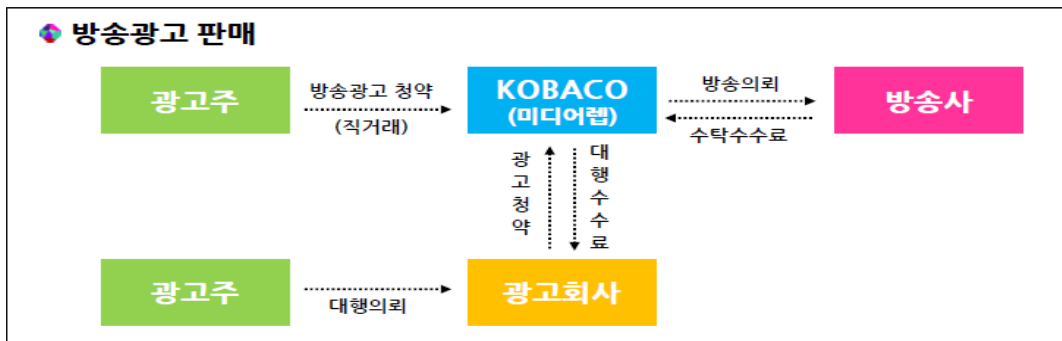
주: 인원 및 지급률의 경우 실제 지급 기준이며, 소숫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성과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인 바, 한국연구재단은 성과급의 지급 취지와 지침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성과급 차등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가. 현황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주요 수입원은 방송광고 판매대행에 따른 광고수탁수수료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에 따라 방송사업자로부터 광고수탁수수료를 지급받고, 수탁수수료의 일부분을 광고회사에 대행수수료로 지급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방송광고 판매대행체계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지상파의 경우 14~16%의 수탁수수료를 받고 13%대의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IPTV 등의 경우 25~40%의 수탁수수료를 받고 13.5~35%의 대행수수료를 지급

방송광고 수수료율 현황

구분		수탁수수료	대행수수료
지상파	TV (3개)	16%	13.5%
	라디오 (15개)	16%	13.6%
	DMB (2개)	14%	13.02%
기타	IPTV 등(4개)	25~40%	13.5~35%

자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지은 예산분석관 (02-6788-3745)

- 2022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광고수탁수수료는 1,154억원으로, 전년 대비 5억원 감소

최근 5년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광고수탁수수료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증감(B-A)
광고수탁수수료(억원)	1,162	956	997	1,159	1,154	△5

자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최근 5년간 광고시장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점유율은 감소 추세
 - 2022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광고판매액은 7,247억원으로, 지상파TV 6,251억원, 라디오 950억원, DMB 13억원, 기타(IPTV 등) 3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2년 전체 광고비는 4조 2,424억원으로, 공사의 광고판매액은 전체의 17.1%를 차지함. 전체 광고시장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점유율은 2018년 20.9%에서 2022년 17.1%로 감소 추세임
 - 매체별로도 동일하게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지상파TV의 경우 공사의 광고판매비중이 2018년 48.7%에서 2022년 45.2%로 감소하였으며, 라디오 역시 2018년 58.6%에서 2022년 37.4%로 크게 감소하였음. DMB의 경우에도 2018년 공사 비중은 67%였으나 2022년에는 58.8%로 감소

최근 5년간 광고비 및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점유율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추정)
지상파 TV	총 광고비(a)	14,219	12,447	11,066	13,597	13,822
	공사판매액(b)	6,926	5,599	5,306	6,307	6,251
	공사비중(b/a)	48.7	45.0	47.9	46.4	45.2
라디오	총 광고비(a)	2,073	2,085	2,330	2,598	2,542
	공사판매액(b)	1,214	1,101	932	962	950
	공사비중(b/a)	58.6	52.8	40.0	37.0	37.4
DMB	총 광고비(a)	44	23	26	22	23
	공사판매액(b)	30	23	16	13	13
	공사비중(b/a)	67.0	96.7	62.2	59.0	58.8
기타	총 광고비(a)	22,982	23,156	21,420	24,314	26,038
	공사판매액(b)	46	40	28	23	32
	공사비중(b/a)	0.2	0.2	0.1	0.1	0.1
전체	총 광고비(a)	39,318	37,710	34,841	40,531	42,424
	공사판매액(b)	8,216	6,762	6,282	7,304	7,247
	공사비중(b/a)	20.9	17.9	18.0	18.0	17.1

자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이에 따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주요 수입원인 광고수탁수수료의 금액 및 비중은 감소 추세

- 2022년 공사의 총 매출액은 1,457억원이고, 광고수탁수수료는 1,154억원으로 그 비중은 79.2%
- 공사의 광고수탁수수료는 2013~2015년 1,818~1,982억원에 비해 2022년은 1,154억원으로 감소 추세이며, 총 매출액 대비 비중 역시 2013~2014년 95% 이상에서 2022년 79.2%로 감소 추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광고수탁수수료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 매출액 (A)	2,038	1,910	2,079	1,795	1,513	1,407	1,200	1,249	1,432	1,457
광고수탁 수수료(B)	1,982	1,818	1,848	1,565	1,275	1,162	956	997	1,159	1,154
비중 (B/A)	97.3	95.2	88.9	87.2	84.3	82.6	79.7	79.8	80.9	79.2

자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성

- 최근 5년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매년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으며,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당기순손실 기록
 - 공사는 2022년 18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으며, 106억 8,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
 - 2020년의 당기순이익은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의 부당이득금 421억원을 포함한 것으로, 이를 제외할 경우 당기순손실은 △275억원으로, 최근 5년간 매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손익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매출액	1,407.3	1,199.5	1,249.1	1,431.8	1,456.6
매출이익	383.3	351.1	328.7	351.1	352.1
판매비와 관리비	565.1	565.6	633.6	506.4	535.2
인건비	279.7	282.4	319.2	283.8	301.2
운영경비	285.4	283.2	314.4	222.6	233.9
영업이익	△181.8	△214.6	△304.9	△155.3	△183.0
당기순이익	△100.1	△133.4	146.5	△98.5	△106.8

자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성

- 당기순손실이 지속되면서 결손이 발생하고 있고, 2018년부터 일부자본잠식 진행 중
 - 2022년의 공사의 이익결손금은 284억 4,000만원, 기타자본구성요소로 94억 6,000만원 이 결손되면서 2022년 기준 자본총계는 2,876억 9,000만원
 - 공사는 최근 5년간 매년 결손금이 발생하면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일부자본잠식 진행 중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자본금 변동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자본금(A)	3,255.8	3,255.8	3,255.8	3,255.8	3,255.8
이익잉여금(결손금)(B)	△105.0	△240.1	△84.5	△178.0	△284.4
기타자본구성요소(C)	△1.6	10.4	8.2	△6.1	△94.6
자본총계(A+B+C)	3,149.3	3,026.1	3,179.5	3,071.7	2,876.9

자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이처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주요 수입인 광고수탁수수료 수입이 감소하고 있고 당기순손실이 지속되면서 일부자본잠식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수익성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가. 현황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4개 지사 및 2개 지소 운영중

- 지사·지소는 소관 지역에 대한 광고판매, 광고주 관리, 광고계약 및 지급보증 등 영업 활동을 수행
- 지사와 지소는 정원 및 규모에서 차이가 있을 뿐, 담당업무나 역할은 동일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지사·지소 현황

구분		관할구역	담당업무
본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KBS·MBC TV, 라디오 및 기타 중소방송, DMB, IPTV 영업 - 광고정책, 영업전략, 요금정책 수립 - 간접광고, 기상광고 판매 및 광고주 개발 - 결합판매 총괄, 광고판매 제도 개선, 판매촉진 - 마케팅 분석, 영업지원, 판촉자료 발간 및 마케팅 조사 - 영업관리 및 수금관리
지 사	부산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중 김해, 양산 일원	소관 지역 - 광고판매, 광고주 관리 - 광고계약 및 지급보증 등 영업지원 - 지사(지소) 운영 -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광고마케팅 활동 지원
	대구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일원	
	광주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일원	
	대전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충청북도 일원	
지 소	경남	김해, 양산, 울산 제외 경상남도 일원	
	전북	전라북도 일원	

자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최근 5년간 광고수탁수수료 중 지사·지소의 수입 비중은 13~14%임
 - 2022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광고수탁수수료 1,154억원 중 본사 수입은 983억원이며 지사·지소 수입은 171억원으로, 지사·지소의 수입 비중은 14.8%임
 - 최근 5년간 광고수탁수수료 수입 중 지사·지소의 수입 비중은 최소 13%에서 최대 14.8%로, 매년 13~14%대를 유지하고 있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본사 및 지사·지소의 광고수탁수수료 수입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본사	1,009(86.8)	819(85.7)	867(87.0)	1,007(86.9)	983(85.2)
지사·지소	153(13.2)	137(14.3)	130(13.0)	152(13.1)	171(14.8)
합계	1,162(100.0)	956(100.0)	997(100.0)	1,159(100.0)	1,154(100.0)

주: ()는 비중

자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 쟁점

- 부산·광주 지사의 경우 지속적으로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수익성 개선 등 손익 관리 필요
 - 부산지사는 2022년 3억 9,000만원의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을 기록함. 부산지사는 최근 5년간 매년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으며, 총 28억 7,000만원의 영업손실 기록
 - 광주지사는 2022년 2억 5,000만원의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을 기록함. 광주지사 역시 최근 5년간 매년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며, 총 15억 1,000만원의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 기록
 - 대구지사의 경우 2021년 및 2022년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으나, 2018~2020년 실적으로 인하여 최근 5년간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합계는 6억 2,000만원의 손실로 나타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지사별 손익 현황

(단위: 억원)

지사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최근 5년간 합계
부산	광고수탁수수료	53	42	43	48	43	229
	영업이익	△7.4	△6.8	△6.1	△4.5	△3.9	△28.7
	당기순이익	△6.8	20.3	△6.0	△4.5	△3.9	0.9
대구	광고수탁수수료	34	28	24	42	56	184
	영업이익	△0.7	△3.4	△5.0	1.6	1.3	△6.2
	당기순이익	△0.7	△3.4	△5.0	1.6	1.3	△6.2
광주	광고수탁수수료	31	28	25	30	31	145
	영업이익	△3.6	△2.2	△3.9	△2.9	△2.5	△15.1
	당기순이익	△3.6	△2.2	△3.9	△2.9	△2.5	△15.1
대전	광고수탁수수료	35	39	38	33	40	185
	영업이익	△0.2	1.4	3.1	0.8	1.6	6.7
	당기순이익	△0.2	1.5	3.1	0.8	1.6	6.8

주: 경남지소는 부산지사에, 전북지소는 광주지사에 포함
 자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본사와 지사·지소의 경우 영업직원 1인당 광고수탁수수료 수입에서 차이 발생

- 본사의 경우 2022년 영업직원은 50명, 광고수탁수수료는 983억원으로, 영업직원 1인당 광고수탁수수료 수입은 19억 6,700만원
- 지사·지소의 경우 2022년 영업직원은 총 33명, 광고수탁수수료는 171억원으로, 영업직원 1인당 광고수탁수수료 수입은 5억 1,800만원
- 본사의 영업직원 1인당 광고수탁수수료 수입은 지사·지소의 약 3.8배 수준

본사 및 지사의 방송광고 판매업무 종사자 현황(2022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총원	관리지원 직원	영업직원(A)	광고수탁 수수료(B)	영업직원1인당 광고수탁수수료(B/A)
본사	71	21	50	98,336	1,967
지사·지소	39	6	33	17,103	518
합계	110	27	83	115,439	1,391

자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현황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유형자산 중 하나로 kobaco 연수원을 소유하여 운영 중
 - kobaco 연수원은 국가기관, 정당, 공공·교육기관, 광고·언론기관, 문화예술단체 등을 고객으로 하고 있으며, 숙소 100실과 강당, 강의실, 체육시설 등을 보유 중
 - 숙소의 경우 이용요금이 1박당 7만원~12만원 수준임

kobaco 연수원 시설 현황

구분	종류	수량	수용인원	비고
교육	강당	1실	272석	
	강의실 및 분임토의실	12실	608석	20~100석
숙소	온돌	26실	127명	5인실, 4인실
	침대	74실	220명	4인실, 2인실
	합계	100실	347명	
체육	수영장, 잔디구장, 소운동장, 농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기타	식당, 연회장, 레크리에이션실, 캠프화이어장, 산책로 등			

자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나. 주요 쟁점

■ 최근 5년간 연수원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저조한 상황

- 2022년 연수원 실이용인원은 2만 2,920명으로, 이용률은 22.1%
- 최근 5년간 연수원 이용률은 최고 31.3%에 불과하여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저조한 문제가 있음

최근 5년간 연수원 이용인원 및 이용률

(단위: 일, 명, %)

구분	연간사용일수 (a)	총숙박가능인원 (b)	총사용가능인원 (c=a×b)	실이용인원 (d)	이용률 (d/c)
2018	297	347	103,059	32,274	31.3
2019	299	347	103,753	24,849	23.9
2020	298	347	103,406	8,923	8.6
2021	297	347	103,059	11,948	11.5
2022	298	347	103,406	22,920	22.1

자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이용률 저조로 인하여 연수원은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수익성 개선 필요

- 연수원은 2022년 11억 5,3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으며 9억 7,100만원의 당기 순손실 기록
-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0년의 경우 영업 손실이 17억 3,400만원을 기록하여 영업이익률이 △341.3%로 나타남
- 특히,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관리용역비, 수선유지비와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하는 운영경비가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82.4%로, 2018년(77.7%) 대비 증가하였음

최근 5년간 연수원 손익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매출액		1,853	1,496	508	664	1,513
매출총이익		1,269	961	386	551	996
판매비와 관리비(a)		2,378	2,343	2,120	2,065	2,148
	인건비	530	447	369	378	377
	운영경비(b)	1,848	1,896	1,750	1,686	1,770
	판매비	0	0	1	1	1
	경비 비중(b/a)	77.7	80.9	82.5	81.6	82.4
영업이익		△1,109	△1,382	△1,734	△1,513	△1,153
영업이익률		△59.9	△92.4	△341.3	△227.9	△76.2
당기순이익		△1,114	△1,388	△1,736	△1,511	△971

자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가. 현황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인원 중 2018~2023.7. 동안 징계받은 자는 총 3명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수위별·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2)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운전 관련	부정청탁 관련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317	3	0	0	1	0	1	1	0	1	1	0	0	0	1

-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8.1.1.~2023.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국가공무원법」,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아래와 같이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였음

- ‘정직’ 유형의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정직 기간 중 보수 전액을 감액할 것
- 공공부문 종사자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또한 인사 관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쟁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정직' 징계를 받은 인원에게 「보수규정」 제26조에 따라 그들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정직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였음
 -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직자에게 연봉월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하도록 규정하였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정직자 대상 보수 지급 현황

(단위: 명, 개월, 천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7월말)
인원	-	-	1	-	-	-
평균 처분기간	-	-	2	-	-	-
보수지급액	-	-	4,277	-	-	-
관련 내부 규정 (‘23.7월말 기준)	「인사규정」 제26조(징계처분기간의 연봉)					
보수 지급 내용 (‘23.7월말 기준)	정직자의 경우 정직 처분 기간 동안 연봉월액의 30%를 감하여 지급					

주: 각 연도 내에(2023년의 경우 7월 31일 전) 징계가 확정된 인원 기준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정직 기간 중 보수 지급 규정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가. 현황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인원 중 2018~2023.7. 동안 징계를 받은 자는 총 26명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수위별·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2)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운전 관련	부정청탁 관련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414	26	2	0	5	0	3	16	6	1	1	0	0	3	19

-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8.1.1.~2023.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국가공무원법」,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아래와 같이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였음
-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을 참고하여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
 - 공공부문 종사자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또한 인사 관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쟁점

-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018년 이후 횡령, 배임, 사기, 유용 등 재산 관련 비위와 그에 대한 징계가 있었음에도, 2023년 8월 말까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징계부가금 내부 규정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외교통일위원회



가. 일반현황

-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은 외교부 산하 3개 기관, 통일부 산하 2개 기관임
 -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 재외동포재단 등 2개 기타 공공기관으로 총 3개 기관
 -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 기타공공기관 2개 기관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외교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국제협력단
	기타 공공기관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통일부	기타 공공기관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나.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현황

- 2022년 기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를 받은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은 외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개 기관임
 - 한국국제협력단은 2019년 평가부터 2021년 평가까지 우수(A) 등급을 받았으나 2022년 보통(C) 등급으로 하락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및 경영성과급(2018~2022)

(단위: 천원)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외교부 (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국제협력단	경영결과	C	A	A	A	C
			경영성과급	244	799	1,637	1,664	1,804

- 주: 1.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는 2022년 공공기관 현황에 따름
 2. 경영성과급은 전년도 경영실적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 차년도에 지급되며, 일반정규직 기준임
 3. 경영성과급(기관평가)은 범주별(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범주별 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등급별·유형별로 차등지급(성과급 지급률=종합 50%+경영관리 25%+주요사업 25%)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연도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결과 발표」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다. 종합청렴도 현황

- 2022년 기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받은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임
 - 2022년 청렴도 평가는 3등급으로 2021년 대비 등급이 상승하였음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현황(2018~2022)

(단위: 등급)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2018	2019	2020	2021	2022
외교부 (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국제협력단	3	4	3	4	3

- 주: 1. (-)은 청렴도 조사 미수행을 의미함
 2. 공공기관 유형은 2023년 기준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한국국제교류재단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구매 비율 3년 연속 미달성 및 최하위 비율 구매

가. 현황

-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¹⁾에 따라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물로 구매하여야 함
- 그러나 한국국제교류재단의 2022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은 0.04%로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였음
 - 2022년 기준 주요 공공기관²⁾의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은 평균 1.40%로, 전체 101개 공공기관 중 81개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 구매 비율(1% 이상)을 달성하였으나,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미달성

한국국제교류재단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 현황 등(2022년 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구매액(A)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액(B)	구매비율(B/A)
한국철도공사 등 101개 기관	17,613,879	247,033	1.40
한국국제교류재단	15,559	6	0.04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김정훈 예산분석관 (02-6788-4685)

1)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물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계획의 작성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주요 공공기관(101개): 공기업(32개)·준정부기관(55개)·주요 기타공공기관[14개(은행형 기타공공기관·기금관리형 기타공공기관·4대 항만공사)]

나. 주요 쟁점

-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최근 3년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을 보면 2022년 0.04%, 2021년 0.29%, 2020년 0.06%로 구매실적이 매우 저조할뿐더러 3년 연속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한국국제교류재단의 2022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은 0.04%로, 주요 공공기관(101개 기관) 중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 최하위 실적을 기록³⁾

최근 3년간 한국국제교류재단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구매액(A)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액(B)	구매비율(B/A)
2020	12,449	7	0.06
2021	11,029	32	0.29
2022	15,559	6	0.04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향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금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3) 주요 공공기관 중 2022년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 하위 5개 기관

구분	한국산업은행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국제교류재단
구매비율(%)	0.17	0.16	0.12	0.07	0.04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가. 현황

- 한국국제협력단 인원 중 2018~2023.7. 동안 징계를 받은 자는 총 23명임

한국국제협력단 수위별·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2)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운전 관련	부정청탁 관련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604	23	1	0	4	0	11	7	1	2	0	0	5	5	15

-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8.1.1.~2023.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국가공무원법」,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아래와 같이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였음
-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을 참고하여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
 - 공공부문 종사자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또한 인사 관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쟁점

- 한국국제협력단은 2018년 이후 횡령, 배임, 사기, 유용 등 재산 관련 비위와 그에 대한 징계가 있었음에도, 2023년 8월 말까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한국국제협력단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징계부가금 내부 규정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위원회



가. 일반현황

-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 산하 3개 기관, 인사처 산하 1개 기관, 경찰청 산하 1개, 소방청 산하 1개 기관으로 총 6개 기관임
 -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재)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 등 기타공공기관 2개 기관으로 총 3개 기관
 - 인사처 산하 공공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공무원연금공단 1개 기관
 - 경찰청 산하 공공기관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도로교통공단 1개 기관
 - 소방청 산하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1개 기관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인사혁신처 (1)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공무원연금공단
행정안전부 (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기타 공공기관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경찰청 (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도로교통공단
소방청 (1)	기타 공공기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나.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현황

- 2022년 기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를 받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3개 기관임
 - 2021년 경영실적평가 대비 2022년 경영실적평가 등급이 상승한 공공기관은 없으며, 2021년 대비 하락한 기관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경찰청 산하의 모든 공공기관임
 - 공무원연금공단은 2021년 양호(B) 등급에서 보통(C) 등급으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보통(C) 등급에서 미흡(D) 등급으로, 도로교통공단은 우수(A) 등급에서 보통(C) 등급으로 하락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및 경영성과급(2018~2022)

(단위: 천원)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인사 혁신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공무원연금공단	경평결과	B	B	B	B	C
			경영성과급	1,462	1,566	1,466	1,188	1,951
행정 안전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경평결과	C	D	D	C	D
			경영성과급	862	800	394	4	905
경찰청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도로교통공단	경평결과	B	B	B	A	C
			경영성과급	1,013	1,451	1,494	1,360	1,709
소방청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경평결과	C	B	C	D	D
			경영성과급	1,331	859	1,352	804	241

- 주: 1.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는 2022년 공공기관 현황에 따름
 2. 경영성과급은 전년도 경영실적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 차년도에 지급되며, 일반정규직 기준임
 3. 경영성과급(기관평가)은 범주별(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범주별 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등급별·유형별로 차등지급(성과급 지급률=종합 50%+경영관리 25%+주요사업 25%)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연도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결과 발표」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다. 종합청렴도 현황

■ 2022년 기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받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음

- 인사혁신처 산하 공공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공무원연금공단임
-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임
- 경찰청 산하 공공기관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도로교통공단임
- 소방청 산하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현황(2018~2022)

(단위: 등급)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2018	2019	2020	2021	2022
인사혁신처 (1)	기금관리 준정부기관	공무원연금공단	3	3	2	2	2
행정안전부 (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	3	3	3	2
경찰청 (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도로교통공단	3	4	4	3	2
소방청 (1)	기타 공공기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4	2	2	2	2

주: 1. (-)은 청렴도 조사 미수행을 의미함

2. 공공기관 유형은 2023년 기준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

공무원연금공단 적립금 운용 현황

가. 현황

- 2022년 공무원연금기금 적립금 총액은 6조 1,977억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
 - 공무원연금기금은 공무원의 퇴직,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금
 - 공무원연금기금 적립금은 2013년 3조 9,698억원에서 2019년 8조 8,900억원으로 7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년 대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2022년의 적립금은 6조 1,977억원으로, 2013년 대비 2조 2,279억원 증가하였으나 전년에 비하여는 1조 9,028억원 감소한 금액임

최근 10년간 공무원연금기금 적립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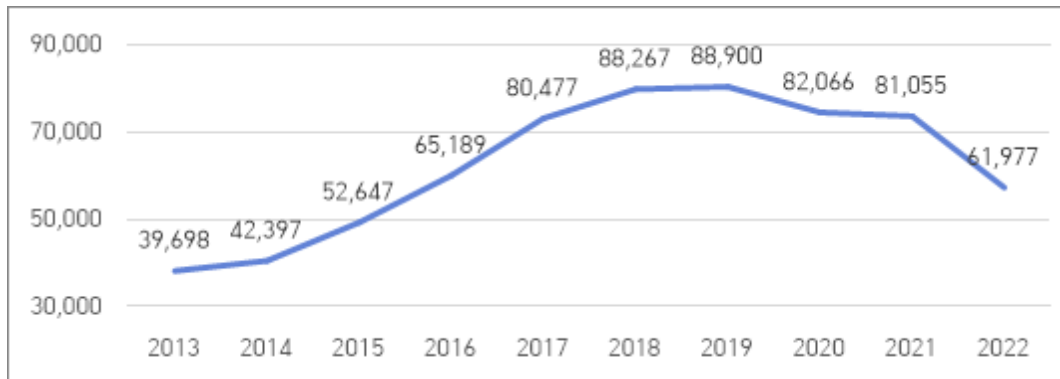
(단위: 억원)

2013(a)	2014	2015	2016	2017	2018
39,698	42,397	52,647	65,189	80,477	88,267
2019	2020	2021(b)	2022(c)	증감	
				전년대비(c-b)	'13년대비(c-a)
88,900	82,066	81,055	61,977	△19,028	22,279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최근 10년간 공무원연금기금 적립금 현황

(단위: 억원)



한지은 예산분석관 (02-6788-3745)

나. 주요 쟁점

- 2022년 공무원연금기금 적립금 운용 수익률은 △4.3%로, 손실 기록
 - 2022년 공무원연금기금 적립금의 운용 수익률은 △4.3%로, 최근 10년 중 수익률이 가장 낮았음
 - 최근 10년 중 2022년을 제외하고 운용 수익률이 음(-)였던 2018년은 운용 수익률이 △1.5%로, 2022년의 △4.3% 수익률은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수익률임

최근 10년간 공무원연금기금 적립금 운용수익률 현황

(단위: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3.3	2.8	3.8	3.7	7.1	△1.5	8.4	10.5	8.6	△4.3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2년의 낮은 적립금 운용 수익률은 채권과 주식의 운용 수익률이 낮은 것에 기인
 -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적립금의 약 36%는 채권, 약 24%는 주식, 약 35%는 대체투자로 구성되어 있음
 - 공무원연금기금 적립금은 최근 10년간 채권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대체투자 비중은 증가
 - 채권의 경우 2013년 51%에서 2022년 36%로 그 비중이 감소 추세
 - 대체투자의 경우 2013년 16%에서 2022년 35%로 증가 추세
 - 대체투자 비중이 증가 추세이나 적립금 중 '채권 + 주식'의 비중이 2022년 기준 60%로 여전히 가장 높음

최근 10년간 연도별 자산별 공무원연금기금 적립금 구성 비중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단기	4.2	8.2	12.8	10.7	9.8	11.8	7.6	4.3	9.7	4.8
중장기	채권	51.1	45.0	42.9	44.1	42.1	41.4	42.2	39.2	35.8
	주식	28.8	32.7	30.6	31.6	34.0	29.6	31.6	33.5	28.7
	국내	26.7	27.7	24.1	23.0	25.4	19.3	20.8	21.0	15.7
	해외	2.1	5.0	6.5	8.6	8.6	10.3	10.8	12.5	13.1
	대체투자	15.9	14.1	13.7	13.6	14.1	17.2	18.6	23.0	25.8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성

- 2022년의 자산 유형 중 채권(△7.4%)과 주식(△18.6%)의 운용 수익률이 낮았으며, 특히 주식의 운용 수익률이 낮았음
- 주식의 경우 최근 10년간 운용수익률이 △18.6~25.9%로, 자산 특성상 수익률의 폭이 채권(△7.4~5.6%)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남
- 채권이나 주식과 달리 대체투자의 경우 최근 10년간 안정적으로 3.8~19.4%의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보임

최근 10년간 연도별 자산별 공무원연금기금 적립금 운용수익률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3.3	2.8	3.8	3.7	7.1	△1.5	8.4	10.5	8.6	△4.3
단기	현금성				1.7	1.9	1.9	1.2	1.2	2.8
	유동성	3.5	2.7	1.9	1.6	0.7	1.8	1.9	0.1	0.8
중장기	채권	3.3	5.6	3.4	2.4	0.8	4.0	4.4	2.6	△1.2
	주식	0.9	△3.0	2.4	6.6	22.0	△14.8	18.0	25.9	15.7
	국내	0.8	△4.2	2.1	5.7	26.8	△17.8	10.4	36.2	5.8
	해외	9.8	5.7	1.9	8.9	10.0	△7.8	30.4	9.5	29.6
	대체투자	7.9	11.2	8.9	3.8	4.8	8.1	8.5	7.5	19.4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성

가. 현황

- 공무원연금공단은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을 담보로 대출제도 운영 중
 - 공무원연금대부는 일반대출, 주택자금대출, 사회정책적대출의 3종류로 구분되며, 대출종류 및 한도, 대출자격, 대출이율 등은 다음과 같음

공무원연금대부 개요

구분	내용
대출종류 및 한도	(일반대출) 재직기간 1년 이상 공무원, 최고 2,000만원 한도 (주택자금대출) 무주택 공무원, 최고 6,000만원 한도 (사회정책적대출) 3자녀 양육, 미취학 자녀, 신혼부부, 장애인 등, 최고 3,000만원 * 예상퇴직급여의 1/2 범위 내에서 대출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 시 대출한도액까지 대출 가능
대출자격	재직중인 공무원
대출이율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가계대출 금리 적용(분기별 조정)
상환기간 및 방법	최대 10년 이내 원금균등 분할상환
연체이자	$[(\text{미납원금} + \text{미납이자}) \times \text{연체료율}] \times \text{연체일수} / 365$ - 정상이자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2년 기준 공무원연금대부 대출 금액은 7,500억원이며, 대출잔액은 2조 507억원
 - 2022년 공무원연금대부 대출 건수는 3만 120건, 대출금액은 7,500억원, 회수금액은 6,339억원
 - 최근 5년간 대출 잔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대출잔액은 2조 507억원으로, 전년 대비 1,161억원 증가

한지은 예산분석관 (02-6788-3745)

최근 5년간 공무원연금대부 실적

(단위: 건, 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대출건수	37,419	39,754	38,763	38,385	30,120
대출금액	7,954	7,999	9,000	9,484	7,500
회수금액	7,189	7,044	8,332	6,808	6,339
대출잔액	15,047	16,001	16,669	19,346	20,507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나. 주요 쟁점

- 공무원연금대부의 장기연체 비율이 높은 측면이 있어 적극적인 관리 필요
 - 공무원연금대부 연체기간별 연체 현황에 따르면, 3년 이상 연체하고 있는 인원은 2022년 말 기준 1,673명으로 전체의 23.4%에 해당
 - 3년 이상 연체자들의 연체금액은 총 132억 9,200만원이며, 미납이자는 24억 4,000만원

공무원연금대부 연체기간별 연체 현황(2022년 말 기준)

(단위: 명, 백만원, %)

연체기간	인원		미납이자	연체금액
	연체인원	비율		
6개월 미만	3,493	48.9	167	1,138
6개월 ~ 1년	558	7.9	104	726
1년 ~ 2년	821	11.5	252	1,729
2년 ~ 3년	595	8.3	227	1,497
3년 이상	1,673	23.4	2,440	13,292
계	7,140	100	3,190	18,382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연금대부와 유사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대부의 경우 2022년 말 기준 3년 이상 장기 연체 비율이 7%임을 고려할 때, 공무원연금대부 장기연체 비율이 높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 필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대부 연체기간별 연체 현황(2022년 말 기준)

(단위: 명, 백만원, %)

연체기간	인원		미납이자	연체금액
	연체인원	비율		
6개월 미만	247	82	64	441
6개월 ~ 1년	7	2	38	304
1년 ~ 2년	16	5	33	207
2년 ~ 3년	11	4	22	132
3년 이상	20	7	89	176
계	301	100	246	1,260

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가. 현황

■ 도로교통공단 인원 중 2018~2023.7. 동안 징계를 받은 자는 총 81명임

도로교통공단 수위별·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2)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운전 관련	부정청탁 관련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3,051	81	9	0	17	0	23	32	2	9	13	7	3	5	47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8.1.1.~2023.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국가공무원법」,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아래와 같이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였음

-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을 참고하여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
-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 처리를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도록 할 것
- 공공부문 종사자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또한 인사 관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쟁점

- 도로교통공단은 2018년 이후 횡령, 배임, 사기, 유용 등 재산 관련 비위와 그에 대한 징계가 있었음에도, 2023년 8월 말까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도로교통공단에서 2018년 이후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총 7회의 징계위원회 중 3회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지 않았음

도로교통공단 성비위 관련 징계위원회 구성 현황

(단위: 명, %)

징계위원회 구성 일자	성비위 종류	위원 수(A) (위원장 제외)	피해자와 성별이 같은 위원 수(B)	피해자와 성별이 다른 위원 수	비중(B/A)
2018.4.25	성추행, 성희롱	4	0	4	0.0
2018.12.17	성추행, 성희롱	4	0	4	0.0
2019.8.1	성희롱	4	1	3	25.0
2022.1.13	성희롱	4	2	2	50.0
2022.1.27	성희롱(재심)	4	2	2	50.0
2022.3.30	성희롱	4	1	3	25.0
2022.12.9	성희롱	3	1	2	33.3

- 도로교통공단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징계부가금 내부 규정 및 징계위원회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1) 징계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인원 중 2018~2023.7. 동안 징계받은 자는 총 25명임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수위별·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2)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운전 관련	부정청탁 관련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1,663	25	2	1	5	7	10	0	0	1	1	1	1	2	19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8.1.1.~2023.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국가공무원법」,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아래와 같이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였음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재산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부정청탁 등)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할 것
- 공공부문 종사자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또한 인사 관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쟁점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2020년 부정청탁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 3명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최하위 등급보다 높은 등급(S 1명, B 2명)을 부여하였고, 이로 인해 성과급 총 1,536만원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 지급되었음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성과급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한편, 내부 지침에 따라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였음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지급한 성과급 총액 현황

(단위: 명, 천원)

기준연도	임직원 수	기준연도 평가를 바탕으로 그 차년도(지급연도)에 지급한 성과급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급	합계
2020	1,738	33,425	6,465,072	6,498,497
2021	1,878	1,622,416	6,631,960	8,254,376
2022	1,950	873,170	7,102,550	7,975,720

주: 연도별 임직원 수는 내부평가급 지급 인원 수를 의미

-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성과급 지급 시 아래와 같이 차등화된 내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으로 할 것
 -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최고 등급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을 합하여 10% 이상으로 하고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주요 쟁점

■ 2020~2022년 평가를 기준으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2021~2023년에 지급한 성과급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최고 등급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의 합이 10% 이상이고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나, 2023년 일반직 내부평가급 등의 경우 최고 등급 10% 미만,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의 합 10% 미만, 셋째 등급 50% 초과 등 전반적으로 인원(부서) 비율에 관한 지침을 미준수하였음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은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어야 하나, 최근 3년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내부평가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미만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급별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지급 연도	성과급 구분		경영평가 등급	첫째 등급		둘째 등급		셋째 등급		넷째 등급		다섯째 등급		여섯째 등급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2021	경영평가 성과급		D	0	134	0	115	0	100	0	85	0	66	-	-
	내부 평가급	관리직		10	134	21	115	40	100	18	85	10	66	-	-
		일반직		9	123	18	110	47	100	17	90	9	78	-	-
2022	경영평가 성과급		C	8	134	17	115	49	100	17	85	8	66	1명	0
	내부 평가급	관리직		11	134	15	115	42	100	21	85	11	66	-	-
		일반직		9	123	18	110	46	100	18	90	9	78	1명	0
2023	경영평가 성과급		D	9	134	17	115	47	100	18	85	8	66	2명	0
	내부 평가급	관리직		10	134	20	115	41	100	18	85	10	66	-	-
		일반직		8	123	15	110	53	100	17	90	7	78	2명	0

주: 1. 인원 및 지급률의 경우 실제 지급 기준이며, 소숫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단, 여섯째 등급 제외)
2. 성과급은 조직평가 및 개인평가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지급되나,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개인등급 평가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만을 제공하였음

■ 성과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인 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성과급의 지급 취지와 지침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성과급 차등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II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가. 일반현황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31개 기관, 문화재청 산하 1개 기관임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은 준시장형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관광공사, 대한체육회 등 28개 기타공공기관으로 총 31개 기관
 -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 한국문화재단 1개 기관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문화체육 관광부 (31)	준시장형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관광공사
	기타 공공기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재단법인 국악방송,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주),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재청 (1)	기타 공공기관	한국문화재단

박지민 예산분석관(02-6788-3731)
장희란 예산분석관(02-6788-4682)

나.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현황

- 2022년 기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를 받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은 준시장형 공기업 1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2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3개 기관임
- 2021년 경영실적평가 대비 2022년 경영실적평가 등급이 상승한 공공기관은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3개 기관, 2021년 대비 하락한 공공기관은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등 2개 기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및 경영성과급(2018~2022)

(단위: 천원)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문화체육 관광부 (6)	준시장형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 (주)	경영결과	D	C	C	D	B
			경영성과급	0	870	3,540	1,952	455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영결과	B	C	C	C	A
			경영성과급	1,221	1,734	1,262	1,299	1,385
		한국언론진흥재단	경영결과	C	C	B	B	C
			경영성과급	1,627	1,103	941	1,662	1,52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관광공사	경영결과	C	A	A	B	B
			경영성과급	6,848	5,492	9,862	9,024	8,177
		국제방송교류재단	경영결과	C	C	C	B	C
			경영성과급	0	0	0	0	0
		한국콘텐츠진흥원	경영결과	C	C	D	D	C
			경영성과급	0	0	0	0	0

- 주: 1.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는 2022년 공공기관 현황에 따름
 2. 경영성과급은 전년도 경영실적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 차년도에 지급되며, 일반정규직 기준임
 3. 경영성과급(기관평가)은 범주별(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범주별 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등급별·유형별로 차등지급(성과급 지급률=종합 50%+경영관리 25%+주요사업 25%)
 4. 경영성과급이 0원인 기관은 2023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어 경영성과급을 0원으로 기재함에 따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연도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결과 발표」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다. 종합청렴도 현황

- 2022년 기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은
준시장형 공기업 1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개,
기타공공기관 6개임
- 2021년 청렴도 평가 대비 2022년 등급이 상승한 공공기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3개
기관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현황(2018~2022)

(단위: 등급)

주무부처	유형	기관명	2018	2019	2020	2021	2022
문화체육 관광부 (10)	준시장형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주)	3	3	2	2	2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2	3	3	4	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관광공사	2	4	2	2	2
	기타 공공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3	5	4	3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	4	4	5	4
		대한체육회	5	5	4	4	4
		한국체육산업개발(주)	-	-	-	4	3
		국제방송교류재단	2	2		-	4
		한국언론진흥재단	-	-	-	-	4
		영화진흥위원회	3	3	3	-	-

주: 1. (-)은 청렴도 조사 미수행을 의미함

2. 공공기관 유형은 2023년 기준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한국관광공사 출자회사(제주ICC 및 서남해안레저) 수익성 저조

가. 현황

- 한국관광공사는 국제회의 유치 또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을 위해 각각 290억원 및 90억원을 투자하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제주ICC) 및 서남해안레저 주식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국제회의업 운영과 쇼핑센터, 기타 관광사업 및 컨벤션센터 진흥사업을 목적으로 제주 중문동에 설립
 - 서남해안레저(주)는 영암·해남 지역에 자족적 경제기능과 정주기반을 확보한 친환경 관광·레저형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호지구) 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

한국관광공사의 제주ICC 및 서남해안레저 지분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회사명	주요사업	취득일자	지분율	취득원가	투자목적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국제회의업	1997.8.13	14.27	29,026	국제회의의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서남해안레저(주)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	2007.9.18	19.97	8,990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을 통한 지역 국가경제 균형발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주요 쟁점

- 한국관광공사가 투자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및 서남해안레저의 최근 5년간 손익 현황을 보면 매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경우 2018년에는 1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2022년에는 손실규모가 13억원으로 확대되었고, 누적결손금은 2022년 기준 286억원으로 확대
 - 서남해안레저의 경우 2018년에는 37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2022년에는 손실규모가 68억원으로 확대되었고, 누적결손금은 2022년 기준 475억원으로 확대

김정훈 예산분석관 (02-6788-4685)

한국관광공사의 제주ICC 및 서남해안레저 손익 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주)제주국제 컨벤션센터	매출액	13,849	14,091	6,198	7,749	11,831
	매출원가	15,830	17,162	12,796	13,048	13,807
	영업이익(손실)	△3,324	△4,725	△8,257	△7,010	△4,431
	당기순이익(손실)	△997	△839	△5,197	△4,156	△1,296
	이익잉여금(누적)	△17,795	△18,765	△23,835	△27,694	△28,590
서남해안 레저(주)	매출액	-	730	6,697	203	4
	매출원가	-	151	1,614	-	-
	영업이익(손실)	△3,174	△1,887	3,124	△1,690	△1,917
	당기순이익(손실)	△3,706	△5,168	△3,603	△8,254	△6,810
	이익잉여금(누적)	△11,739	△16,906	△20,510	△40,658	△47,469

- 주: 1.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경우 매출원가가 매출액보다 큰 상황임에 따라 지속적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2020년부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손실폭이 크게 확대되었음
 2. 서남해안레저(주)의 경우 2018년까지는 부지확보 등에 자금을 집행함에 따라 별도의 매출없이 비용만 발생되어오다 2019년부터 분양 및 임대수익이 일부 발생되었으며, 2020년에는 1회성 분양수익이 크게 발생하였음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및 서남해안레저의 지속적인 손실¹⁾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또한 두 회사의 지분에 대하여 장부가액이 취득가액에 비하여 152억 4,100만원 하락 발생

-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경우 장부가액이 227억 7,500만원으로 평가됨에 따라 취득원가(290억 2,600만원) 대비 62억 5,100만원 하락
- 서남해안레저(주)의 경우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되어 장부가액이 0원으로 평가됨에 따라 취득원가(89억 9,000만원) 전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

1) 한국관광공사는 이에 대하여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컨벤션 활성화를 통한 지역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된 기반시설로서 수익창출이 쉽지 않은 구조이며, 서남해안레저의 경우 지역 균형발전 도모 목적으로 출자하여 수익창출에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는 입장임

- 서남해안레저(주)에 대한 감사인은 2022년 감사보고서에서 서남해안레저(주)의 누적결손금이 △47,469백만원에 달하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51,144백만원을 초과함에 따라 서남해안레저(주)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만큼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의견을 기재하였으며, 지배기업 등으로부터 추가로 출자받거나 운영자금 차입 등에 대한 자금조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사의 자산을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을 통하여 회수하지 못할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한국관광공사의 제주CC 및 서남해안레저 투자지분에 대한 취득원가 및 장부가액(2022년 기준)

(단위: 백만원)

회사명	취득원가	장부가액	하락금액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29,026	22,775	△6,251
서남해안레저(주) ¹⁾	8,990	0	△8,990
합계	38,016	22,775	△15,241

주: 서남해안레저(주)의 경우 완전자본잠식상태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2020년부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당기순손실이 크게 발생하는 등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

- 자회사 출자분에 대한 배당수익이 확보되지 못하여 한국관광공사 수익성 개선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한국관광공사 손익 현황(별도재무제표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매출액	257,722	294,323	301,375	374,386	472,663
영업이익(손실)	△37,377	△31,107	△30,513	△23,024	△19,869
당기순이익(손실)	△6,496	△6,630	△47,702	△18,916	△17,142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주택융자금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관광공사는 내부 규정인 「복지규정」 제11조 및 주택자금대부요령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주택융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3년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인원은 248명, 융자금액은 242억원임

한국관광공사 주택융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7월말
인원	318	334	256	281	258	248
융자금액	28,538,194	32,795,889	24,713,124	27,832,690	26,091,680	24,156,946
1인당 지원 한도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0,000
관련 내부 규정	「복지규정」 제11조 및 주택자금대부요령					
지원 요건 (‘23.7월말 기준)	- 실근무년수 1년 이상, 정년퇴직일까지 잔여기간이 5년 이상인 직원 -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인 직원					
상환 조건 (‘23.7월말 기준)	- 구입: 1년 거치 1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임차: 1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2년 거치 만기일시상환 중 선택					

주: 각 연도 말(2023년은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면서, 주택자금의 융자를 지원하는 경우 대출 이자율 하한과 대출한도 상한 등을 규정하였음

-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규정
- 대출 한도는 7천만원으로 하고, 주택 구입에 대한 지원의 경우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

나. 주요 쟁점

- 한국관광공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주택융자금 금리를 동 기간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8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융자금을 제공하였음

한국관광공사 주택융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분기별 연동)의 비교

(단위: %)

구분	2018.1.	2019.1.	2020.1.	2021.1.	2022.1.	2022.7.	2023.1.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51	3.64	3.01	2.64	3.46	4.05	5.34
기관 주택융자금 금리	1.6~2.9	1.6~2.9	1.6~2.9	1.6~2.9	1.6~2.9	1.6~2.9	2.9~5.34

주: 기관 주택융자금 금리의 경우 해당 월의 초일 기준(기존 인원에게 적용 중인 금리도 포함)

- 한국관광공사는 2022년 이후에도 신규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3년 7월 말 기준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이전 대여자의 경우 여전히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상의 대출 이자율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관련 한국관광공사 주택융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 천원)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현황				
인원	금리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규정 개정 전 지원이 시작된 인원에 대해 적용 중인 금리
49	1.6~2.9	5,168,500	개정	2.9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 한국관광공사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규정 개정 이전 대여자에 대해서도 동 지침의 내용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2)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관광공사는 내부 규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19조에 따라 임직원에게 대해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3년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인원은 339명, 지원금액은 77억원임

한국관광공사 생활안정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7월말
인원	306	292	298	338	352	339
지원금액	4,888,329	4,335,275	4,720,971	7,687,378	7,898,695	7,674,064
1인당 지원 한도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관련 내부 규정	「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 제19조					
지원 요건 (‘23.7월말 기준)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채권확보가 가능한 직원 - 계속근로기간 1년 이하 직원 최대 2천만원 한도					
상환 조건 (‘23.7월말 기준)	- 무거치, 원금균등분할상환 - 5년 / 8년 / 12년 상환 중 선택					

주: 각 연도 말(2023년은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면서, 생활안정자금의 대출을 지원하는 경우 대출 이자율 하한과 대출한도 상한 등을 규정하였음
 -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규정
 - 대출 한도는 2천만원으로 규정

나. 주요 쟁점

- 한국관광공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생활안정자금 금리를 동 기간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8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한국관광공사 생활안정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분기별 연동)의 비교

(단위: %)

구분	2018.1.	2019.1.	2020.1.	2021.1.	2022.1.	2022.7.	2023.1.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51	3.64	3.01	2.64	3.46	4.05	5.34
기관 생활안정자금 금리	2.5	2.5	2.5	2.5	2.5	2.5	2.5

주: 기관 생활안정자금 금리의 경우 해당 월의 초일 기준(기준 인원에게 적용 중인 금리도 포함)

- 한국관광공사는 2022년 이후에도 신규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거나 2천만원을 초과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3년 7월 말에도 여전히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상의 대출 이자율, 한도 등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관련 한국관광공사 생활안정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 천원)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현황				2천만원을 초과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현황		
인원	금리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인원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85	2.5	2,962,792	미개정	59	2,607,093	미개정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 한국관광공사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성과급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관광공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임직원에게 대해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한편, 내부 지침에 따라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였음

한국관광공사가 지급한 성과급 총액 현황

(단위: 명, 천원)

기준연도	임직원 수	기준연도 평가를 바탕으로 그 차년도(지급연도)에 지급한 성과급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급	합계
2020	756	6,390,677	6,357,725	12,748,402
2021	766	5,872,623	6,592,737	12,465,360
2022	-	-	-	-

주: 2022년 평가를 바탕으로 2023년 지급되는 성과급은 2023년 9월 말 확정 예정

-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성과급 지급 시 아래와 같이 차등화된 내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으로 할 것
 -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최고 등급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을 합하여 10% 이상으로 하고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주요 쟁점

- 2020~2021년 평가를 기준으로 한국관광공사가 2021~2022년에 지급한 성과급 현황을 살펴보면,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은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어야 하나, 비간부급 인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의 최고 등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미만으로 나타남

2021~2022년 한국관광공사 등급별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지급 연도	성과급 구분		경영평가 등급	첫째 등급		둘째 등급		셋째 등급		넷째 등급		다섯째 등급		여섯째 등급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2021	경영 평가 성과급	간부급	B	17	263	23	215	36	195	18	176	7	127	0	0
		비 간부급		14	215	14	205	33	195	15	185	22	176	1	0
	내부 평가급	간부급		17	270	23	220	36	200	18	180	7	130	0	0
		비 간부급		14	220	15	210	33	200	16	190	22	180	1	0
		간부급													
2022	경영 평가 성과급	간부급	B	15	233	18	190	43	173	21	155	3	112	0	0
		비 간부급		10	190	16	181	32	173	19	164	22	155	2	0
	내부 평가급	간부급		15	270	18	220	43	200	21	180	3	130	0	0
		비 간부급		10	220	16	210	32	200	19	190	21	180	2	0
		간부급													

주: 인원 및 지급률의 경우 실제 지급 기준이며, 소숫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성과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인 바, 한국관광공사는 성과급의 지급 취지와 지침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성과급 차등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1) 징계 관련 문제

가. 현황

■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인원 중 2018~2023.7. 동안 징계받은 자는 총 85명임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수위별·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2)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운전 관련	부정청탁 관련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1,827	85	7	0	19	0	25	34	16	8	0	0	7	5	49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8.1.1.~2023.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국가공무원법」,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아래와 같이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였음

-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을 참고하여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
- 공공부문 종사자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또한 인사 관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쟁점

- 그랜드코리아레저(주)는 2018년 이후 횡령, 배임, 사기, 유용 등 재산 관련 범죄와 그에 대한 징계가 있었음에도, 2023년 8월 말까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그랜드코리아레저(주)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징계위원회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성과급 관련 문제

가. 현황

- 그랜드코리아레저(주)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한편, 내부 지침에 따라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였음

그랜드코리아레저(주)가 지급한 성과급 총액 현황

(단위: 명, 천원)

기준연도	임직원 수	기준연도 평가를 바탕으로 그 차년도(지급연도)에 지급한 성과급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급	합계
2020	1,858	3,528,564	13,167,001	16,695,566
2021	1,843	786,481	13,803,178	14,589,659
2022	1,825	9,764,678	15,977,804	25,742,482

-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성과급 지급 시 아래와 같이 차등화된 내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으로 할 것
 -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최고 등급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을 합하여 10% 이상으로 하고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주요 쟁점

- 2020~2022년 평가를 기준으로 그랜드코리아레저(주)가 2021~2023년에 지급한 성과급 현황을 살펴보면, 4급 이하 직원의 경우 일괄 100%의 지급률을 적용하는 등 차등화 정도가 충분하지 않음

최근 3년간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등급별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지급 연도	성과급 구분		경영평가 등급	첫째 등급		둘째 등급		셋째 등급		넷째 등급		다섯째 등급		여섯째 등급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2021	경영 평가 성과급	3급 이상	C	16	133	12	110	52	100	8	90	12	67	-	-
		4급 이하		일괄 100%의 지급률 적용										-	-
	내부 평가급	3급 이상	-	16	133	12	110	52	100	8	90	12	67	-	-
		4급 이하		일괄 100%의 지급률 적용										-	-
2022	경영 평가 성과급	3급 이상	D	8	133	19	110	43	100	23	90	7	67	1명	0
		4급 이하		일괄 100%의 지급률 적용										3명	0
	내부 평가급	3급 이상	-	8	133	19	110	43	100	23	90	7	67	-	-
		4급 이하		일괄 100%의 지급률 적용										-	-
2023	경영 평가 성과급	3급 이상	B	12	133	16	110	36	100	23	90	12	67	4명	0
		4급 이하		일괄 100%의 지급률 적용										3명	0
	내부 평가급	3급 이상	-	12	133	16	110	36	100	23	90	12	67	2명	0
		4급 이하		일괄 100%의 지급률 적용										3명	0

주: 인원 및 지급률의 경우 실제 지급 기준이며, 소숫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성과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국민에 대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인 바, 그랜드코리아레저(주)는 성과급의 지급 취지와 지침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성과급 차등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영화진흥위원회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구매 비율 3년 연속 미달성

가. 현황

-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¹⁾에 따라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물로 구매하여야 함
- 그러나 영화진흥위원회의 2022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은 0.61%로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였음
 - 2022년 기준 주요 공공기관²⁾의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은 평균 1.40%로, 전체 101개 공공기관 중 81개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 구매 비율(1% 이상)을 달성하였으나, 영화진흥위원회는 미달성

영화진흥위원회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 현황 등(2022년 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구매액(A)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액(B)	구매비율(B/A)
한국철도공사 등 101개 기관	17,613,879	247,033	1.40
영화진흥위원회	7,854	48	0.61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김정훈 예산분석관 (02-6788-4685)

1)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물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계획의 작성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주요 공공기관(101개): 공기업(32개)·준정부기관(55개)·주요 기타공공기관[14개(은행형 기타공공기관·기금관리형 기타공공기관·4대 항만공사)]

나. 주요 쟁점

- 영화진흥위원회의 최근 3년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을 보면 2022년 0.61%, 2021년 0.25%, 2020년 0.12%로 구매실적이 매우 저조할뿐더러 3년 연속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영화진흥위원회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구매액(A)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액(B)	구매비율(B/A)
2020	9,411	11	0.12
2021	10,871	27	0.25
2022	7,854	48	0.61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영화진흥위원회는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의무 구매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향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금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구매 비율 지속적인 감소

가. 현황

-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¹⁾에 따라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물로 구매하여야 함
- 그러나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2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은 0.75%로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였음
 - 2022년 기준 주요 공공기관²⁾의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은 평균 1.40%로, 전체 101개 공공기관 중 81개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 구매 비율(1% 이상)을 달성하였으나,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미달성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 현황 등(2022년 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구매액(A)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액(B)	구매비율(B/A)
한국철도공사 등 101개 기관	17,613,879	247,033	1.40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2,134	16	0.75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김정훈 예산분석관 (02-6788-4685)

1)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물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계획의 작성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주요 공공기관(101개): 공기업(32개)·준정부기관(55개)·주요 기타공공기관[14개(은행형 기타공공기관·기금관리형 기타공공기관·4대 항만공사)]

나. 주요 쟁점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최근 3년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을 보면 2020년 2.45%, 2021년 0.90%, 2022년 0.75%로 지속 감소추세에 있으며, 2021년 및 2022년의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물 의무구매 비율(1% 이상)마저 달성하지 못하였음

최근 3년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구매액(A)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액(B)	구매비율(B/A)
2020	3,173	78	2.45
2021	1,571	14	0.90
2022	2,134	16	0.75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향후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금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가. 현황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인원 중 2018~2023.7. 동안 징계받은 자는 총 10명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수위별·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2)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운전 관련	부정청탁 관련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94	10	0	0	3	0	3	4	0	3	0	0	0	1	6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8.1.1.~2023.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국가공무원법」,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아래와 같이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였음

-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 처리를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도록 할 것
- 공공부문 종사자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또한 인사 관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쟁점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2018년 이후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총 4회의 징계위원회 중 2회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지 않았음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성비위 관련 징계위원회 구성 현황

(단위: 명, %)

징계위원회 구성 일자	성비위 종류	위원 수(A) (위원장 제외)	피해자와 성별이 같은 위원 수(B)	피해자와 성별이 다른 위원 수	비중(B/A)
2019.6.12.	성희롱	5	3	2	60.0
2020.12.29.	성희롱	4	3	1	75.0
2022.5.13.	성희롱	5	1	4	20.0
2022.6.7.	성희롱	5	0	5	0.0

주: 2022.6.7.에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경우 2022.5.13.에 구성된 사건에 대한 재심임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징계위원회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1) 생활안정자금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내부 규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규정」에 따라 임직원에게 대해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 2023년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인원은 102명, 지원금액은 19억원임

한국언론진흥재단 생활안정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7월말
인원	93	97	105	115	108	102
지원금액	1,929,154	2,004,307	2,015,071	2,213,738	2,027,432	1,927,640
1인당 지원 한도	30,000	30,000	30,000	30,000	20,000	20,000
관련 내부 규정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규정					
지원 요건 (‘23.7월말 기준)	정규직, 전문직 직원 중 1년 이상 근속한 자					
상환 조건 (‘23.7월말 기준)	3년 거치(4급 이하 직원에 한함), 4년 상환					

주: 각 연도 말(2023년은 7월 말 기준) 생활안정자금을 제공받고 있던 인원 기준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대한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할 것을 명시하면서, 생활안정자금의 대출을 지원하는 경우 대출 이자율 하한과 대출한도 상한 등을 규정하였음
 -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규정
 - 대출 한도는 2천만원으로 규정

나. 주요 쟁점

-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생활안정자금 금리를 동 기간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8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하였음

한국언론진흥재단 생활안정자금 금리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분기별 연동)의 비교

(단위: %)

구분	2018.1.	2019.1.	2020.1.	2021.1.	2022.1.	2022.7.	2023.1.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51	3.64	3.01	2.64	3.46	4.05	5.34
기관 생활안정자금 금리	1.5	1.5	1.5	1.5	1.5	1.75	3.25

주: 기관 생활안정자금 금리의 경우 해당 월의 초일 기준(기존 인원에게 적용 중인 금리도 포함)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2022년 이후에도 신규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3년 7월 말에도 여전히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상의 대출 이자율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현황

(단위: 명, %, 천원)

인원	금리	지원액	규정 개정 여부
30	1.75~3.5	600,000	미개정

주: 2022.1.1. 이후 신규 지원대상 기준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징계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언론진흥재단 인원 중 2018~2023.7. 동안 징계를 받은 자는 총 6명임

한국언론진흥재단 수위별 · 사유별 징계 현황

(단위: 명, 건)

임직원 수 (’22)	징계 인원 수	징계 수위별 인원						징계 사유별 인원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재산 관련	성 관련	음주운전 관련	부정청탁 관련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207	6	0	0	3	0	2	1	0	2	0	0	1	2	3

- 주: 1. 수위별 인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당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2. 복수의 징계 사유(기타 사유 포함)가 존재하는 징계의 경우 각 사유마다 중복 집계되었음
 3. 2018.1.1.~2023.7.31. 동안 징계를 받은 인원 기준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국가공무원법」,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아래와 같이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할 것을 명시하였음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재산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부정청탁 등)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할 것
 -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 처리를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도록 할 것
 - ‘정직’ 유형의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정직 기간 중 보수 전액을 감액할 것
 - 공공부문 종사자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또한 인사 관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쟁점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인원 2명(2019년)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최하위 등급보다 높은 등급(B등급)을 부여하였고, 이로 인해 성과급 총 85만원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 지급되었음
-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2018년 이후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총 3회의 징계위원회 모두,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지 않았음

한국언론진흥재단 성비위 관련 징계위원회 구성 현황

(단위: 명, %)

징계위원회 구성 일자	성비위 종류	위원 수(A) (위원장 제외)	피해자와 성별이 같은 위원 수(B)	피해자와 성별이 다른 위원 수	비중(B/A)
2019.1.31.	성희롱	7	0	7	0.0
2019.10.30.	성희롱	7	0	7	0.0
2019.11.6.	성희롱	6	0	6	0.0

주: 2019.11.6. 건은 2019.10.30. 건에 대한 재심의 건임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직’ 징계를 받은 인원에게 「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그들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정직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였음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에도 정직자에게 월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음

한국언론진흥재단 정직자 대상 보수 지급 현황

(단위: 명, 개월, 천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7월말)
인원	-	3	-	-	-	-
평균 처분기간	-	3.6	-	-	-	-
보수지급액	-	58,597	-	-	-	-
관련 내부 규정 (‘23.7월말 기준)	「보수규정」 제8조(징계 처분기간 연봉)					
보수 지급 내용 (‘23.7월말 기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음주측정 불응,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 관련 비위 은폐 및 미조치, 타 직원에 대한 부당행위로 인한 정직 등은 처분 기간 동안 보수의 전액을 감하고, 그 외의 사유로 인한 정직의 경우 월 평균임금의 50%를 감하여 지급					

주: 각 연도 내에(2023년의 경우 7월 31일 전에) 징계가 확정된 인원 기준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징계위원회 및 정직 기간 중 보수 지급 규정 등 관련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3) 성과급 관련 문제

가. 현황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한편, 내부 지침에 따라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였음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급한 성과급 총액 현황

(단위: 명, 천원)

기준연도	임직원 수	기준연도 평가를 바탕으로 그 차년도(지급연도)에 지급한 성과급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급	합계
2020	222	319,961	464,907	784,869
2021	223	510,881	501,764	1,012,645
2022	218	481,948	539,066	1,021,014

-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성과급 지급 시 아래와 같이 차등화된 내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으로 할 것
 -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최고 등급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을 합하여 10% 이상으로 하고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주요 쟁점

- 2020~2022년 평가를 기준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21~2023년에 지급한 성과급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등급'을 포함하여 6개 등급이어야 하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등급' 없이 5개 등급으로만 운영 중임
 -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나, 셋째 등급의 인원 비율이 매년 50%를 초과하였음

최근 3년간 한국언론진흥재단 등급별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지급 연도	성과급 구분	경영평가 등급	첫째 등급		둘째 등급		셋째 등급		넷째 등급		다섯째 등급		여섯째 등급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인원	지급률
2021	경영평가 성과급	B	9	134	13	105	55	100	13	95	10	66	-	-
	내부평가급		9	134	13	105	55	100	13	95	10	66	-	-
2022	경영평가 성과급	B	10	134	13	105	54	100	13	95	10	66	-	-
	내부평가급		10	134	13	105	54	100	13	95	10	66	-	-
2023	경영평가 성과급	C	10	134	12	105	56	100	12	95	10	66	-	-
	내부평가급		10	134	12	105	56	100	12	95	10	66	-	-

주: 인원 및 지급률의 경우 실제 지급 기준이며, 소숫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성과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유발을 통해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인 바,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성과급의 지급 취지와 지침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성과급 차등 지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II

발간일	2023년 9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 집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경성문화사 (tel 02·2090·1173)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9-11-6799-157-7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3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88-002040-10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